

지역에서 창출 생성된 세원의 지방세화 방안

곽 채 기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I. 문제의 제기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자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관련 정책기능 및 정책수단이 보다 분권화됨으로써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지역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보장되고 있다. 특히 지역간 경쟁의 가속화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직접 나서서 기업경영에 유리한 환경을 창출하여 적극적으로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재산과세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현행 지방세체계하에서는 민간기업의 지역유치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의 성과가 대부분 국세

입의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는 작은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동과 지방재정이 상승적 순환관계로 연결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영활동의 성과가 지방정부의 세수입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창출된 이익의 역외유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8년부터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법인세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즉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서 새로운 법인이 창업될 경우에는 창업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 중 50%를 법인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10년간 지원하고, 기존 법인이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에는 신설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의

50%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5년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인세 수입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법인세관련 증액교부금의 형태로 1998년과 1999년에 실시되었으나 2000년부터 중단되었다.

이러한 증액교부금형태의 법인세 수입배분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따라 창출된 세원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할애하는 효과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일 뿐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에 의해 창출된 세원의 지방세화 방안으로서는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재산과세 중심의 세원구성과 거주지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설계되어 있는 현행 지방세체계하에서는 응익원칙에 입각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제약하는 요인이 다수 노정되고 있다. 특히 교외화 및 직주분리 현상의 확산, 계절적 인구 이동의 확대 등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편익과 비용의 괴리 또는 세원 발생 지역과 세수 귀착 지역의 불일치 문제가 괄목할만하게 노정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활동의 상승적 순환과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촉진하고 지방세수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노력에 의해 창출·생성된 세원의 지방세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응익원칙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 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

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활동)와 직접 연계되어 있는 세원의 지방세 수용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한다.

II. 지역에서 창출·생성된 세원의 지방세화 필요성의 논거

1.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상승적 순환과정 구축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물적 기반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 활동의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진흥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는 지역개발 및 지역진흥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정부의 지역경영 활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진흥의 성과가 지방세 수입증대로 환류되고, 이것이 다시 지역경제부문에 대한 지출 확대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의 성과 향상에 기여하게 되는 등 지역경제 활동과 지방재정이 상호간에 상승적인 순환과정 내지 확대재생산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체계하에서는 민간기업의 지역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의 성과가 대부분 국세수입으로 귀속되고 있는 나머지 지방세수입의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는 작은 실정이다. 지역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국세와 지방

세(도세와 시군세)의 세수증대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제조업의 경우 국세에 대한 세수증대 효과가 지방세에 비해 4.13배나 높고,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국세에 대한 세수증대 효과가 지방세의 3.27배에 이르고 있다. 또한 도소매 소비자용품업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활성화가 오히려 지방세 수입과 負(-)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성장이 지방세보다는 오히려 국세 수입의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체계하에서는 지역경제 활동과 지방재정이 상승적 순환관계로 연결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활동의 성과가 지방정부의 세수입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소득 및 소비의 증대에 상응하는 세원들을 지방세체계에 수용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기업활동과 관련된 소득 및 이윤과세, 소비활동과 관련된 소비과세 관련 세원을 지방세체계에 흡수·보강할 수 있는 지방세원의 확충 방안 및 국세 세원의 지방세 이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응익원칙에 입각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재정적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소비할 지역공공재를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자신들의 부담으로 공급하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역 주민의 선택과 부담에 기초하여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세체계가 응익원칙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산과세 중심의 세원구성과 거주지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설계되어 있는 현행 지방세체계하에서는 이러한 응익원칙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방세를 통한 재원조달 과정에서 응익원칙을 효과적으로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세원의 지방세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우선 세원을 발생시키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공해, 환경오염 및 자연경관의 파괴, 집적에 따른 사회문제의 현재화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외부불경제효과가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원이 국세로 귀속됨으로써 외부불경제효과의 발생지역과 세수 귀속주체간의 괴리현상을 야기하는 세원의 경우에는 이를 지방세체계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외부효과로 작용하거나 지역경제활동과 밀접히 관련된 당해 지역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세원의 경우에는 응익원칙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원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관광자원의 보전과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 및 개발·유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행위)

에 대한 조세부과는 숙박업 및 음식점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골프장입장료·스키장입장료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형태로 국세 수입으로 귀속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는 입장료 수입은 관광지의 단순유지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서비스 및 지역경제활동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의 특수부존자원, 관광자원, 오염원 등에 대한 세원의 경우에는 이를 지방세체계로 흡수하는 것이 응익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관광지내에서의 입장·숙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 골프장·스키장 등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그리고 공업용수·상수도 용수 등 수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세원은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동차 운행이 지역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와 행정서비스 유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자동차와 휘발유·경유·LPG 등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세원의 일부도 지방세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거주지주의」(residence principle)에 기초를 두고 있는 현행 지방세체계로서는 생활권의 확대와 직주분리, 일시적·계절적 이동 등에 따른 거주지역과 지방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편익지역이 괴리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재산과세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현행 지방세계에 의하면 주간에 유입인구가 많은 대도시 자치단체의 경우 이들 유입인구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의 수혜에 상응한 비용분담을 지방세를 통해 부과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또한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도 관광자원이나 관광행위에 대한 지방세의 과세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이 해당 지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동안에 누리는 지방행정서비스의 편익이나 지방행정비용 유발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있어서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편익과 비용부담의 일치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세원을 지방세체계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당해 지역에서 창출·생성된 세원 중에서 수익자부담원칙 또는 원인부담자원칙에 따라 지방세로서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세원의 지방세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여러 세원중에서도 소비과세가 거주지역과 편익지역의 괴리에 따른 편익과 비용부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세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세 세원으로 배분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세원중 지역적 정착성이 높은 음식업분과 도소매업분, 그리고 특별소비세중 지역적 정착성이 높은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과 같은 일부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응익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III. 외국의 관련 사례

1. 독일의 공동세제도

독일의 공동세제도는 지역에서 창출·생성된 세원을 중앙·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동세의 지방정부에 대한 세수 배분이 당해 지역의 세원분포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세원 확충 노력을 촉진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중앙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간 세원배분방법으로 세원분리방식과 공동이용방식을 병용하는 혼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1969년 재정개혁 이후 독일 헌법에서는 세원분리방식과 공동이용방식이 각각 가지고 있는 단점을 피하고 장점을 취하기 위해 세원분리방식과 공동이용방식을 동시에 수용하였다. 특히 국가의 기간 세목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영업세 등 4가지 세목의 세수를 공동이용방식을 통해 정부단계별로 배분하고 있다. 이들 공동세의 세수입이 총조세 수입의 70% 내외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세원배분체계는 공동이용방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동세 4개 세목 중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의 정부간 배분비율은 연방헌법(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기 쉽지 않다. 헌법(제106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연방의회는 연방참의원의 찬성하에 지방정부를 위한 소득세 수입의 배분비율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부가

가치세와 영업세의 배분비율은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영업세의 정부간 배분비율은 재정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연방·주간재정조정법과 지방정부재정개혁법의 개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그 동안 부가가치세의 경우 연방법의 개정을 통해 1년 내지 3년 정도의 기한으로 그 배분비율을 결정해 왔다. 부가가치세의 정부간 배분비율은 연방과 주정부간 합의를 통해 조정해 왔는 바, 이 과정에서 연방과 주정부간 정치적 논쟁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정부계층간 배분비율은 1969년까지는 거의 매년 변경되었으나, 법인세는 1970년부터, 소득세는 1978년부터 배분비율이 고정되었다. 현재 소득세는 연방, 주, 지방정부에 각각 42.5%, 42.5%, 15.0%의 비율로 배분하고 있으며 법인세는 연방과 주정부에 각각 50%씩 배분하고 있다. 당초 소득세는 연방과 주정부에만 각각 50%씩 배분토록 연방헌법에 규정되었고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몫은 없었으나, 1970년 조세개혁시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 소득세의 15%를 지방정부에 배분하고, 연방과 주정부에 배분하는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방세인 영업세의 일부를 연방과 주정부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공동세중 소득세는 주거지원칙에 의해 납세자가 거주하는 주에 배분되고 법인세는 기업소재지원칙에 의해 기업이 소재한 주에 배분된다. 즉 소득세와 법인세의 전체 수입중에서 주정부에 배분된 몫을 주정부

별로 개별적으로 배분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징세지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지와 직장이 각기 다른 지역에 있는 근로소득세 납세자의 근로소득세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에 납부하게 된다. 이처럼 소득세와 법인세의 주정부간 배분이 징세지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각 주는 자신의 지역경제정책이나 산업구조 조정 정책 또는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 창출된 소기의 성과(소득)를 배분받을 수 있게 된다. 각 주정부가 배분받는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의 규모는 당해 지역의 경제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부로 하여금 지역경제성장과 활성화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주정부의 재정활동과 지역경제활동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할 수 있고, 주정부의 재정적 독립성과 영토주권을 보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주정부간의 재정력(稅收力)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부 귀속분의 75%를 각 주의 부가가치세 수입과는 관계없이 주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나머지 25%는 주정부별 세수력을 산출하여 재정능력이 취약한 주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부가가치세 수입의 주정부간 배분기준으로 인구수를 설정한 것이 징세지원칙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수입이 인구 규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인구비례에 의한 방법이 세원에 상응한 배분을 보다 근접되게 실현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생산과 분배과정의 각 단계에서 재화와 용역에 부가되어지는 가치에 국한하여 과세되는 조세로서 공공서비스가 국가의 모든 지역에서 국민 각자에게 균등하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 수입은 주정부별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수입의 75%를 인구수를 기준으로 주정부별로 배분하는 것은 조세수입기반이 취약한 주정부에게는 커다란 재정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정부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 일본의 지방양여세제도와 법정외 세목제도

1) 지방양여세제도

일본의 지방양여세도 일종의 세원공동이용방식에 기초한 공동세방식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지방양여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징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세로서 세금을 징수한 후 객관적기준 또는 징세지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지방양여세는 지방도로양여세, 석유가스양여세, 항공기연료양여세, 자동차중량양여세, 특별톤양여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양여세는 대상사업과 세원이 직접 연계되어 있어 중앙정부가 징수해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세와 같

은 성격을 띠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지방 양여세는 응익과세 또는 사용자부담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세부담을 유발하는 행위와 세수입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일본의 양여세 중에서 특별톤양여세는 जिसे지원칙에 따라 시정촌에 양여되고 있으나, 나머지는 대부분 객관적인 기준(도로 연장과 면적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고 있다. 또한 세목별로 세수입의 지출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정재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2) 법정외보통세제도

일본에서는 지방양여세제도와는 별도로 지역에서 창출된 세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세로 수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정외보통세제도」라는 독특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법정외보통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필요성과 의사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인정된 세목이다.

일본의 법정외세목제도는 특정 지역에 편재되어 있는 세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원으로 수용하거나 조세법률주의의 제약하에서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목 신설을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본에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법정외보통세를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세목 신설에 대한 허가권을 중앙정부가 보

유하고 있다.

IV. 지역에서 창출·생성된 세원의 지방세화 방안

1. 제도적 기반의 정비

1) 공동세제도의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노력에 의해 창출된 세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세원의 지방세화 방안은 결국 소득과 소비관련 세원의 지방세 수용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지방세원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소득과 소비관련 세원의 대부분이 국세에 수용되어 있는 가운데 중복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 배분체계하에서는 지역에서 창출·생성된 세원의 지방세화 방안의 실현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소득과 소비관련 세원의 특성상 관련 세원을 포괄적으로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지방정부가 전유세원으로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노력에 의해 창출된 소득과 소비관련 세원 그리고 수익자부담원칙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소득과 소비관련 세원의 지방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공동세제도의 도입이 실현되어야 한다.

2) 법정외세목제도의 도입

지역에서 창출된 세원의 지방세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수 사정과 특정 사업의 시행여부에 따라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법정 세목외에 새로운 세목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법정외세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 제도는 특정 지역에 고유한 재정수요를 당해 지역 단위에서 스스로 해결하게 할 뿐 아니라 특정 지역에 편재되어 있는 특수세원을 지방세원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응익원칙에 입각한 지방세원 확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도 「법정외세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정외세목제도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세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과 비용 부담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장치이다.

2. 소득·소비관련 세원의 지방세 수용 방안

1) 소득과세의 지방세 수용 방안

(1) 소득과세의 지방세원으로서의 적합성

최근에 와서 개인소득과세는 응익성과 부담분임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로서의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법인소득과세의 경우에도 지역소

재 기업들이 광역지방정부의 지역사회간접자본확충, 산업경제행정 및 각종 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다수의 편익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응익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지역경제활동과 지방재정의 상승적 순환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소득과세의 지방세 수용이 필요하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1997년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지방중심 경제활성화 전략」의 시책중의 하나로 법인세 수입의 지방자치단체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등 소득과세는 지역간 이동성이 높은 세원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과세권을 보유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조세의 외부성, 즉 조세수출과 조세경쟁 등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공평한 지방재정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과세의 지방세 수용방안을 구상함에 있어서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소득과세의 확충 및 지방소득세 신설 대안

소득과세 수입을 추가적으로 지방세에 수용하는 방안은 우선 세원분리방식에 의거하여 현행 지방세의 소득관련세목을 중심으로 통폐합 및 재원조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국세의 소득관련 일부 세원의 지방세 이양방안, 그리고 세원공동이용방식을 활용하여 국세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면서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대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① 제1안: 세원분리방식에 기초한 지방소득세 신설 방안

이 방안은 1984년 농지세제의 대폭 개편을 계기로 하여 제기되었던 지방소득세의 도입 구상으로 처음 제시되었던 것이다. 즉 지방세부문에 있어서 소득과세 확충방안의 하나로 농지세를 농업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소득과세체제로 개편하고, 현행 주민세 소득할과 국세의 사업소득세 중 생산규모가 국지적인 축산업, 임업, 수렵업, 어업소득을 이에 포함시키고,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관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사업적 농업이 확장되고, 농업소득 및 농가부업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농촌지역에 가용잠재세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제2안: 소득관련 지방세목의 통합을 통한 지방소득세 신설 방안

이 방안은 현행 지방세체계내 소득관련 과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자는 구상이다. 이 경우 주민세 소득할, 사업소득세 종업원할 및 농지세가 통합 대상이 된다.

③ 제3안: 현행 소득관련 지방세의 자원조달기능 확충 방안

주민세 소득할, 사업소득세 종업원할 등 기존 지방세제의 소득과세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소득과세의 지방세원화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주

민세 소득할의 세율 수준을 일정 수준 상향 조정하는 한편 사업소득세의 대상 세원을 확대 조정하는 구상이다.

특히 사업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과세 기능 강화의 측면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대상으로 하여 과세되는 종업원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즉 지역기업이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혜택과 비용의 일치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업원 급여총액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업원할의 과세대상을 기업의 부가가치 구성요소인 지불이자·지대·이윤 또는 매출액·자본금액·자산총액 등 사업활동의 「외형표준」 등으로 과세표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업세(도도부현세)를 외형표준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구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다. 즉 법인사업세를 외형표준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의 부담을 부과하기 위한 본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사업세를 외형표준과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자본금액, 자산총액, 건물임대가격, 종업원수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바, 이 중 매년 기업의 수익 수준을 가장 포괄적이고 합리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제4안: 공동세방식의 지방소득세 신설 방안

이 방안은 우리 나라 조세체계를 간소화

하는 동시에 소득과세를 지방세에 대폭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즉 주민세 소득할 중 소득세할과 법인세할은 본세에 각각 통합하고, 농지세는 (종합)소득세에 통합하며 동시에 주민세 농지세할도 폐지한다. 또한 법인소득과세의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사업소세 종업원할도 이를 법인세에 통합한다. 이처럼 소득관련 지방세 세목들을 국세에 통합하여 조세체계를 간소화하는 대신에 소득과세의 지방세 수용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동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한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하며, 통폐합된 현행 소득관련 지방세목의 세수 규모와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목표 세수 규모를 감안하여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결정한다. 그리고 지방소득세의 징수권은 국세와 통일적으로 국세청에서 담당한다.

(3) 대안의 평가와 지방소득세 도입 방안

상기한 네 가지 대안을 대상으로 세원배분 재조정의 논거에 따라 과세자주권의 보장, 부담분임과 응익성의 원칙, 징세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 조세체계의 간소화, 조세의 외부성(조세수출, 조세경쟁), 세수확충효과, 실행가능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여 그 장단점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자주권의 보장 측면에서는 세원분리방식에 따라 독립지방세목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제1~3안이 공동세방식인 제4안에 비해 다소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담분임성의 원칙과 응익성의 원

칙에 의하면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범위가 넓은 제4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그 다음으로는 제3안, 제1안, 제2안 순으로 그 비교우위가 인정된다.

셋째, 징세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보면 제4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제1~3안은 그 우수성을 차별화하기가 어렵다.

넷째, 조세체계의 간소화 효과 측면에서는 제4안이 가장 우수하며, 그 다음으로는 제2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1안은 종합소득세 과세체계를 훼손하고 있고, 제3안에 따라 외형표준과세 형태의 사업소세를 도입할 경우에는 법인세와 사실상 세원이 중복될 수 있는 등 제1안과 제3안은 조세체계의 간소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노정되고 있다.

다섯째, 조세의 외부성의 경우 공동세방식이 적용되는 제4안에서 최소한으로 통제될 수 있으며, 나머지 대안에서는 탄력세율이 가미될 경우에 한하여 조세경쟁과 조세수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섯째, 세수확충효과의 경우 제4안에서 가장 탄력적인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3안과 제1안이 그 다음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2안은 현행 지방세목체계하에서의 단순통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수확보는 기대하기 어렵다.

일곱째, 대안의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제2안이 가장 현실적이며, 그 다음으로 3안의 실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1안과 제4안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합의형성과 결단이 요망될

것이다.

이상의 평가기준에 따라 소득과세의 지방세 수용방안의 상대적 우수성을 평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제4안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그 다음으로는 제3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동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득세의 신설방안은 위의 제4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과세표준은 소득세와 법인세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지방소득세를 소득세할과 법인세할로 구분한다. 이중 소득세할 지방소득세는 기초지방정부 세목으로 배분하고, 법인세할 지방소득세는 광역지방정부 세목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지방소득세의 징세행정은 국세와 통일적으로 수행하되, 징세지주의 원칙에 따라 개별 지방정부에 지방소득세의 세수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광역지방정부의 세수배분조정권을 인정하여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소득세할 지방소득세 수입의 배분은 광역지방정부가 직접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일부 세원의 지방세 수용방안

(1) 지방세 이양 대상 세원

지역에서 창출·생성된 세원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의 지방세 이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유흥음식업, 소

매업, 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입장행위, 공업용수·상수도용수 등 수자원 등에 과세하는 부가가치세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과세장소(골프장, 스키장 등)와 과세유흥장소, 유류 및 승용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세원의 일부를 지방세원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이양 대상 세원의 지방세 수용 방안

이와 같이 지방세원으로의 이양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경우, 이를 어떤 형태로 지방세에 수용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를 공동세원화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 별도의 독립된 지방소비세(또는 관광세) 신설 방안, 그리고 유류관련 특별소비세(교통세)를 공동세원화하는 방안 등이 있다.

①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방안 지방소비세 신설

현행 부가가치세 세원 중 상당 세원들이 응징성의 원칙에 부합하고, 특히 직주분리에 따른 공공서비스 편익의 누출을 조세수출과 연계시킴으로써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편익과 비용분담의 괴리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 소비과세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일반소비과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 세원을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징세행정상의 어려움이 수반되는 물론이고 일반소비과세의 이원화(부가

가치세, 지방소비세)에 따른 납세자의 납세 협력 비용을 다수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소비과세의 특성상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과세권을 갖고 세율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조세경쟁 등 부정적인 조세의 외부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일반소비과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정부 세원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공동세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공동세방식을 통해 지방정부 세원으로 수용하는 방안으로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 그 하나는 일본의 지방소비세 형태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수용하여 광역지방정부 단위로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부가가치세를 광역지방정부 단위로 징세징주의 원칙에 따라 공동세원화하는 방안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광역지방정부 단위간 청산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등 징세행정이 보다 복잡한 반면 후자는 징세행정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수용하여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동세는 일단 광역지방정부 세목으로 설치하되 세수는 광역지방정부단위로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세수배분권은 광역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② 독립된 지방소비세 신설방안 관광세 도입

지방소비세 신설 방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원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제한적으로 지방세원으로 수용하는 방안, 즉 관광자원 및 관광행위 관련 세원을 지방세로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관광지내에서의 입장·숙박행위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 골프장·스키장 등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의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받아 관광세를 신설하는 것이 그러한 대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세의 신설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입 규모가 충분하지 않고, 징세행정상의 추가적인 부담도 수반되며, 조세경쟁 등 조세의 외부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③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공동세원화 방안: 주행세 도입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는 국세와 지방세로서의 적합성을 공히 갖추고 있다. 따라서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는 공동세방식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원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유류관련 특별소비세, 즉 교통세의 경우 이미 1999년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주행세를 신설함으로써 이를 국세와 지방세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주행세는 교통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이양하되, 지방정부간 세수 배분과정에서 각 자치단체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수입을 배분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세수배분방

식은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를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원래 휘발유, 경유 등 유류관련 특별소비세 수입의 지방세 이양 구상은 자동차의 도로이용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수익자 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하는 세원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이런 취지를 감안할 때 주행세의 세수배분 방식은 징세지주의 원칙을 수용하여 광역 지역단위의 전년도 유류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휘문·이삼주(1998)의 연구에 의하면 휘발유와 경유판매량을 기준으로 교통세의 세원을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것이 자동차 등록대수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보다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의 완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주행세의 세원과 직접 관련된 세수입을 징세지주의 원칙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효율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관광객, 교외거주자의 출퇴근 등 유동인구의 타지역 도로이용과정에서 파생되는 편익의 누출효과와 교통혼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의 도로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유류판매량을 세원배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재정(조세)의 외부성을 교정하는 데에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주행세는 교통시설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시적 목적세로 신설된 교통세를 공동세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행세는 (도단위 수준에서) 광역과 기초지방정부의 교통관련 투자재원의 비율을 기

준으로 이를 적정비율로 할당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자동차이용과세 강화, 보유과세 완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인 한미자동차협상에서 미국이 계속 단일세율화를 요구할 경우 자동차 관련 보유과세의 세수는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행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행세의 세수 규모가 확대되면 주행세의 세수 배분을 광역과 기초지방정부로 이원화하는 방안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주행세가 광역과 기초지방정부의 공유세원으로 전환될 경우 광역지방정부에 대한 세수는 해당 지역별 유류판매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광역지방정부가 기초지방정부에 주행세를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자동차등록대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기초지방정부단위에서는 유류판매량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의 역할

박 정 수
서울시립대 교수

I.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지역경제는 총량적인 성장위주 및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가경제정책의 수행으로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간의 발전격차가 심화되었고, 규모의 영세성과 구조의 후진성, 농촌경제의 심각한 낙후성 등으로 인해 지역간 균형발전, 성장과정의 공평한 분배 등에 많은 역기능을 보이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시책들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집중현상은 더욱 강화되었고 지방은 정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농어촌지역을 포함하는 낙후지역의 경우 도시와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고 저소득층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젊고 활력있는 인구의 도시유출과 함께 노령화

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형편이다.

지방공업도시의 경우 산업현장에서 정보이용 기회가 적고 연구개발기능이 약하여 기술개발력이 크게 떨어지며, 문화, 교육, 여가시설 등에서 열악한 도시생활여건으로 고급인력을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별 인구구성비와 생산구성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표 1>을 살펴보면 인구는 대도시와 주변지역의 일부인 경기도로 유입되었는데 대도시 및 경기도에서의 생산비중은 감소하거나 인구증가에 비하여 소폭 상승한 반면 기타지역의 생산비중은 인구감소에 비하여 소폭 감소하고 있다. 서울, 인천의 비중 감소로 수도권의 경제력집중 현상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경기의 비중 확대는

서울의 생산기반이 경기로 이전되는 현상으로 인해 서울의 생산비중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비중이 급속히 커지고 있어 수도권 전체의 감소 폭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대도시권역 공장의 중과세정책과 지가상승 등으로 생산활동이 탈대도시화하는 반면 교육·문화 등 주거환경은 대도시가 아직 유리하여 인구가 대도시 또는 그 권역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 역할의 미약도 이러한 수도권집중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본 고에서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의 역할을 자율적인 정책결정권과 관련하여 지방세의 자율성 및 책임성 그리고 조세지원정책의 부문으로 나누어 논의하기로 한다.

<표 1>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및 인구구성비(1985~1999년)

(단위: %, 천명, 10억원)

시 도	1985		1994		1999	
	인구비율	생산비율	인구비율	생산비율	인구비율	생산비율
서울	23.8	25.8	24.1	25.1	21.5	21.5
부산	8.7	8.2	8.5	6.8	8.1	6.3
대구	5.0	3.9	5.1	3.9	5.4	3.4
인천	3.5	4.3	4.8	4.8	5.4	4.4
광주	2.6*	2.1*	2.7	2.3	2.9	2.2
대전	2.4*	2.3*	2.6	2.3	3.0	2.3
울산	-	-	-	-	2.3	5.1
경기	11.8	12.9	16.4	16.3	19.3	20.2
강원	4.3	3.7	3.3	2.7	3.2	2.6
충북	3.4	3.4	3.1	3.2	3.1	3.7
충남	7.4	6.1	6.8	6.4	3.9	4.6
전북	5.4	4.1	4.3	3.6	4.1	3.5
전남	9.3	7.6	7.7	7.4	4.4	5.2
경북	7.4	7.4	6.2	6.8	5.9	6.8
경남	8.6	11.6	8.5	11.9	6.4	7.2
제주	1.2	0.9	1.2	1.0	1.1	1.0
서울·경기·인천	39.1	43.0	45.3	46.2	46.2	46.1
전국	40,806	78,266	44,453	305,974	44,608	485,016

주: 1994년 충남과 전남의 수치는 광주와 대전포함 수치이며 *는 1989년 수치임. 1999년자료에서 울산은 광역시로 경남에서 분리됨.

자료: 「1992년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1994, 「1994년 지역내총생산」, 1996, 「1999년 지역내총생산」, 2000, 통계청.

II. 지방세와 지역경쟁력의 관계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방세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은 상위단체나 중앙정부에 의해 제약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논거를 지닌다. 248개 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의 의사결정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책임은 또한 그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가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을 결정함에 있어 자금조달 비용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에서 지방세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여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재원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장이 부담한다. 정치적 시장은 경제적인 시장보다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경제적인 한계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시장에서는 주민의 선호, 지역의 경제적 발전보다는 중앙정부의 의사, 배분방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주민과 지역기업들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구축의 혜택에 대하여 적절한 재정 부담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자치단체는 주민 및 지역기업들이 부담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원동원에 대해 주민들이 느끼는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자체세입으로 재정지출을 하여야 한다.

지역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국가정책적인 차원에 이루어지는 결정에 의한 국가산업공단 등의 지정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 책임성(accountability)은 대개 지방재정의 자립도에 의존하며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체세입의 개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이다. 그러나 지방재정 세입의 구성요소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 개념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는 세외수입은 그 요율결정권한이나 징수권, 사용권 등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자체세입에 포함되어야 함이 명백하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에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지방세는 정책결정권과 징수권, 사용권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정책결정권은 중앙정부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권과 사용권만 갖고 있는 경우, 중앙정부가 정책결정권과 징수권을 갖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용권만을 갖고 있는 경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결정권의 전부 또는 일부와 사용권만 갖고 있는 경우로 구분하

여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자체세입의 정의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정책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지의 여부이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지방세에 대한 정책결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세는 별다른 구분없이 모두 자체세입으로 간주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한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이 문제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란 모든 정부 또는 자치단체는 법률에 의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법률은 중앙정부의 단위에서 제정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조세법률주의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결정된 조세이다. 징수권은 중앙정부에 있을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수도 있으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결정권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 있으며 일부 세목의 경우 탄력세율제도를 두어 법률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조세정책결정권은 중앙정부에 있으며 상당수 세목의 경우 정책결정권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결정권을 갖고 있는 세목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거나 과표를 확대할 경우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

해 반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증가된 세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민들의 효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세입증가에 따라 늘어난 주민들의 부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이 지방자치단체를 지지하지 않게 되며 조세저항을 할 것이다. 그 결과 다음 선거에서는 다른 사람을 자치단체 대표로 선출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정책에 의해 징수된 조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세 부담 증가의 책임은 중앙정부가 지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주어진 세입을 사용하면서 주민들이 납세할 때 느끼는 부담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탄력세율이 허용되는 세목들을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세목이 세입의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세정책에 대한 결정권이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있는 조세가 과연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상황하에서 지방세로서 적절한가.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특성은 응징성, 세원의 이동성, 세수의 안정성, 신장성 및 충분성, 세원의 분포, 세무행정의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지방세에 대한 조세정책결정권을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경우 세원의 이동성 기준을 완화시켜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곧 조세정책결정권을 중앙정부에 부여함으로써 지방세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수입의 충분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징수권마저도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다면 세무행정에 관한 문제도 그리

큰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응익성의 측면에서는 조세정책결정권의 중앙집중화로 인해 오히려 문제가 커지며, 세원의 분포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응익성의 관점에서 보면 양질의 지방공공재를 많이 공급하는 지방에서는 주민들에게 많은 세부담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지방에서는 세부담을 축소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공공재 공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우며 특히 이에 대한 주민의 평가에 관련된 정보획득은 더욱 어렵다. 이러한 정보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 중앙정부의 조세정책은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획일적인 정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에서 지방세와 관련된 조세정책을 결정할 경우 응익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세원의 지역적 분포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지역간 경제력 격차는 있게 마련이며 따라서 세원의 격차도 있게 마련이다. 어떤 세목이든지 모든 지역에 완전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세목은 없다. 그러므로 지방세로서 적합한 세목은 세원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세목을 의미한다. 세원이 완전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으면 지방세의 존재 자체가 지역간 재정력 불균등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모든 조세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비교적 세원이 고르

게 분포되어 있는 세목을 골라서 지방세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세입확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운영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입확보에 대한 자율성을 갖고 있지 않고 중앙에서 조세정책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확대하면서 굳이 이를 지방세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 어차피 지방정부에서 과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교부세 등의 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목적이라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Bird(1993)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세(truly local tax)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한 세율에 의해 과세하고 징수, 사용하는 조세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에 지방세가 이러한 특성 중 일부만을 갖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세부담 결정권으로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세목은 지방세라고 간주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즉, 지방재정의 책임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조세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권을 갖는 세목은 지방세라기보다는 오히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 의미가 있는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Bahl and Linn(1992) 역시 이와 같은 지방세를 공동세의 한 형태라고 간주하고 이를 재정조정제도에 포함시키고 있다.

III.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지방세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적 지출을 위한 재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조달비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지방세로 조달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결과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임성일(1999)과 안중석(2000) 등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치단체간 자체세입의 격차가 지출의 격차에 정(+)의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으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할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세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재정의 책임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간 서비스 공급의 격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민의 이동이 발생하고 이 때 주민의 이동이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의 이동은 자신들의 사적인 비용과 편익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잡비용 등 외부효과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또한 다른 요인으로 이동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은 이동을 못하면서 사회적인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역간 서비스 공급에 있어 지나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하는 형평

성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경쟁력강화를 위한 책임성과 형평성에 대한 정책의 조화가 중요하나 현재와 같이 형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지는 재정운영이 곤란한 상황이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증가 즉 한계적 지출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조달의 한계비용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세입의 관점에서 본 자체세입 특히 지방세로 충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재원과 자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세입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운영, 즉 생존에 필요한 기본경비보다 작은 수준으로 한정하고 그 이상의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IV.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정책

1999년 지방세 총 징수액은 18조 5,862 억원으로 실제 부과액과 비교하면 징수율이 83.8%에 불과하여 1990년 94.4% 이후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방세과 세대장 상에 세원으로 포착되어 부과된 세

액 중 실제로 징수되는 비율이 하락하는 현상은 지방세부문의 세무행정력의 강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문제이지만,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공공정책적 차원에서 조세를 경감시켜 마찬가지로 세원부족의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이 뒤늦어, 전국 통일적인 지방세법의 입법과 중앙집권적인 지방재정제도의 일부로서의 지방세제라는 특징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도하에서의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책임지고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중 서비스수요자이자 투표자인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자주적 재원이므로, 모든 구성원이 공평한 세부담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은 경감대상 이외의 일반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우게 되어 지방자치 기본원칙에의 위배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국세차원에서 조세지출예산제도가 도입된 취지와 맥을 같이 하여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는 국민개세원칙과 공평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조세특례로서 감면요건은 그 대상과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고 감면의 시간적 범위도 한시성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반면에 지방세 감면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박탈된다는 의미에서 자치단체의 과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의 역할은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세감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환경을 감안한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감면이 시행될 때 지역경쟁력의 강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1.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

조세의 감면제도는 이미 성립한 지방세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목적을 위하여 해제하여 과세면제하거나 경감한다는 의미에서 세법상 특정대상을 과세대상에서 근본적으로 배제하는 비과세제도와는 이론적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비과세의 경우도 세법 입법 당시부터 특정대상이 전체 과세체계상 과세대상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과세체계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지 조세정책적 이유 때문에 특정대상을 제외하여 비과세하는 경우도 많다. 현행 세법상 지방세 비과세제도와 감면제도를 구분하는 실익은 비과세는 지방세법 하나가 근거법인데 반해 감면제도는 지방세법과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관련 법률에서 각각 감면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또한 비과세제도는 납세협력의무자체에서 면제되나 감면제도는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해제하는데 불과하므로 감면신청이나 자료의 제출과 같은 납세협력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지원제도를 총괄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지니는 법으로, 지방세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자체에도 지방세의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조항이 있는바, 동법 제119조는 “등록세의 면제등”을, 동법

<표 2> 세목별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단위: 백만원, %)

세목	합계(비중)		지방세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비과세	감면		
취 득 세	805,976	38.1	162,800	232,694	336,015	74,467
등 록 세	878,419	41.5	119,740	172,912	404,040	181,727
면 허 세	5,361	0.3	2,027	-	3,334	-
주 민 세	2,940	0.1	2,923	-	16	-
재 산 세	63,748	3.0	32,477	22,180	7,345	1,746
자동차세	62,363	3.0	9,602	4,545	48,216	-
지역개발세	58,458	2.8	58,458	-	-	-
종합토지세	132,249	6.3	95,586	23,028	12,889	746
도시계획세	70,614	3.3	61,707	3,555	5,352	-
공동시설세	13,918	0.7	10,941	1,602	1,376	-
사업소세	22,984	1.1	18,001	4,510	474	-
합 계	2,117,031	100%	574,262	465,025	819,058	258,686

자료: 지방세정연감, 2000

제 120조는 “취득세의 면제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21조는 “재산세등의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의 목적은 산업의 구조조정과 창업중소기업지원등이다.

한편 지방세법에는 지방세의 감면과 비과세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비과세에 대해서는 각 세목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감면에 대해서는 1994년의 지방세법 개정시 이를 제 5장 “과세면제 및 경감”이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여기에서 지방세감면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감면은 17개 지방세목 중 재산과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의 8개 세목에서만 허용

된다. 감면내용은 농어민지원을 위한 감면,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감면,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감면, 공공법인 지원을 위한 감면, 공공사업등의 지원등 5가지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감면규정이 지방세법에 수용된 이후 1986년, 1991년, 1994년, 그리고 1997년의 모두 4차례의 감면규정개정을 통해 감면대상과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조정하고 있다.

조례에 의한 지방세감면의 경우, 과거에는 해당 조례의 공간적 적용범위에 따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조례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등 특정 자치단체에게만 적용되는 조례로 구분하여 개별 감면조례를 적용하였으나 1995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조례의 적용범위에 따라 표준적인 감면조

례안을 바탕으로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도세, 시·군세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규정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

<표 2>에 의하면 역시 등록세와 취득세 감면이 압도적이며 다음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순으로 주요 세목을 구성한다. 1999년 실적기준으로 감면규모는 2조 1,170억원이며 이 중 지방세법에 의한 것이 1조 393억원으로 전체의 49.1%를 차지한다. 다음이 조세감면 조례로 8,191억원 38.7%,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은 12.2%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의한 감면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의한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공통조례에 의한 감면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지역경쟁력강화를 위한 지방세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2. 지방세지원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앞에서 지적한대로 우리 나라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지방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특별감면조례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 개별법률이 있다고 할 수 있는바 현재 우리 나라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과세·감면의 규모가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의 감면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획일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 재정제

도의 주된 기능이 안정적 경제성장과 소득 재분배이고, 지방정부는 재정력(fiscal resources)의 배분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Musgrave의 견해를 따른다면 지방세입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보다 엄격한 기준에서 이루어져서 지자체의 재원잠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총계 및 세목전반에 걸쳐 그 절대액과 징수액 대비 비율 양쪽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7년의 경우 징수액기준 9.8%로 감소하다가 다시 1999년 11.4%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현상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재원조달 기능이 취약한 지방세의 조세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 정도에 불과하고, 정책과세로서의 기능이 보다 적절한 국세에서의 비과세·감면 비율이 1991년 이후 12~13% 수준으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욱 축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과세주체이며 세수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주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보다는 중앙정부수준의 결정에 의해 중앙정부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항목이 많고 감면세액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현행법령상 지방세법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입법화되었으므로 전적으로 중앙정부수준에서 결정된 비과세·감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법상의 비과세·감면이나 대부분의 전국공통조례 또

한 중앙정부수준에서 입안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지방세감면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결국 특별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중 특정 지방자치단체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자치단체조례에 의한 감면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지방세감면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성숙한 외국의 경우 정책과세는 중앙정부의 세목인 국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방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사회적 약자 및 천재·재난과 같은 공적부조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직접 과세권이 있는 세목의 지방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셋째, 우리 나라 지방세는 세수중 부동산

관련 세목의 비중이 높다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감안하여도 총비과세·감면액중 부동산관련 세목의 지방세·비과세 감면비중은 더욱 높다는 점이다. 지방세중 재산과세 비중은 대략 65% 수준인 반면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액중 부동산관련 감면액의 비중은 95%를 차지하여 부동산관련 세목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총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세목별 상대적 비중 중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6개 세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6개 세목은 모두 부동산 등 재산관련 조세이고, 이중 종토세와 도시계획세는 토지보유세이고 재산세는 거의 건축물

<표 3> 세목별 지방세 감면의 비중 추이

(단위: %)

	1992	1993	1995	1999
취 득 세	37.2	35.8	34.1	38.1
등 록 세	34.3	37.9	38.0	41.5
면 허 세	0.1	1.2	0.1	0.3
주 민 세	0.3	1.9	0.4	0.1
재 산 세	4.8	3.0	2.4	3.0
자동차세	0.2	0.4	1.0	3.0
농 지 세	0.1	0.0	0.0	-
지역개발세	0.8	1.1	2.2	2.8
종합토지세	19.5	16.1	14.8	6.3
도시계획세	1.9	1.8	5.3	3.3
공동시설세	0.3	0.3	0.8	0.7
사업소세	0.5	0.6	0.8	1.1
계	100	100	100	100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년도.

보유세이며, 등록세와 취득세는 대부분 부동산관련 취득과세이므로 전체 감면액중 부동산관련 조세감면에서도 취득단계의 감면이 보유단계의 감면보다도 높다는 특징을 또한 반영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종토세의 비중 감소와 도시계획세 및 자동차세의 비중강화라고 하겠다.

다섯째, 정책적인 목적에서 비과세·감면이라는 조세혜택을 부여한 결과 정책목적에서 의도하는 효과를 보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위에서 현행 비과세·감면의 지속·폐지·조정이라는 탄력적 운영방식이 보장되지 못하는 지방세지원시스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조세감면은 보조금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직접지출이 아닌 세제를 통한 간접지원이라는 형태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어서, 조세감면이 허용되고 나면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통제상의 어려움이 있어 국세와 차이를 보인다. 국세의 경우는 비록 총액수준이기는 하나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국회의 심의가 개괄적으로는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시사받는 바가 크다.

3. 외국의 지방세 감면제도

외국의 지방세제도는 크게 연방제 국가 형태를 취하느냐 단일형 국가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각 국가형태별로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재산세의 부류에 속하는 지방세의 종류와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인다. 재산보유세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대상과 근거에 기초하여 통상적으로 행해진다.

첫째, 정부 및 공공기관 소유 부동산(institutional properties)에 대해서는 지방재산세 부과가 면제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비과세관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소유 건물내의 공무원에게도 다른 건물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지방행정서비스는 제공되며 지방세가 비과세됨으로써 정부건물 입지선정의 상대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어 정부가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인 장소에 위치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비과세되는 부동산 때문에 정부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는 상대적으로 세수결손이 크다는 점이다.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중앙 및 주정부들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대신 실제재산세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호협약하에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동산의 종류별로 그 비율이 많은 차이가 나서 일정한 유형이나 절차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지역적 투자활동을 촉진하는 세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비과세·감면 유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 유치 및 창업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혜택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유인책으로 사용한 재산세감면혜택이 수혜자입장에서 사업확장을 유도하기에 충분한 비용절감효과가 있었는지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결정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재산세율이 더욱 낮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재산세감면이 경제개발을 촉진시키는데 유효할 가능성은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류의 비과세·감면은 자가거주재산에 대한 것으로, 그 목적은 자가거주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며, 임대주 및 임차자 그리고 영업용 재산에는 보다 중과세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목적의 비과세 또는 면세가 주어지고 있으며, 그 외의 국가에서도 우대과세평가나 우대세율적용을 통해 감면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재산세율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소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지 모른다는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오히려 자가거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가장 중요한 기대효과는 재산세의 공평성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형평성의 순효과는 자가거주자, 임차자, 임대주 간 상대적 소득수준, 부채지주의 보편도, 재산세의 임차자에 대한 전가(tax burden shifting)수준에 달려 있다.

4. 지방세감면제도의 개선방향

첫째, 납세주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세대상의 특성에 따라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리하는 원칙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비과세와 감면을 부여하는 경우는 특정주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특정용도에 대해, 특정주체가 특정용도의 행위를 할 때의 3가지 범주로 나누어 조세경감이 차등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유형의 대표적인 경우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의 경우로, 지방세법상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라는 법적 주체(legal entity)에 대해서는 모두 지방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응익의 원칙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의 경우는 그 비과세대상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공공 및 공익법인이라는 특정주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비과세·감면은 특정용도에 한해 사용될 때에 한해 조세경감이 이루어진다는 기본원칙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는 기능을 위해 도입한 종합토지세의 경우 전국 인별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세제이면서도 세부담의 경감과 중과를 위해 분리과세대상유형의 토지를 지정하고 있으므로 비과세·감면을 통해 해당토지와 표액을 제외시키거나 경감하기보다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지정하여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정부가 부여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혜택으로 세수결손이 심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중앙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의 배분시 이를 감안하는 제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대안으로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과 증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방안 그리고 보통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계산시 중앙정부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해당 지자체가 손실을 입은 세수감소액을 반영하

는 등의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동 제도의 도입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유도하는 정책적 신호역할과 함께 지방재정의 확충 및 지방재정불균형의 완화, 그리고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 일부 국유재산의 관리충실화가 가능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정책자율성 및 효과성 제고와 조세의 중립성회복이다. 현행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감면제도는 비과세·감면에 대한 기준설정과 그 구체적인 대상선택을 분리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를 분담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현행의 지방세법이 지방자치제도실시

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법을 운영하고 있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구체적인 대상선정 및 감면을 선택권을 동급 지방정부내에도 허용하여 정책자율성과 재정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몰법제도를 특정주체, 특정용도별로 효과를 평가하여 지방세감면도 정기적으로 예산과 같이 심의되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조세체계의 간소화 등 지방기업의 납세순응비용감소노력과 조세지원정책의 자율성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세 관련용어 해설

◆年賦(연부)

채무를 毎年 一定額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辨濟方法인데 年賦는 일시에 完濟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기한을 猶豫하기 위하여 행하여지지만, 부동산 담보의 貸付 등에서는 貸付의 안전을 피하기 위하여 元利(均等) 年賦償還의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地方稅徵收 優先權과 國稅徵收 優先權의 優劣關係

송 쌍 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

I. 債權의 種類와 租稅債權 等 의 概念

1. 채권의 종류 : 민사채권 · 공과금 채권 · 조세채권

채권이라 함은 특정인(이는 채권자이다)이 다른 특정인(이는 채무자이다)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이행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이행할 것을 요구받는 '일정한 행위'(즉 채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 부른다. 이 給付는 경우에 따라 이행·지급 등으로도 표현된다. 그리고 이 급부는 대개 적극적으로 행하는 행위 즉 作爲를 의미하지만, 때로는 소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不作爲를 의미하기도 한

다. 이처럼 채권은 타인의 급부를 요구하는 것을 작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請求權(타인의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것을 작용으로 하는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고 설명한다.¹⁾

이와 같은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하는 주체는 대개 私人(개인 또는 법인)이다. 이처럼 사인(民間人)이 청구권자가 되는 채권을 「民事債權」²⁾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사인만이 아니라 국가(중앙정부) 또는 公共團體³⁾가

1) 이 점은 소유권 등과 같은 物權(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 권리)이 支配權(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것을 작용으로 하는 권리)의 성질을 지니는 점과 비교된다.

2) 이 글에서 「 」과 같은 식으로 표시된 용어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필자가 만들어 쓰는 말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채권자로 되는 채권도 있는 바, 이를 넓게 「公課金債權」이라 부를 수 있다. 하지만 공과금채권을 이처럼 넓게 이해한다면 다음에 설명하는 국세우선권이나 지방세우선권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넓은 의미의 공과금채권 중에서 조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채권을 특히 「租稅債權」⁴⁾이라 부르고, 이것을 제한 나머지만을 「公課金債權」(좁은 의미의 공과금채권)이라 부르는 개념구별이 필요하게 된다. 국세기본법이 바로 이같은 개념구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이하 「기법」이라 약칭> 2(8) 참조). 이 분류는 「租稅優先權」⁵⁾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2. 公課金債權(좁은 의미의)의 概念과 채납처분의 예

국세기본법은 그 제2조 제8호에서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滯納處分の 例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

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채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⁶⁾ 이 조항에서 말하는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⁷⁾ 및 지방세’는 한마디로 ‘조세’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은 조세와 조세 이외의 것으로 대별되는 결론이 나오게 되며,⁸⁾ 이들 가운데 후자 즉 조세 이외의 것이 공과금에 해당하게 된다.⁹⁾ 따라서 이러한 공과금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공과금채권」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¹⁰⁾ 이는 「좁은 의미의 공과금채권개념」이며, 그러기 때문에 이는 조세채권이나 민사채권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하에서 언급하는 공과금채권은 여기에서 말하는 「좁은 의미의 공과금채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전제하기로 한다.

3) 공공단체라 함은 국가 밑에 국가로부터 그 존립 목적을 부여받은 공법상의 법인을 말한다. 이에 는 지방자치단체와 公共組合(농지개량조합이나 산림조합 등과 같은 공법상의 社團法人) 및 營造物法人(한국방송공사나 서울대학교병원 등과 같은 독립의 법인격을 갖춘 공공시설인 公的 財團法人)이 포함된다.

4) 이는 다시 당해 조세가 국세일 경우에는 국세채권이 되고, 당해 조세가 지방세일 경우에는 지방세채권이 된다. 이 점은 당연한 이치이다.

5) 이 말은 국세우선권과 지방세우선권을 포괄하는 말로 쓰일 수 있는 용어이다.

6) 여기에서 말하는 징수는 일반적인 의미의 징수가 아닌 強制徵收를 의미한다.

7) 임시수입부가세는 臨時輸入附加稅法이 근거법이며, 關稅의 附加稅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에 관한 과세실적이 없다.

8) 위 조항의 법문 가운데 ‘滯納處分の 例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이라는 표현을 음미할 것.

9)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의 표현은 이처럼 조세채권도 ‘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채납처분이 조세채권의 강제집행 그 자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표현상의 모순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공과금채권만이 ‘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10) 위 법문은 단순히 ‘공과금’이라 표현하지만, 이는 문맥으로 보아 「공과금채권」으로 이해하여야만 앞뒤가 맞다. 마찬가지로 ‘조세’는 ‘조세채권’이라 이해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공과금채권이나 조세채권 및 민사채권은 모두 최악의 경우에 부득이 강제실현의 절차가 필요하게 마련이며, 그러한 강제실현절차로서의 공과금채권이나 조세채권에 관하여는 민사채권의 경우와는 달리 ‘滯納處分’이라는 절차가 동원되는 데에 비하여 민사채권에 관하여는 ‘強制執行’이라는 절차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들 두 절차는 서로 같은 성질의 것들이면서도, 그 강제실현방법의 전제조건에 있어 크게 차이가 있다.

원래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이라는 것은 강제적인 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는 점에서 보면 그 본질면에서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強制執行과 같다. 다만 체납처분은 징수면의 강제이며, 강제집행은 債權回收面의 강제라는 점에서 다를 따름이다. 즉 이들은 모두 ①押留(특정한 재산의 처분을 금하도록 조치하는 절차) ②賣却(換價—재산의 처분을 통하여 현금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절차) ③清算(配分—채권·채무를 정리하는 절차) 등 세 단계로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에서는 서로 같다. 그러나 이들 세부적인 내용을 놓고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이 그것을 규정하며,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그것을 규정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민사채권자가 행사하는 강제집행은 그것을 자기책임으로 직접 진행할 수 없고 執行官(강제집행에 관한 처분을 행하는 공무원)¹¹⁾의 힘을 빌어서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他力執行이 된다.¹²⁾ 그리고 이 타력집행을 위하여는 법원의 判決文 등과 같은 이른바 債務名義(다른 말로 執行名義)를 따로 갖추어야 한다.¹³⁾ 반대로 국세징수법 등이 규정하는 滯納處分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그것을 집행하므로 自力執行이 된다. 그리고 이 자력집행을 위하여는 채무명의가 따로 필요없다(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일상적인 징수절차를 거치면 된다). 그러므로 ‘체납처분의 예’를 공과금에 한정하여 설명한다면, 당해 공과금을 취급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조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한 체납처분과 같은 식으로 채무명의 없이 몸소 행하는 자력집행으로 공과금채권에 관한 체납처분(예컨대 押留處分)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매각 절차나 청산절차도 자력집행으로 진행된다.

위 체납처분은 국세징수법만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세법도 이를 규정한다(지방세법<이하 ‘지법’이라 약칭> 28 참조).

11) 집행관을 1995년까지는 執達官法의 규정에 의하여 執達官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를 執達吏法의 규정에 의하여 執達吏라 불렀다. 위 집달관법은 1995.12.6.자로 執行官法으로 전면개정되었었다.

12) 민사채권의 강제실현을 타력집행으로만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이유는 민사채권자의 경우에 그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13) 판결문이 아닌 집행명의를 예로는 공증된 어음을 들 수 있다. 이는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수취인이 합동법률사무소 등에 가서 어음公證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 공증서류에는 재판관을 거치지 않고 행하여지는 강제집행을 어음채무자가 달게 받는다는 약관(이를 強制執行認諾約款이라 한다)이 들어가 있다. 이 약관이 곧 채무명의가 되는 것이다.



다만 지방세법은 이에 관하여 원칙규정만을 두고 지방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한다(지법 28④ 참조). 이 경우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원칙규정의 내용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채납처분과 그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 그리고 공과금에 관한 정의규정은 지방세법에 따로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위의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채납처분의 예’를 ‘국세채납처분의 예라고 좁게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지방세채납처분의 예’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어떤 법에서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바, 그것도 역시 공과금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국세채납처분이나 지방세채납처분은 그 본질에서 같으며 지방세채납처분도 그 대부분의 절차를 국세채납처분의 예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것을 공과금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

현행법이 공과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규정하는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土地收用法 제78조는 토지 또는 물건의 이전대행비용을 구·시·군의 장이 그 의무자로부터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大氣環境保全法 제19조 제9항은 排出賦課金 또는 加算金을 ‘국세 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

法律 제29조 제6항은 排出賦課金 또는 加算金을 ‘국세 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한다.

(4) 道路交通法 제115의2 제9항은 과태료를 ‘국세 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河川法 제88조 제5항은 과태료를 ‘국세 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한다.

(6) 下水道法 제38조 제3항은 사용료·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상의 규정예를 보면, “징수한다”는 표현과 “징수할 수 있다”는 표현이 서로 엇갈리고 있지만, 이들 사이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다. 왜냐하면 그 징수행정면에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II. 地方稅徵收 優先權과 國稅徵收 優先權의 概念

1. 양자의 개념 : 「租稅優先權」

지방세법 제31조는 ‘지방세의 우선이라는 표제 아래 그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내용을 놓고 흔히 ‘지방세 우선권’이라고 부른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채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국세 우선권’을 천명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地方稅債權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國稅債權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른 공과금’은 공과금채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이라는 표현이다. 이 것은 사실상 잘못 들어간 표현으로서 조문의 내용을 파악함에 있어 오히려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조세채권도 공과금이라는 전제 아래 조세채권이 아닌 공과금이라는 식으로 이해되므로 국세기본법이 공과금을 「좁은 의미의 공과금채권개념」으로 규정하는 바와는 어긋나는 문제점을 안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일본 세법에서는 이것들을 ‘모든 公課’라 표현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¹⁴⁾ ‘기타의 채권’은 조세채권과 공과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의 채권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개념이다. 결국 이는 민사상의 채권

내지 민법에서 말하는 채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민사채권이라 불러도 좋다고 생각된다.

2. 「租稅優先權」의 본질 : 조세징수상의 우선권

위의 두 조항 가운데에서 우선 주목할 대목은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표현이다. 이는 징수면의 우선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부과면의 우선권은 아니기 때문이다. 흔히 ‘국세우선권’이라고 하면, 조세부과면에서도 생기는 우선권인양 오해하지만, 엄밀하게는 ‘국세징수의 우선권’이다. 마찬가지로 ‘지방세우선권’이라고 하면, ‘지방세징수의 우선권’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¹⁵⁾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컨대 조세부과는 특정한 납세의무자의 부담세액이 얼마인가를 확정짓는 절차이다. 그러므로 부과에 관한 한 그 과세권자들끼리 優先順位(우선권)를 가릴 이유가 없다. 그러나 조세징수는 납세자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國庫 또는 地方金庫로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다른 채무 즉 납세자가 부담하는 公課金債務 또는 民事債務와 경합¹⁶⁾이 일

14) 日本 國稅通則法 제8조와 日本 地方稅法 제14조에서는 ‘모든 公課 기타의 債權’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는 공과금채권이나 기타의 채권(위에서 말한 민사채권)의 모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세채권이 행사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법도 ‘다른’이 아니라 ‘모든’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차라리 ‘다른’이라는 문구를 빼버렸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필자의 짐작에 불과하지만 당초에 국세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일본 국세통칙법을 번역하여 참고하였는데 그 당시에 잘못 번역된 문장을 그대로 조문화한 결과 이 ‘다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15) 일본 세법에서는 이 내용을 우리의 國稅基本法에 해당하는 國稅通則法에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國稅徵收法에 규정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 겹하여 일본 세법은 이것들을 규정하는 조문표제에서 ‘국세우선의 원칙’과 ‘지방세우선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일본 국세징수법 8 및 일본 지방세법 14 참조).

16) 이 경우의 경합은 다른 조세채권과의 경합일 수



어날 경우에는 우선징수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압류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같은 물건을 놓고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우선권이 문제된다.

요컨대 租稅徵收權을 행사함에는 과세권자가 중앙정부인 국세에 관하여는 국세징수의 우선권이 문제될 수 있으며, 과세권자가 지방정부인 지방세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우선권이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세는 다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로 나누어지므로 이들 각각에 관하여도 지방세징수의 우선권이 문제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 각 경우에 租稅賦課 측면의 우선권이 아니라 租稅徵收 측면의 우선권 즉 「租稅徵收의 優先權」이 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租稅의 優先徵收權」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3. 租稅優先權의 특징 : 조세채권이 아닌 채권에 대한 우선징수권

「租稅의 優先徵收權」은 어떠한 종류의 채권에 대한 우선징수권인가를 보면, 이는 한마디로 「조세채권이 아닌 채권에 대한 우선징수권」이다. 그러므로 이는 공과금채권에 대한 우선징수권이라는 의미와 민사채권에 대한 우선징수권이라는 의미를 포

함한다. 다시 말하면 조세채권은 그 징수과정에서 공과금채권 또는 민사채권과의 競合關係에 놓이게 되면 반드시 우선징수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다른 조세채권에 대한 우선징수권은 아닌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흔히 생기는 오해는 ‘국세우선권’이라는 표현에 현혹되어 국세채권과 지방세채권이 징수과정에서 서로 경합될 경우에 국세채권이 마치 지방세채권에 대하여도 우선징수권을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 강조하건대 국세채권이 지방세채권에 대하여 우선징수권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같은 이치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채권이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채권에 대하여 우선징수권을 갖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조세채권들끼리 징수과정에서 서로 경합될 경우에는 어떠한 원칙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 점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은 「押留優先의 원칙」에 입각하여 압류를 단행한 조세채권쪽이 우선징수권을 갖도록 하는 조정원칙을 채택한다(기법 36, 지법 34 참조).¹⁷⁾ 이 점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우선징수권에 관한 규정들이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다같이 입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에서 지적한 오해가 얼마나 쉽게 저질러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도 있고, 민사채권이나 공과금채권과의 경합일 수도 있다. 요컨대 징수권자 또는 채권자가 다를 경우에는 언제든지 경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17) 「押留優先의 원칙」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조세채권은 다른 압류기관의 既押留(先手를 친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다시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Ⅲ. 및 IV.장의 참고설명 참조).

(다음 Ⅲ. 및 Ⅳ.장의 참고설명 참조).

Ⅲ. 民事債權 및 公課金債權에 대한 優先徵收權의 發動

1. 競合이 없는 경우의 조세채권의 強制徵收方法

조세채권에 관하여 비강제적인 평화로운 방법을 통한 징수(收納)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滯納處分이라는 강제징수의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전술 참조). 이 경우에 공과금채권이나 민사채권 또는 다른 조세채권과의 競合이 일체 없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원칙적인 체납처분절차 즉 ① 독촉장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단행하는 押留(국세징수법<이하 ‘징법’이라 약칭> 24①(1) 참조) ②비화폐적 재산을 換價하는 賣却(징법 61 이하 참조) ③압류한 금전이나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清算(징법 80 이하 참조) 등의 세 단계를 거쳐 징수하면 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통의 체납자는 으레 民事債務를 부담하고 있으며, 겹하여 公課金을 체납하는 예도 많다. 그러므로 조세채권과 민사채권 또는 공과금채권이 서로 競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법률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조세채권이 민사채권과 競合하는 경우를 보고, 다음으로 공과금채권과 競合하는 경우를 보기로

한다.

2. 民事債權에 대한 조세채권의 우선징수권 발동

조세채권이 그 강제징수과정에서 민사채권과 競合을 이루는 경우는 이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조세채권쪽에서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를 단행한 다음에 민사채권쪽에서 競合하여 오는 경우이고, 그 다른 하나는 민사채권쪽에서 강제집행을 위한 압류를 단행한 다음에 조세채권쪽에서 競合하는 경우이다. 이들 각 경우의 競合방법은 사뭇 다를 수 있다. 다음에서 보기로 한다.

먼저 조세채권쪽에서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를 단행한 다음에 민사채권쪽에서 競合하여 오는 경우에는 민사채권쪽에서도 정식의 압류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기존의 조세채권에 관한 압류가 이미 있었는가에 관계없이 압류를 단행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좋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민사채권에 관한 競合방법으로서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交付請求(징법 56)나 參加押留(징법 57)와 같은 제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조세채권의 우선징수권이 존재함은 물론이므로, 당해 조세의 징수권자는 원래의 계획대로 매각절차와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그 다음으로 민사채권자의 押留機關(執行官事務所)은 조세채권에 배분되고 남은 재산(예 매각대금)에 대하여 민사채권의 압류에 관한 배분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민사채권쪽에서 강제집행을 위한 압류를 단행한 다음에 조세채권쪽에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채권의 징수권자는 交付請求(징법 56)나 參加押留(징법 57)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위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징수권자의 판단에 달린 일이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이들 양자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참고설명** : 交付請求와 參加押留의 차이점 — 국세징수법은 납세자에게 이미 채납처분을 받은 사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①당해 관서 ②당해 공공단체 ③당해 집행법원 ④당해집행공무원 ⑤강제관리인 ⑥파산관리인 ⑦청산인 등 해당기관에게 세금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징법 56 참조). 여기에 새로운 압류를 하지 못한다는 표현은 없지만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함은 곧 압류를 금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해석한다. 이것을 이론상 ‘重複押留禁止의 原則’ 또는 ‘二重押留禁止의 原則’이라 한다. 이처럼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는 사유로는 ①국세의 채납처분을 받았을 것 ②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채납처분을 받았을 것 ③강제집행을 받았을 것 ④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것 ⑤경매가 개시되었을 것 ⑥법인이 해산하였을 것 등 여섯 가지이다(징법 56,14①(1)~(6) 참조). 이들 사유는 선택적이므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같은 법 제57조는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기압류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갈음한다고 함은 대신한다는 의미이므로, 징수권자가 임의로 교부청구 대신으로 참가압류를 선택할 수 있음을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양자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먼저 양자의 개념정의를 보면, 교부청구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어떤 종류의 先行節次(압류 또는 압류 아닌 다른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조세징수권자가 조세수납을 위한 交付(내어 줌)를 당해 선행절차기관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참가압류라 함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교부청구의 대안으로 조세징수권자가 조세수납을 위하여 그 선행의 압류절차에 가담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양자의 차이를 보면, 첫째 교부청구는 압류 및 압류와는 다른 去來停止・賣却・解散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관계기관을 상대로 하는 절차임에 비하여 참가압류는 압류절차를 진행하는 既押留機關만을 상대로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去來停止・賣却・解散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참가압류가 불가능하다. 둘째 교부청구는 단순히 세금의 교부만을 요구함에 지나지 않으므로 既存節次가 해제(소멸)되면 교부청구마저도 덩달아 살아지는 성질(이를 「교부청구의 附從性」이라 부를 수 있다)이 있음에 대하여 참가압류는 기압류에 가담하고 있는 중이

므로 그 기압류가 해제(소멸)되더라도 살아 남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특히 교부청구가 들어올 경우에 압류를 추진한 민사채권자와 납세자가 서로 담합하여 교부청구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그 대비책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그러기 때문에 참가압류에 관하여는 기압류가 해제되더라도 참가압류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소급하여 당해 참가압류의 효력이 살아있다는 이른바 遡及效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징법 58 참조).

조세징수권자가 교부청구방법을 택하건 혹은 참가압류방법을 택하건 간에 어느 경우이건 당해 조세채권의 優先徵收權(조세징수의 우선권)이 발동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착안점이다.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의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우선징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전술 참조) 교부청구서라는 한 건의 서류 송달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통지서라는 역시 한 건의 서류 송달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참가압류는 그러한 우선징수권의 발동을 위한 단초가 되는 것이다.

※ **참고설명** : 민사채권 및 공과금채권 끼리의 우열관계 —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민사채권자가 여럿이 있는 경우에 한 채권자가 압류를 단행한 다음 다른 채권자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국세징수법과는 달리 강제집행을 위한 참가압류라는 절차를 허

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빠짐없이 압류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나중에 압류하는 채권자는 남이 수고하여 모은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절차의 진행면에서 상당한 이득을 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참가압류통지서의 송부가 아닌 정식의 압류절차의 진행(예 압류등기)을 거쳐야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압류에 가담한 모든 채권자 중에서는 누가 우선권을 갖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민사소송법은 압류에 먼저 들어간 채권자가 배분을 받고 나면 다음 순위의 압류채권자가 남은 돈으로 배분을 받는 식의 ‘優先配當主義’(이것은 독일식의 배당원칙이다)를 인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모든 압류채권자가 함께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平等配當主義’(이것은 프랑스식의 배당원칙이다)를 채택한다. 요컨대 민사채권자 사이에는 우선권을 갖는 채권자가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압류에 가담하지 않는 채권자는 배분받을 자격이 아예 없다.

공과금채권은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그 징수권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중의 어느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무방하다. 그만큼 강제징수절차는 간단히 진행될 수 있다. 그렇지만 공과금채권에 관하여는 우선징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과금징수권자가 교부청구 등으로 민사채권자와 경합하는 경우에 위 ‘평등배당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안분배당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만약 공과금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조세채권의



강제징수기관에 교부청구를 하거나 참가압류통지서를 보내어 참가압류를 단행하더라도 조세징수의 우선권 때문에 조세채권의 징수를 거친 다음의 남은 재산에서 배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공과금채권끼리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평등배당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안분배당을 받을 수 밖에 없다.

3. 공과금채권에 대한 조세채권의 우선징수권 발동방법

조세채권이 그 강제징수과정에서 공과금채권과 경합을 이루는 경우는 민사채권과 경합을 이루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조세채권쪽에서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를 단행한 다음에 공과금채권쪽에서 경합하여 오는 경우이고, 그 다른 하나는 공과금채권쪽에서 강제집행을 위한 압류를 단행한 다음에 조세채권쪽에서 경합하는 경우이다. 이들 각 경우의 경합방법은 별로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공과금채권에 관하여 비강제적인 평화로운 방법을 통한 징수(收納)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경우와 비슷하게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강제징수의 절차를 밟기 때문이다.

먼저 조세채권쪽에서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를 단행한 다음에 공과금채권쪽에서 경합하여 오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므로 交付請求(징법 56) 혹은 參加押留(징법 57) 중의 어느 하나의 절차를 선택한다. 이 경우에 당해 조세징수권자가 위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징수권자의 판단에 달린 일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조세채권의 우선징수권이 존재함은 물론이므로, 당해 조세의 징수권자는 원래의 계획대로 매각절차와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그 다음으로 조세채권에 충당하고 남은 재산(예 매각대금)에 관하여 교부청구 혹은 참가압류를 하여 온 공과금채권의 징수권자에게 배분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공과금채권쪽에서 강제집행을 위한 압류를 단행한 다음에 조세채권쪽에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채권의 징수권자는 交付請求(징법 56)나 參加押留(징법 57) 중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위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징수권자의 판단에 달린 일임은 물론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의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조세채권의 우선징수권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공과금채권자쪽에서 공과금의 강제징수를 위한 매각절차를 밟고 나서 그 매각대금 등에서 우선적으로 교부청구 등을 하여 온 조세채권자에게 당해 조세채권에 관한 교부를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남은 재산으로 자기의 공과금채권에 배분을 한다.

다음호(2001년 7월말 발간예정)에는

「

IV. 租稅債權의 優先徵收權의 내용

1. 조세채권 우선징수의 내용

2. 조세채권 우선징수의 예외

우의 조정

V. 租稅債權間 競合關係의 調整 問題

2. 국세채권과 지방세채권 사이에 경합이 있는 경우의 조정」 등에 대 한 세무강좌가 계속됩니다. 🍵

1. 국세채권 사이에 경합이 있는 경

지방세 관련용어 해설

◆二重課稅(이중과세)

租稅主體 및 客體에 대하여 二重으로 과세되는 것인데 그 성질에 따라 분류하면 人的二重課稅와 物的二重課稅, 同一課稅額에 의한 二重課稅와 課稅權의 競合에 의한 二重課稅, 政策的二重課稅와 非政策的 二重課稅로 구분되는데 人的二重課稅는 동일한 경제주체에 대하여 동일한 稅源이나 租稅客體에 대해서 二重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정부의 계획적인 경우 즉 綜合稅와 分類稅를 併課하는 등의 경우와, 課稅權의 競合에 의해서 과세되는 경우 즉, 지방과 지방 또는 國際間에 서로 同一人에 대해서 같은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物的二重課稅는 동일한 稅源이나 객체에 대해서 1인 이상의 租稅主體에 과세하는 것이며 법인에 法人稅를 부과하고 다시 株主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등이다. 同一課稅權에 의한 이중과세는 동일한 국가 및 지방단체내에서 前述한 人的物的 二重課稅를 하는 것이며 課稅權의 경합에 의한 이중과세는 國際間 또는 지방과 지방사이에 財源地에서 과세하고 다시 주소지에서 과세하는 경우와 本稅이외에 附加稅와 附加될 경우 등이다. 정책적 이중과세는 조세 정책상 동일한 과세권이 동일한 租稅主體와 동일한 稅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조세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며 소위 同一課稅權에 의한 人的 이중과세는 여기에 속한다. 非政策的 이중과세는 실질적 이중과세라고도 하며 과세권이 경합될 때의 인적 이중과세와 물적 이중과세가 여기에 해당되며 租稅法의 不備와 국제간에 원만한 租稅協定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일어난다.

계약의 해제와 조세(취득세) 채권과의 관계

김 한 기

행정자치부 세제과 행정사무관

I. 序 文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거래를 위한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의 이행완료전 또는 이행완료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와 납세의무자간에 다툼이 많으므로 이에 관한 판례의 태도, 지방세 행정심의 결정례, 해제의 유형별 취득세 납세의무성립과의 관계 및 이를 해소코자 2000.12.29. 개정되어 2001.1.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상 해제관련 규정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누12750 판결, 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 7970 판결,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누 377판결)고 판시하여 취득세에 있어서 합의해제는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II. 判例의 態度

1.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수인의 취득에 대한 판례

2.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소유권 회복에 대한 판례

양도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

전등기의 말소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 11319판결)라고 판시하고,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친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목적으로 한 이상 위 합의해제로 인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3.25. 선고 85누 1008 판결)라고 판시하여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의 회복은 회복의 형식이 어떤 것이든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Ⅲ. 行政審 決定例

1.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수인의 취득에 대한 결정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에서는 부동산등에 대한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제가 되었다면 취득일(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2001.2.27. 행자심 2001-65호), 취득일(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신고납부기간)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2001.3.27. 행자심 2001-120호)¹⁾.

2.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소유권 회복에 대한 결정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1993.9.14. 선고 93누 11319판결)와 동일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2001.3. 27. 행자심 2001-121호).

Ⅳ. 解除와 取得稅 納稅義務 成立과의 關係

1. 취득세의 법적 성질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 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대

1) 심사결정례의 전문내용은 별첨 참조

법원 1988.10.11. 선고 87누 377 판결),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양자는 납세의무 성립시기도 달리한다.

2.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및 취득의 시기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하는데 이 취득하는 때(취득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과 무상승계취득으로 대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하는 때(취득시기)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국가·지방자치단체로 부터의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원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되며,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 부터 30일 경과되는 날)이다.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

다(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나.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하는 때(취득시기)라 함은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을 취득일로 본 것은 증여계약 등으로 인한 무상취득의 경우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 수증자는 별도의 대금지급 등 이행할 채무가 없고 계약체결이 종료됨과 동시에 수증자는 약속한 재산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리고 유상승계취득이든 무상승계취득이든 간에 취득일 전에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어 이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된다(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3항)

3. 해제의 유형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확정과의 관계

가. 해제의 의의 및 종류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효력을 당사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 가게된다.²⁾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단독행위인데 이에는 약정해제와 법정해제가 있다. 즉 해제는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계약 당사자가 전에 맺었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해제(해제계약)과는 구별된다.

① 약정해제

납세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장차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약정하고, 나중에 그 계약을 약정에 따라 해제하는 것을 약정해제라고 한다.³⁾(민법 제543조)

② 법정해제

계약일반에 대하여 인정되는 법정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다.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세가지가 있는데, 민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채무자에게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민법 제544조, 제545조)와 이행불능이 생긴 경우(민법 제546조)이다.⁴⁾

③ 합의해제(해제계약)

계약 당사자가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합의해제라고 하는데,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든가, 이행하는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보통있게 된다. 합의해제는 일중

의 계약이므로 민법 제543조 이하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그 효과에 있어서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대판 1980.5.13. 선고 79다 932판결).

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과의 관계

① 약정해제와 취득세 납세의무성립과의 관계

약정해제는 당사자가 미리 계약으로서 해제를 보류하였다가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민법 제543조) 계약의 이행이 완료(잔금지급 등)되기 전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약정해제가 취득세 납세의무성립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② 법정해제와 취득세 납세의무성립과의 관계

취득세 납세의무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잔금지급 등)되어야 성립하는데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 즉 계약의 불이행(잔금지급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서 법정해제권(민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에 기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정해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성립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발생할 소지는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③ 합의해제와 취득세 납세의무성립과의 관계

2) 박윤직, 채권각론, 96쪽

3) 김주수, 채권각론, 144쪽

4) 김주수, 채권각론, 113쪽

계약의 이행이 완료(잔금지급 등)되기 전에 합의해제하는 경우는 대부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이어서 취득세 과세처분이 될 소지가 없으므로 별 문제가 없으나 계약의 이행완료(잔금지급 등)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합의해제된 경우 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V. 2000.12.29. 改正된 地方稅 法상 解除關聯 規定 內容

1.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2000.12.29.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제2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은 첫째, 계약해제가 취득(잔금지급일)후 30일 이내이어야 하고 둘째,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되어야 하는데 위 해제의 유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법 제543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하는 해제는 약정해제이고, 동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하는 해제는 법정해제이므로 여기서는 약정해제와

법정해제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합의해제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정함을 알 수 있다. 즉 위 단서의 규정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잔금지급일)후 30일 이내에 약정해제나 법정해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해제됨을 명백히 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여진다.

2.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2000.12.29. 동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은 첫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이어야 하고, 둘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계약의 유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정해제, 약정해제, 합의해제가 다 포함된다 하겠으나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대금지급이 필요치 아니하므로 법정해제권 및 약정해제권

에 기한 해제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대부분 합의해제일 것이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30일(신고납부기간) 이내로 한정된 것은 과세권자의 부과처분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함에 있다고 보여진다.

VI. 結 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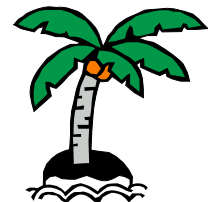
그간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간에 다툼이 많던 계약해제시 취득세 납세의무여부를 지방세법령에 규정함으로써 다툼의 소지가 어느정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유상승계취득에 있어서 합의해제된 경우 납세의무여부에 관하여는 규정하지를 아니하였는데 이는 취득세가 취득행위를 과세 객체로 하는 행위세인 점과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과세권자)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계약효력의 일반원칙 및 판례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법에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지방세정운영에서 유상승계 취득관련 합의해제는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에 따라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합의해제가 되었다면 취득일(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신고한 경우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사실이 확인된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매매계약이 이행되고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대부분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합의해제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槲潤直, 「債權各論」, 博英社, 2000
- 權康雄, 逐條 「地方稅法解說」, (주)조세통람사, 2001
- 金建鎰, 「契約의 解除가 租稅債權에 미치는 影響」, 人權과 正義, 1995.10.月號 (通卷 第230號)
- 金疇洙, 「債權各論」, 三英社, 1992
- 金漢起, 「地方稅判例·審査取消事例總覽」, 稅經社, 2000
- 行政自治部, 「地方稅審査決定書」 2001. 2~3



<별 첨>

계약의 해제와 납세의무성립과의 관계에 관한 심사결정례

[1]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2001.2.27. 행자심 제2001-65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신고를 하였으나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취득신고조차 하지 아니하였다면 취득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취소)

【處分要旨】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2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9.4.3. 잔금을 지급하고 1999.4.6. 검인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11.16. 취득세를 부과지하였다.

【請求趣旨】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무사에 의뢰하여 1999.2. 2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4.6. 검인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사정이 어려워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합의하에 계약해제를 한 후 검인신고후 30일 이내인 1999.4.12. 처분청에 취하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決定要旨】 청구인이 1999.2.21.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999.4.3.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1999.4.6. 검인신고를 하였으나, 6일만인 1999.4.12.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취득신고조차 하지 않은점,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없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어 취소로 결정한다.

[2]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2001.3.27. 행자심 제2001-120호)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제가 되었다면 취득일로부터 30일내에 처분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청구인은 취득일로부터 30일내에 합의해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해약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출치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기각)

【處分要旨】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0.11.13. 취득세를 부과지하였다.

【請求趣旨】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잔금지급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하여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 매매계약을 해지(해제를 오기한 것으로 보여 짐)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취득세를 부과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決定要旨】 청구인이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분청에 검인을 받아 취득 신고까지 마쳤던 점으로 보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하겠으며 만약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제가 되었다면 취득일로부터 30일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해제사실을 인정하고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지방세정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취득일로부터 30일내에 합의해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해약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출치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으로 결정한다.

[3]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2001.3.27. 행자심 제2001-121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매매 계약의 합의해제로 이를 말소하여 원래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그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취소)

【處分要旨】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의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후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청구인이 소유권을 환원받았으므로 이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0.6.15. 취득세를 부과지하였다.

【請求趣旨】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 매도를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해제를 오기한 것을 보여짐)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로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데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決定要旨】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해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86.3.25. 선고 85누 1008판결, 1993.9.14. 선고 93누 11319 판결)고 한 판결의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해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말소하여 원래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그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로 결정한다.

2001 綜合土地稅 課稅標準額 適用比率 決定指針 解説

안 병 운

행정자치부 세정과 행정사무관

종합 토지세는 1,400만 국민에게 부과되는 대중세 보유과세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억제를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전국 합산과정을 거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정책과세이다.

종합토지세의 이러한 특징은 종합토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공시지가의 적용율을 결정함에 있어 경제여건 등 과세현실과 과표현실화 등 정책목표를 보다 신중하게 분석하여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도출하여야만 정책수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달성할 수 있고 세정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산정을 위한 적용비율 결정지침은 이러한 측면에서 전년도에 도입한 표준편차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경제여건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담세력 수준에서 세액이 결정되도록 고려하였다.

I. 序 言

과세표준이란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기준치를 수량화한 것으로 종합토지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자치단체장이 결정고지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적용비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국민이 부담해야할 세액은 큰 변화가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효과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과표를 행정세율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종합토지세는 그 도입의 취지가 정책과세로서 토지에 대한 투기억제를 통한 국토의 효

<표 1> 과표관련 제도

<과표관련 제도>

[指針示達] - 행정자치부장관

-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에 일정비율(적용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법 제234조의15)

※ 종합토지세액= 과세표준×세율

=[㎡당 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면적]×세율

- 적용비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適用比率 決定告示]-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기준일(6. 1)전까지 적용비율을 결정고시 (시행령 제194조의16)

울적 이용을 위하여 전국 합산과정을 거쳐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방세 목보다 과세의 공정성과 납세자간의 형평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과세표준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민 1,400여만명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대중세인 점에서 보유과세의 현실화라는 정책적 명제 아래에서도 경제동향 등 현실여건을 분석하여 국민의 적절한 담세력을 평가한 후에 적절한 부과수준을 고려하여야 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만 한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은『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와 거래과세 완화추진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간 필지간 종토세 과세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도입한 통계학적 개념인 표준편차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여 과표결정 작업에 보다 용이하게 적용하고자 하였다

본문에서는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추진현황 및 평가』, 『과표 적용율의 결정근거 및 내용』, 『적용율 결정의 구체적 방법』, 『결정사례 분석·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Ⅱ. 土地課標 現實化 推進現況 및 評價

1. 課標現實化 推進現況

2000년도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평균으로 볼 때 개별공시지가의 32.2%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

종합토지세 도입시기인 90년대초 15%정도의 아주 낮은 현실화율을 신경제 5개년 계획

에 입각하여 보유과세 강화를 추진하여 현실화율을 95년까지 31.5%로 인상시켰으나, '96년도는 토지등급제에서 공시지가체제로 제도변경함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실화율 인상을 억제하였으며 '97년 이후에는 IMF관리체제의 영향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경제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현실화율을 하향 결정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2> 연도별 과표현실화 추세

년도별	'90	'95	'96	'97	'98	'99	2000
현실화율(%)	15.0	31.5	31.1	30.5	29.2	29.3	32.2
증감율(%P)	-	4.6	△0.4	△0.6	△1.3	0.1	2.9
세 수(억원)	4,155	13,446	13,007	13,283	12,924	13,303	13,639

— <용어해설> —

○ 적용비율과 현실화율

- 적용비율은 과세기준일 시점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적용비율)을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의 개념으로서 종합토지세액의 결정에 있어 사전적 개념이며,
- 현실화율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 세액을 부과한 시점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과세표준액으로 전환된 비율을 의미하며, 개별공시지가 전액이 과세표준액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개념 전제에서 사용된다.
- 따라서 양자는 실제 동일한 개념이며, 과세기준일과 부과일 사이의 과세대상 변동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그 값은 동일하다.

2. 課稅 衡平性 評價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현실화율은 232개 기초자치단체중 현실화율 28~35%가 186개단체, 28%미만 단체가 5개, 35% 이상인 단체가 41개단체로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28%에서 35%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어 평준화 측면에서 1998년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양 비교연도의 표준편차가 1998년도 3.04에서 2000년도 2.75로 축소된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00년도에 있어서도 표준편차 상하한선인 29.5%와 34.9% 범위밖의 현실화율을 보이는 지방자치단체도 86개나 되어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필지간의 현실화율은 1996년도 토지등급제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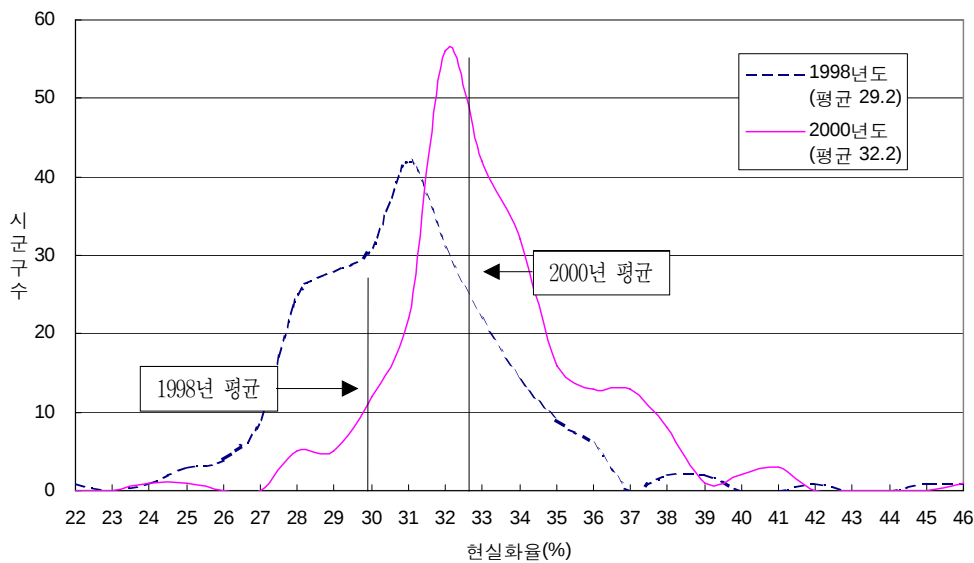
용하면서 전년도와 필지별 세액의 균등성을 확보하기위해 평균 단계 6.4개와 평균 적용율 상하격차 32.1%P를 보여 필지간에 서로 상이한 적용율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 기준 형평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과세형평성을 위하여 적용단계의 축소 및 표준편차의 도입 등 꾸준한 노력과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 결과 2000년도에는 평균 단계 3.3개와 평균 적용율 상하격차 11.2%P로 개선되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 단일 적용율을 적용한 지방자치단체도 24개나 되었으며 상하격차가 10%P미만인 자치단체가 82%나 되어 단일적용율 적용의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평가된다.

<표 3> 기초자치단체별 평균 현실화율 분포 - 2000년도 적용비율 기준

(단위 : 개, %)

연도별	25%미만	25~28%	28~30%	30~35%	35~40%	40%이상	표준 편차
2000	2	3	14	172	37	4	2.75
1998	6	34	65	119	6	2	3.04



<표 4> 연도별 적용률 단계 추이

구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구간수(개)	6.44	6.07	5.22	4.46	3.30
적용률 격차(%P)	32.1	28.5	23.3	15.6	11.2

※ 단일적용율을 적용한 지방자치단체도 '99년도 1개구(대구 달서)에서 2000년도 24개시군구로 증가함

Ⅲ. 課稅標準 適用比率 決定을 爲한 現實與件 分析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자가 1,400여만명인 대중세로서 부동산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현실화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이점에서 종합토지세의 세제적 특징(대중세·보유과세), 부동산 과세 정책 방향, 경제여건에 따른 국민의 담세력 정도, 과세물건인 토지의 현실가격의 동향 등을 정확히 분석·평가하여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 2001 經濟展望

'99년 이후 2년간 성장세가 지속되었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국 경제의 퇴조 반도체 등 정보산업 경기의 후퇴 등 대내외 여건의 악화로 경제의 성장탄력이 둔화되어 금년도 경제전망은 낙관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경제연구소는 4%중반대의 경제성장률 및 3% 중반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 실질 경제성장률을 아주 낮게 예상하여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업률 역시 경제성장률의 둔화 및 구조조정의 여파로 전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연구기관 : 4%정도)

<표 5> 2001 경제전망

항 목	산업연구원(KIET) (2001.4.13)	현대경제연구소 (2001.2.26)	LG경제 연구소 (2001.3.31)	K D I (2001.4.20)	삼성경제연구소 (2001.4)
경제성장률(%)	4.3	4.8	4.8	4.3	5.7
실 업 률(%)		4.4	4.5	4.0	4.3
소비자물가 상승률 (%)	4.2	3.5	3.6	4.2	3.4

※ 2001.4.14 재정경제부 제공, ()은 전망시기

따라서, 경제성장률 분석을 통한 담세력을 평가하여 보면 국민의 실질 담세력은 실질 경제성장률만큼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반적으로 경기후퇴의 체감지수가 일반적으로 공식 지표지수보다 높음을 감안하면 경기후퇴, 소비자 물가의 상승 등으로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 담세력은 오히려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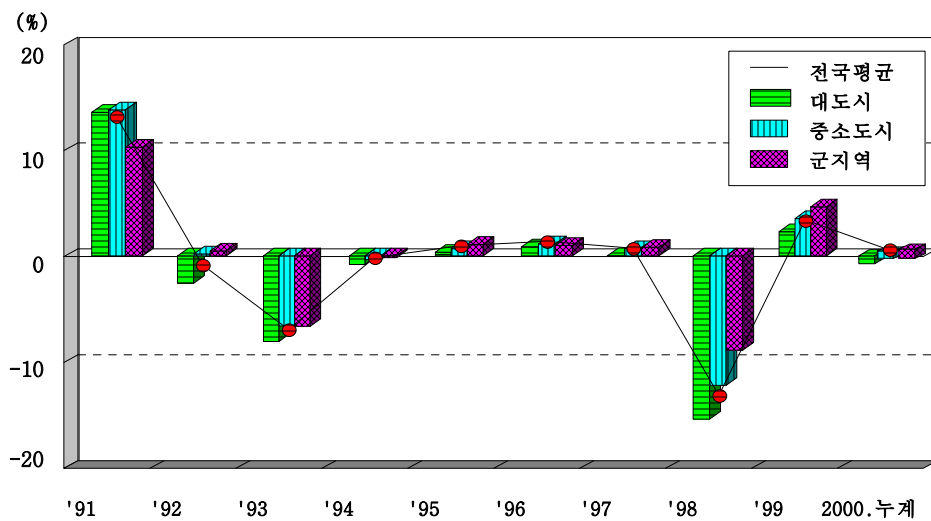
2. 2000年度 및 2001年度 地價動向

2000 전국 평균지가 변동률은 하반기 실물경기의 둔화 및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전년 대비 0.67% 상승('99년도는 2.94% 상승)에 그쳤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지역은 0.09% 하락하였고 중소도시지역은 1.49%, 군지역은 1.73% 상승하였다.('99년도 : 대도시 2.26%↑, 시지역 3.50%↑, 군지역 4.59%↑) (출처:건교부 지가제도와 발표자료)

2001년도 지가변동 전망은 실업률 증가 및 경기불안에 따른 소비둔화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식시장의 침체, 예금이자율의 하락 등으로 시중 유동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예상할 수 있어 전반적인 하락·보합세의 유지속에 일부 지역의 상승 등 지역별 지가변동이 복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연구원은 VAR예측모형에 의하여 1.3% 상승할 것으로 예상

<그림 1> 연도별, 지역별 지가변동 추이



3. 공시지가 분석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결정시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인 2000년도 공시지가는 회복 추세에 있던 '99년도의 현실지가 동향을 반영한 것으로서 '99년도의 현실지가가 2.94% 상승함에 따라 '99년도 공시지가에 비하여 과세대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총액을 비교한 결과 1.8%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0년도 현실지

가 상승률 0.68% 반영하여 상승 42%, 동일 44%, 하락 14%로 전년대비 0.6%정도 소폭 상승하였다.(출처: 건교부 지가제도와 발표자료)

<표 6> '99~2000 공시지가 대비

구 분	면 적	필지수	공시지가	전년대비 증감	과세표준액	비 고
'99	65,019백만㎡	3,085만건	987조원	△6.1%	300조원	'98년도 현실 지가 반영
2000	64,133백만㎡	3,129만건	1,005조원	1.8%	315조원	'99년도 현실 지가 반영

※ 면적 및 필지수 변동사유: 공공사업시행 등으로 비과세 토지 증가와 필지분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결정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보유과세의 특성상 현실상의 거래시가는 고려요소도 아니며 보유함에 따르는 가치를 거래상의 현실지가로 환산할 수 도 없는 것이나 유사한 토지이용 특성을 갖는 토지의 거래시가와 비교하여 평가한 결과 개별공시지가의 현실 거래시가 반영율은 대도시 58.5%, 중소도시 68.4%, 군지역 42.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공개발지구의 보상가와 비교하여 본 결과 보상가격의 50% 정도로 분석되었다.

<표 7> 공시지가의 시가반영율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평균	보상지역
주거지역	58.9	65.2	71.9	61.0	41.5
상업지역	60.4	61.3		60.5	62.1
녹지지역	30.2	89.0	35.0	71.4	65.5
농림지역		57.9	53.8	54.2	43.9
평 균	58.5	68.4	42.2	47.9	49.6

출처: 공시지가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p56-64, 국토연구원, 2000. 9)

※ 건설교통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님에 유의

이러한 결과는 단순논리로서 개별공시지가가 현실지가의 60%미만이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30%정도에 불과하여 조세부담율이 낮다는 논거로서 사용될 수 있으나 종합토지세가 보유과세로서 기본적으로 거래행위나 토지의 이용에 따른 수익의 결과물에 대한 과세가 아니므로 이러한 비교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分析 結果

그동안 보유과세인 종합토지세의 과세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적용비율의 점진적 인상을 정책의 우선 순위로 삼아왔으나 실상은 납세인구 1,400만명이 넘는 대중세임과 경제여건에 따른 담세력을 고려하여 조세저항 등 과세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금년의 경우도 장기 정책과제인 보유과세 현실화를 위하여 금년도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다소 인상하여야 하나 경제사정의 악화에 따른 체감 담세력의 감소와 과표결정 기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8% 상승하여 담세액이 자연증가하는 과세여건을 고려하면 인상의 가능성은 많지 않다.

특히, 경기후퇴에 따라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금년도의 경우 현실화의 강력 추진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및 필지간 과세형평성을 강화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적용비율을 결정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Ⅳ. 2000年度 課稅標準額 決定基準

1. 基本方向

가. 漸進的 土地課稅 現實化 推進 : 基準適用率 32.2%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일책인 부동산보유세 강화 과표현실화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1,400만명이 넘는 대중세임과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고 경제여건에 따른 담세력 및 현실지가와 공시지가의 추이를 반영하여 적용비율 결정기준을 32.2%로 결정하였다.

이는 전년도 과세표준액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적용비율이 32.2%임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는 국민담세액의 인위적인 담세액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용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점으로 삼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비율을 정하라는 의미이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결과를 종합한 결과가 32.2%로 된다는 의미는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나. 現實化率 平準化 推進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금년도의 과세표준액 결정에 있어 기본적인 방향은 과세 현실화보다 자치단체·필지간에 상존하고 있는 현실화율 격차를 해소 함으로써 전국적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결정기준 요약>—

1. 지방자치단체별 과세표준액 결정

- 전국 기준 적용율인 32.2%를 기준으로 지역경제여건, 지가변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결정하되, 전년도 과표총액대비 15% 인상 범위내에서 결정
- 표준편차를 고려한 적용율 상향 평준화 추진
 - 적용기준 : 표준편차 2.7, 하한적용율 : 29.5%,
 - 전년도 적용율이 전국 기준보다 낮은 자치단체는 전국 기준수준으로 인상
 - 전년도 적용율이 표준편차 하한적용율 29.5%이하인 00개 지방자치단체는 하한적용율 범위내로 인상 조정
 - 전년도 적용율이 표준편차 2단계 범위(26.8%이하)밖에 있는 00개 자치단체는 2단계 범위내로 조정
 - 전년도 적용율이 전국 기준보다 높은 자치단체는 억제하거나 동결

2. 지방자치단체의 필지별 적용비율 결정

- 표준편차를 고려한 적용비율의 상·하한선의 결정
 - 전년도 적용율의 상·하한선이 표준편차 1단계 범위밖인 경우 1단계 범위내에서 상·하한선 적용율
(예) 표준편차 상하한 값이 35.8%, 28.8%이고 전년도 상하한적용율이 37.9%, 26.9%인 경우 상한 적용율 35.8%이하, 하한적용율 28.8%이상으로 결정
 - 전년도 적용율의 상·하한선이 표준편차 2단계 범위밖인 경우 2단계 범위내에서 상·하한선 적용율 결정
- 전년도 상한 적용율과 하한적용율의 차이값이 10%미만인 자치단체는 단일 적용율로 결정도록 권장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도입한 표준편차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평균 현실화율(전년도 적용비율)이 전국평균(32.2%)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기준 적용율인 32.2%에 접근토록 인상 결정하고 전년도 적용율이 전국 기준 적용율 보다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동결 및 인상억제함으로서 전국 평균에 가깝도록 적용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정도는 교부세 산정기준에 포함되어 동종 자치단체보다 적용비율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 배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필지간 평준화를 위해 당해 자치단체의 현실화율을 기준으로 표준편차를 분석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최저·최고 적용비율을 표준편차 범위내로 조정하여 필지간 형평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2. 地方自治團體 平均 適用比率의 決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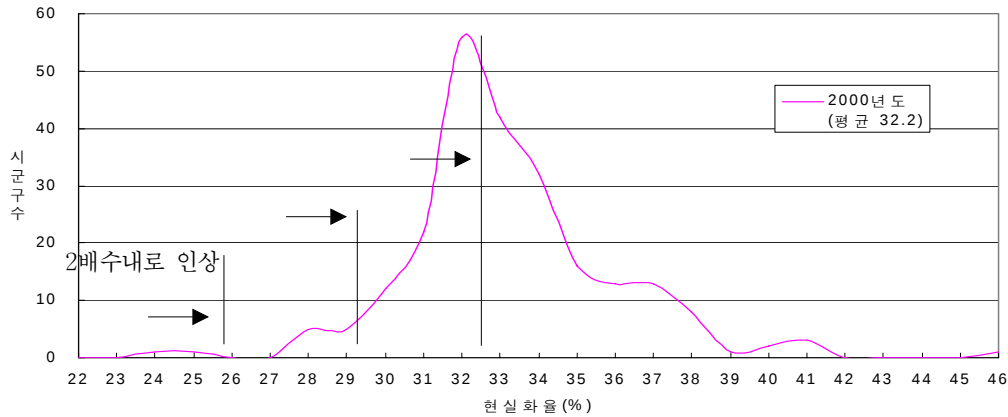
금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전년대비 과세표준액 총액기준 인상율 15%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과표결정의 자율성에 근거하여 과표의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적용율을 결정하되 전년도 평균 적용비율이 전국 평균 32.2%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평균에 근접하도록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전년도 적용비율의 전국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가 2.7임을 고려하여 전년도 적용율이 표준편차 하한적용율 29.5%이하인 지방자치단체는 29.5%이상인 되도록 결정하고, 전년도 적용율이 표준편차 2단계 범위(26.8%이하)밖에 있는 자치단체는 2단계 범위내로 인상조정하면 된다.

전년도 적용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지방자치의 논리에 따라 적용비율 인하의 과세자율권이 있는 것이지만 실제 인하하는 경우 재정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드는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어 과세표준액이 최소 동결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보유과세인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세표준 현실화가 중요한 정책목표임을 감안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용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과세표준액뿐만 아니라 적용비율 역시 전년대비 감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적용비율을 산출한다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 역시 변수로서 작용하므로 개별공시지가의 등락의 폭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액과 적용비율이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대폭 인상되는 경우 과세표준액을 전년대비 인상하더라도 적용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



가. 筆地間 適用比率의 決定

지방자치단체내에서 필지간의 적용비율의 형평성 보장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평균 적용비율의 형평성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적용비율의 차이는 과세권의 자율성으로 설명가능한 측면이 있는 것이지만 단일 과세권의 범위내에서 필지간 적용비율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과세자율권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납세부담의 불평등의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점에 있어 금년도 과세표준액 산정을 위한 적용비율 결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검토된 것은 바로 필지간의 형평성 달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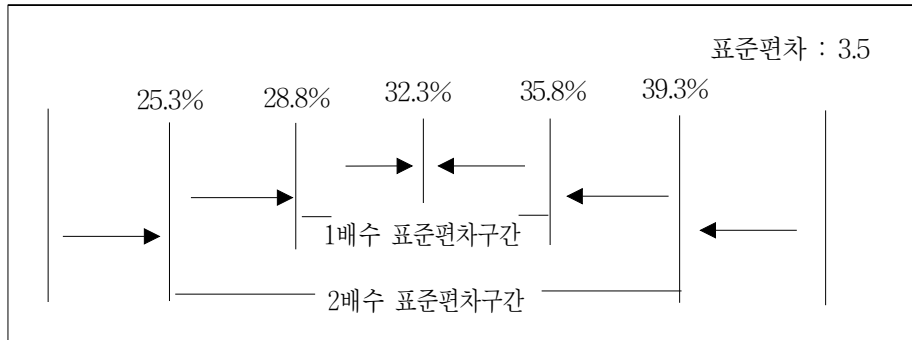
각 지방자치단체는 금년도 필지의 단계별 적용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전년도 단계별 적용비율과 비교하여 전년도 최저 적용비율보다는 높은 최저 적용비율을 결정하고, 전년도 최고 적용비율보다는 낮은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최고·최저 적용비율간의 간격이 작아지도록 해야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년도 적용율의 상·하한선이 표준편차 1단계 범위밖인 경우 1단계 범위내에서 상·하한 적용율을 결정하고 전년도 적용비율이 표준편차 범위내에 있는 경우 전년도 적용비율을 기준으로 상하 적용비율의 간격이 줄어 들도록 결정하고, 전년도 적용율의 상·하한선이 표준편차 2단계 범위밖인 경우 2단계 범위내에서 상·하한선 적용율을 결정하면 된다.

※ 표준편차는 각 필지에 금년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대입하여 구한 현실화율을 가지고 구한 평균 적용비율의 표준편차를 의미함(지방자치단체에서 통상 1~2월에 분석하여 보고하는 것)

그러나, 가장 간명한 방법은 상하의 폭이 전년도 보다 작아 지도록 평균 적용율을 중심으로 값을 정하며, 전년도 상한 적용율과 하한적용율의 차이값이 10%미만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적용비율을 단일 적용비율로 결정하면 된다.

이 방법은 논리적 근거는 표준편차를 이용하는 방법보다 희박하지만 동일한 결과를 간명한 방법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적용비율 결정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 유 형

지적법 제15조 내지 제21조에 규정된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합병, 지목변경된 토지 및 국공유지가 매각되어 비과세에서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토지

○ 직전년도 9. 1이후 과세기준일까지 상기 유형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 지가공시 및 토지등급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1.1 ~ 8.31사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됨

- 1.1 이후 형질변경 등의 사유가 없는 토지: 6.30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 1.1 이후 4.30까지 형질변경 등 사유발생 토지: 8.31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 5.1 이후 8.31까지 형질변경 등 사유발생 토지: 12.31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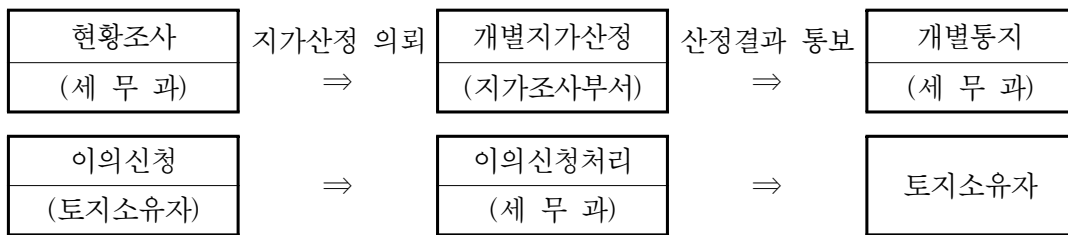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및 개별공시지가가 위산·오기로 인하여 인근토지와 현저히 균형을 상실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2000년도 표준지(표준지가 없을 경우 인근 유사지를 표준지로 함)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개별지가를 산정하고, 산정된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적용율을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지적법 제15조, 18조, 20조, 21조에 정한 신규등록지 및 이동지(등록전환, 분할, 합병)와 지목변경된 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의 과세지 과세지 전환토지, 기타 사유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누락된 토지를 말한다.

상기의 개별공시지가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을 검토하여 보면 종래에는 매년 1.1을 기준으로 6.30까지 연 1회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여 전년도 1.1이후 상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되었으나 8.31이전까지 상기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12.31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9.1이후 형질변경 등이 일어난 토지만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전년도 과세표준과 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민원발생소지가 많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인근토지와 불균형일 경우 경정결정 등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림 2> 지가산정 및 처리절차



<처리방법>

- 과세기준일(6. 1)이전 과세대장정리 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22 각항의 절차에 의해 처리
- 과세기준일(6. 1) 경과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개별통지하고,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

개별지가 산정후 적용비율의 결정은 2000 과세표준액이 있는 때에는 상기 요령에 의해 산정한 개별지가에 대한 현실화율을 산출, 그 산출된 현실화율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비율 결정기준」에 따라 당해 필지의 적용비율을 결정하고, 2000 과세표준액이 없어 현실화율의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비과세지 → 과세지, 공유수면 매립 등)에는 인근 유사지 2000 과세표준액을 적용 2000년도말 현실화율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하여 「적용비율 결정기준」에 따라 당해 필지의 적용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3. 適用比率의 告示 및 課稅臺帳 登載

결정된 적용비율은 시·군·구보에 게재하고, 게시판에 공고하고, 개별공시지가와 함께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과세자료 전산화일에는 자동계산 처리프로그램 활용 입력)

V. 土地課標 適用比率 決定作業 處理要領

1. 土地課標 適用比率 作業例示

<적용비율 결정절차>

가. 제1단계 : 기초자료 분석

- 당해 자치단체내의 모든 토지중 비과세지(국가등, 용도구분, 과세경감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한 2000공시지가 대비 2000과세표준액인 현실화율의 표준편차 산출과 표준편차내의 개별공시지가 대비 과세표준액의 현실화율 분포도를 작성하여 분포현황 분석
- 표준편차 범위내에서 적용비율과 차등적용비율 결정구간별로 개별공시지가 합계액 산출 및 분석

나. 제2단계 : 잠정 적용비율 설정

- 평균 적용비율은 전년도 평균현실화율을 감안하여 결정적용
- 필지별 적용비율은 전년도 적용비율, 표준편차 상·하한선, 조세 마찰요인, 연차별 평준화계획 등 감안하여 필지별 적용비율 결정방법에 의하여 설정

다. 제3단계 : 총과표 산출 및 검증

- 과세대상 필지의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잠정 적용비율을 곱하여 2001 과표총액을 산출 ⇒ 산출된 과표가 전년도 수준 또는 그 이하인지를 확인
- 주요 토지의 과표증감율을 분석하여 조세마찰 여부를 판단

라. 제4단계 : 결정 또는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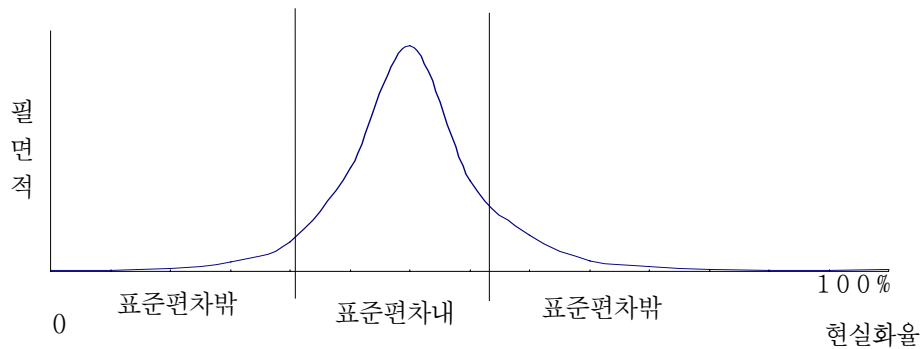
- 잠정적으로 결정한 적용비율의 적용시 문제가 없을 경우 적용율을 확정
- 잠정적으로 결정한 적용비율 적용시 과표의 급격한 증감발생 또는 조세마찰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적용비율을 다시 설정 『가-다』의 절차에 의해 검증한 후 결정

가. 제1단계 : 기초자료 분석

○ 당해 자치단체내의 모든 토지중 비과세지(국가 등, 용도구분)전부 및 과세경감대상 토지의 경우 경감비율 만큼의 면적을 제외한 토지에 대한 ①개별공시지가총액 ②과세 표준액 총액을 산출하여 ③시·군·구 평균 현실화율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④표준편차내 차내 개별 토지의 현실화율 1%단위별 분포현황분석 및 분포도 작성

<작업 예시 1>

- ① 2000 개별공시지가 총액 : 20,869억원
- ② 2000년말 현재 과표총액 : 6,814억원
- ③ 평균현실화율 : 32.6%(6,814억원/20,869억원*100)
- ④ 1% 단위별 분포현황분석 및 분포도 작성



- 시·군·구별 2001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목표 설정
 - 당해 시·군·구의 종합토지세 예산액 및 지역경제여건 조세마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표준액 총액을 결정
- 표준편차내 필지별 현실화율 분포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상 및 인하할 적정구간을 설정하고, 현실화율 단계별 개별공시지가 총액 산출

<작업예시 2> - 현실화율 단계별 공시지가 총액산출

(단위 : 필지, 억원)

현실화율	계	표준편차 밖	표준편차 내		표준편차 밖
		27.4% 미만	27.4~32.6%	32.6~37.8%	37.8% 초과
필 지 수	228,248	23,666	92,104	92,400	20,078
개별공시지가 총액	20,869	2,897	7,351	7,326	3,294

<작업예시 3> - 평균현실화율 및 표준편차 구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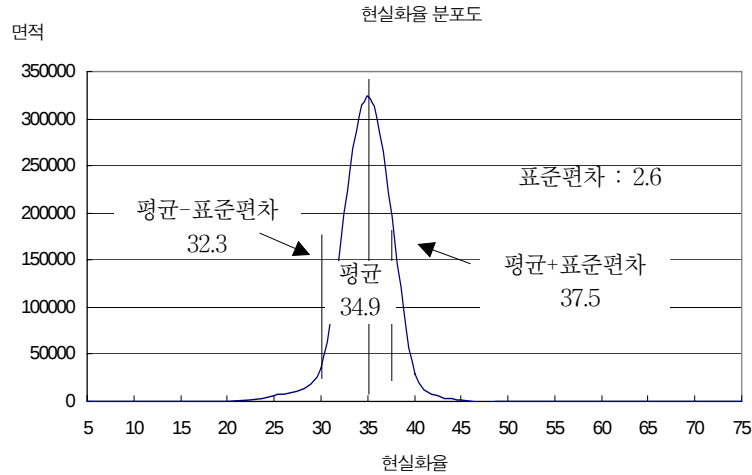
현실화율 (A)	면적 (B)	현실화율*면적 (A*B)	평균 (M)	편차의제곱 (M-A) ²	편차제곱*면적 (M-A) ² *B	표준 편차
합계	396,115	13,805,965	34.9	7,397.3	2,755,989.9	2.6
5	17	85		891.2	15,150.9	
10	36	360		617.7	22,236.9	
15	79	1,185		394.2	31,138.5	
20	221	4,420		220.6	48,758.0	
25	5,409	135,225		97.1	525,159.9	
30	35,077	1,052,310		23.6	826,265.0	
35	323,266	11,314,310		0.1	6,945.0	
40	29,871	1,194,840		26.5	791,199.7	
45	1,605	72,225		103.0	165,239.5	
50	196	9,800		229.4	44,966.1	
55	80	4,400		405.9	32,470.8	
60	140	8,400		632.4	88,529.0	
65	25	1,625		908.8	22,720.4	
70	39	2,730		1,235.3	48,176.0	
75	54	4,050		1,611.7	87,034.4	

※ 시군구에서는 현실화율을 1%단위로 작업

- 종합토지세 프로그램에서 『지가조정 기초자료』를 출력하면 1%단위로 현실화율과 면적, 공시지가, 과표가 출력됨

□ 산정절차

- 2000 개별공시지가 대비 2000 과세표준액인 현실화율을 1%단위로 준비한다.(현실화율 1%당 해당면적도 준비한다)
- EXCEL(수치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현실화율과 면적을 입력한다.
- ‘예시’와 같이 현실화율과 면적을 입력후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 단계별 EXCEL 작업을 실시한다.
 - 현실화율(A)과 면적(B)을 곱하여 값을 구하고 곱한값의 합을 구한다.
 - 1평방미터당 평균(M) 현실화율을 구한다.
 - 편차(M-A)를 제곱한 값을 구하고 : $(M-A)^2$
 - 편차를 제곱한 값 $[(M-A)^2]$ 에 해당 면적(B)을 곱하여 값을 구하고 그 합을 구한다
 - 이제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 “라”에서 구한 합을 면적(B)의 합으로 나누고 그 제곱근(SQRT)을 구한다.



□ 현실화율 분포도

[용어해설]

- 표준편차 : 데이터들이 평균값에서 벗어나 있는 정도를 나타냄

$$\text{표준편차} = \sqrt{\frac{\{(\text{편차})^2 \times (\text{면적})\} \text{의 총합}}{\text{면적의 합}}} = \sqrt{\frac{\sum [(M-A)^2 \times B]}{\sum B}}$$

- 현실화율(A) : '99 공시지가 대비 '99년 과표[A='99과표/'99공시지가]
- 면적(B) : 현실화율에 해당하는 면적
- 평균(M) : 1평방미터당 평균 현실화율[M=(A*B)/ΣB]
- 편차(M-A) : 평균현실화율과 개별현실화율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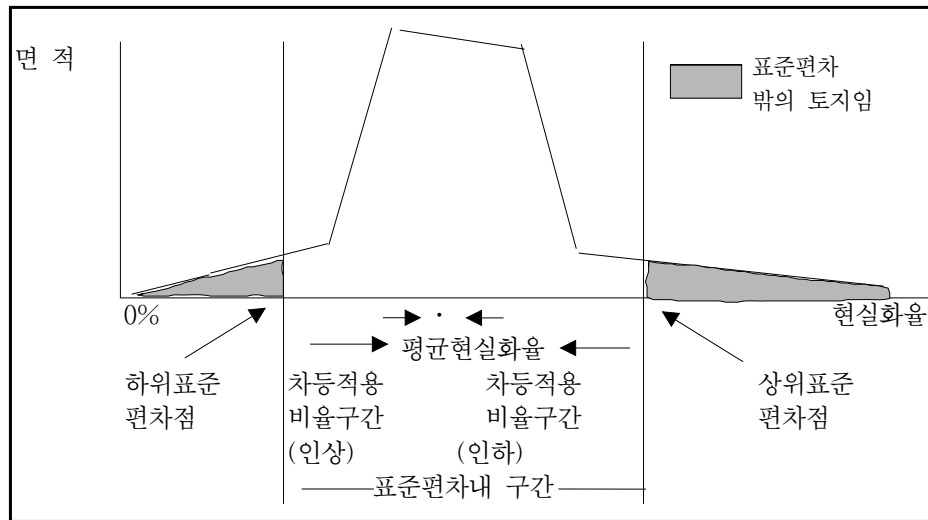
나. 제2단계 : 표준편차 내에서 잠정 적용비율 설정

- 당해 시·군·구의 표준편차 밖의 토지는 하위 표준편차점과 상위표준편차점을 적용비율로 하고 표준편차내의 토지는 평균현실화율을 감안하여 표준편차 범위내에서 적용비율 설정
- 평균현실화율과의 격차가 심한 토지에 대하여는 차등적용비율 설정
 - 차등적용비율은 분포도 및 공시지가 분포비율, 조세마찰요인, 연차별 평준화 계획 등을 감안 차등 적용비율을 설정(예시)
 - 구간 및 단계는 표준편차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구간 조정 가능
 - 표준편차가 하위 현실화율 20%, 상위 현실화율 40%인 경우

- 20%초과~30%이하 ⇒ 30%, 30%초과~40%미만 ⇒ 35%

※ 인상구간의 토지가 현재 과표보다 인하 되거나, 인하구간의 토지가 현재 과표보다 인상되어서는 아니됨

<도 해>



다. 제3단계 : 총과표 산출 및 검증

- 표준편차 밖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표준편차점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고 표준편차내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구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함

⇒ 표준편차내·외의 산출 과표 총액이 2000년도 목표수준인지를 확인('99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과 비교하여 인상률 등을 산출)

※ A 자치단체의 2000년 현실화율 평균은 33.9%이고 표준차가 6.1이하로 가정 하는 경우, 필지간 현실화율의 차이가 너무 커 모든 필지를 표준편차 범위내로 조정하면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작업예시 4> 참조)

- 이 경우 표준편차의 1배수 구간과 2배수 구간을 나누어
- 1배수 구간 (27.8%~33.9%미만, 33.9%~40%미만)의 필지는 2000년 현실화율 평균 33.9% 적용률을 정하고
- 2배수 구간(21.4%~27.8%미만, 40%~46.1%미만)은 하위 1배수 표준편차(27.8%)와 상위 1배수표준편차(40.0%)를 적용률로 정하며
- 2배수 표준편차 밖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차등 적용률을 정하여 2배수표준편차 현실화율(21.4%) 적용하되 상위 2배수 표준편차 현실화율

(46.1%)밖의 필지에 대하여는 가급적 1배수표준편차 현실화율인 40%를 그대로 적용하여 세 부담을 경감시킴

<작업예시 4> 적용율 결정과 총과표 추계

(단위:억원)

현실화율	계	21.4% 미만	21.4~27.8%미만	27.8 ~ 33.9%미만	33.9 ~ 40%미만	40 ~ 46.1%미만	46.1% 이상
개별공시지가총액 [㉠]	66,633	2,125	3,045	28,756	28,989	2,511	1,207
적용율 [㉢]		21.4	27.8	33.9	33.9	40	40
2000 총과표 ^{㉠×㉢}	22,588	460	855	9,846	9,925	1,014	487

하위 1배수표준편차
현실화율(27.8%) 적용

차등인상구간은
21.4% 적용률 적용

평균
33.9%

상위 1배수표준편차
현실화율(40.0%)적용

상위 1배수표준편차
현실화율(40.0%)적용

○ 주요 토지의 과표증감률을 분석하여 조세마찰 여부를 판단

- 다만, 각종 개발사업시행 등으로 실제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한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할 수 있음

<주요토지 과표증감 분석>

(단위 : 백만원)

토 지 소유자	2000토지과표총액 [㉠]	2000개별공시지가총액 [㉢]	2000현실화율 ^{㉠/㉢}	적용비율(2001현실화율) [㉢]	2001과세표준액 ^{㉠×㉢}	과세표준액증감 ^{㉠-㉢}	증감율(%) ^{㉠/㉢}
○○○	6,871	24,986	27.5%	30.0%	7,495	624	9.1
○○○	2,506	6,773	37.0%	35.0%	2,370	△136	△5.4

※ 개별공시지가 총액이 높은 토지, 주거용 토지 등 대표적인 토지 표본추출

라. 제4단계 : 결정 또는 수정

<결 정>

- 잠정적으로 결정한 적용비율 및 차등 적용비율 적용시 다음의 문제가 없는 경우 적용비율을 확정
 - 총과표수준이 「2001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기준」에 적정

- 차등 적용비율 구간별 인상·인하 폭의 적정
- 당해 시·군·구 종합토지세 예산액에 적합

<수 정>

- 잠정적으로 결정한 적용비율 및 차등 적용비율 적용시 총과표 수준초과 또는 미달, 조세마찰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적용비율을 다시 설정 가~다의 절차에 의해 검증한후 결정

2.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 類型

가. 분 할

<개별공시지가> : 2번지(전, 200㎡, 개별지가 ㎡당 100원) → 2, 2-1번지로 분할할 경우 개별공시지가 산정

2. 전 (200㎡) ㎡ 100원	⇒	2. 전 (100㎡) ㎡ ?원	2-1 전 (100㎡) ㎡ ?원
--------------------------	---	------------------------	-------------------------

나. 합 병

<개별공시지가> : 5번지(전, 100㎡, 개별지가 ㎡당 100원)와 5-1번지(전, 100㎡, 개별지가 ㎡당 120원) → 5번지로 합병한 경우 개별공시지가 산정

5. 전 (100㎡) ㎡ 100원	5-1 전 (100㎡) ㎡ 120원	⇒	5. 전 (200㎡) ㎡ ?원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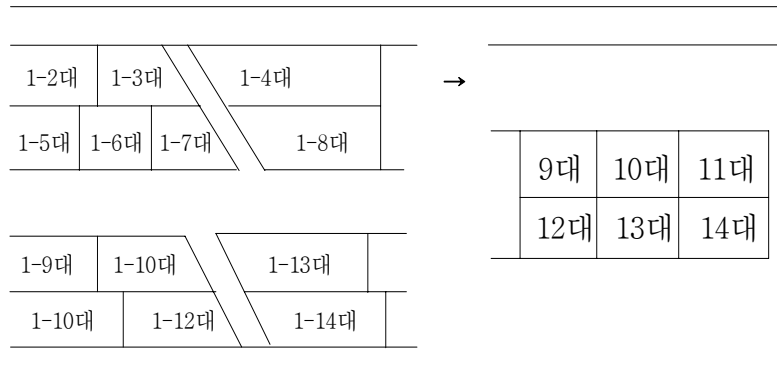
다. 지목변경

<개별공시지가> : 8번지 토지의 지목 “전” → “대”로 지목변경한 경우 개별공시지가 산정

8. 전 (100㎡) ㎡ 100원	8-1 대 (100㎡) ㎡ 150원	⇒	8. 대 (100㎡) ㎡ ?원	8-1 대 (100㎡) ㎡ 150원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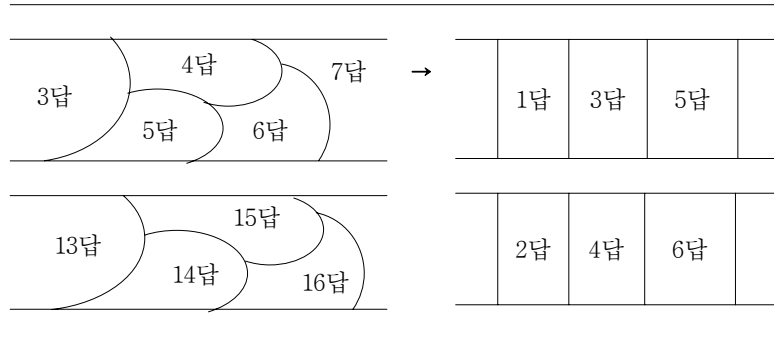
라. 토지구획정리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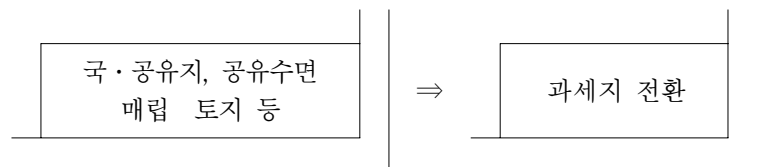
마. 경지정리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산정



바. 과세지 전환 토지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산정



3.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個別地價 算定時點

구 분		의 의	대 상	개별시가 산정시점
신규 등록		토지를 새로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 공유수면매립지 • 미등록 공공용 토지 • 미등록 도서 및 기타 미등록 토지	신규 등록시
이 동 지	등록 전환	임대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 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 관계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건축물의 준공으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	등록 전환시
	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 •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 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때 • 토지의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분할시
	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이상의 토지를 1필지의 토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 공공용지등의 지목으로서 연결하여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	합병시
지목 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사업의 수행으로 형질변경 •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 • 토지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토지	지목변경시
과세지 전환		국공유지가 매각등의 사유로 사유지로 된 것	• 국공유지가 매각되는 경우	사유지로 된 때
구획정리 사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등으로 인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토지	•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 • 경지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	환지에정지 공고

4. 個別公示地價가 違算・誤記된 土地(例示)

가.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게 결정된 경우

<현 황>

㉠ 533,000 (160,000)	㉡ 506,000 (152,000)	㉢ 5,060,000 (152,000)	㉣ 533,000 (160,000)
------------------------	------------------------	--------------------------	------------------------

※ 개별공시지가(과세표준액)

○ 평균현실화율 : 30%

$$\text{㉔} \text{ 필지현실화율 : } 3\% = \frac{152,000}{5,060,000} \times 100$$

$$\text{㉕} \text{ 필지현실화율 : } 30\% = \frac{152,000}{506,000} \times 100$$

나.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낮게 결정된 경우

<현 황>

㉔ 533,000 (160,000)	㉕ 506,000 (152,000)	㉖ 50,600 (152,000)	㉗ 533,000 (160,000)
------------------------	------------------------	-----------------------	------------------------

※ 개별공시지가(과세표준액)

○ 평균현실화율 : 30%

$$\text{㉔} \text{ 필지현실화율 : } 300\% = \frac{152,000}{50,600} \times 100$$

$$\text{㉕} \text{ 필지현실화율 : } 30\% = \frac{152,000}{506,000} \times 100$$

5. 適用比率 告示(例)

2001 綜合土地稅 課稅標準額 適用比率

<○○시·군·구 고시 제2000-○○호>

지방세법제234조의15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1년 5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적용비율의 결정

- 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로 한다.
- ② 2000년말 현재 과세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시·군·구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음 —

과세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	○○.○%	○○.○%	○○.○%

부 칙

이 고시는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VI. 行政事項

- 2000 개별공시지가 입력완료(시·군·구) : 5월초
- 시·군·구 적용비율별 과세표준액분석 및 적용비율 결정고시(시·군·구) : 5월말까지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개별지가 산정 및 입력완료(시·군·구): 5월말까지
- 적용비율 적용 과세표준액 산출결과 검증(시·군·구) : 6월초
- 시·군·구 적용비율 결정고시 결과보고(시·군·구→시·도→행정자치부) : 6월 10일까지
- 적용비율 결정고시 결과분석(행정자치부) : 6월 중순
- 종합토지세 부과고지(시·군·구) : 10월 10일까지

<보고서식>

구 분	적용비율	단계적용 비율	2000개별 공시지가 총액 [㉠]	2001과표 추계액 [㉡]	2000 과표총액 [㉢]	인상율 ([㉡] / [㉢])	현실화율 ([㉡] / [㉠])
시·도 합계							
○○시·군·구							

- 즉시보고: 적용비율 고시 즉시
- 최종보고: 2001. 6. 10(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입력후 산출된 과세표준액 기준)

自動車税 痼疾滯納車輛 一掃對策

김 종 만
행정자치부 세정과

I. 머리말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재정 문제 그 중에서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관심 대부분은 우선 지방세 체납액이 과다 하다는 데에 있는 것 같다. 사실 근래 전체 지방세 과세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어 온 반면 '97년 말 IMF 관리체제 이후 경제난으로 인하여 기업을 비롯한 일반 납세자들의 담세력 약화로 인하여 외형적인 지방세 체납 규모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국세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의회나 언론에서 유독 지방세 체납액에만 관심을 더 보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나 우선 지방자치의 본격실시 이후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로 인하여 재정수요가 급증

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에 비하여 영세한 데다 기본적으로 지방세가 건물이나 토지 등을 과세객체로 하는 재산과 세적 성격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제난으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현재의 지방세 여건상 세율인상 등의 방법으로 세수규모를 확대하기도 여의치 아니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연 징수 되지 아니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보일 수 밖에 없으며 눈길 모아지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실 그 실제 내면을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여 지방 세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공평 과세에도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일반적 인식 내지는 선입견과는 달리 지방세의 경우 국세에 비하여 어려운 징수여건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징수실적이나 사정은 결코 국세에 비하여 뒤지는 것이 아니다.

우선 '97년말 IMF 관리체제 이후 지방

세 체납액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나 '99년 이후부터는 지방세 징수사정이 정상상태로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표 1> 참조)

<표 1>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현황

(단위: 억원)

구 분	'96	'97	'98	'99	2000	비고
체납액	6,644	8,908	11,919	9,733	9,537	
징수율(%)	96.2	95.2	93.3	94.7	95.2	

※ 당해연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과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은 제외,

다음으로 지방세의 세수구조적인 문제점으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도 지방세 징수율 하위그룹에는 토지나 건물 등을 세원으로 하는 재산세 또는 재산과세적 성격의 세목이 몰려 있고 소비나 유통세적 성격의 세목은 전부 상위그룹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비·유통 또는 소득과세 위주인 국세에 비하여 주로 재산과세적 성격인 세목으로 구성된 지방세는 국세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징수여건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국세의 경우 '99년중 총 75조 6,308억원을 부과하거나 징수결정하여 그

중 91.6%인 69조 2,987억원을 징수한 반면, 지방세는 징수여건이 구조적으로 국세에 비하여 불리함에도 같은 기간 총 19조 903억원을 부과하여 94.7%인 18조 817억원을 징수하여 지방세 징수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 '99년 국세 및 지방세 징수율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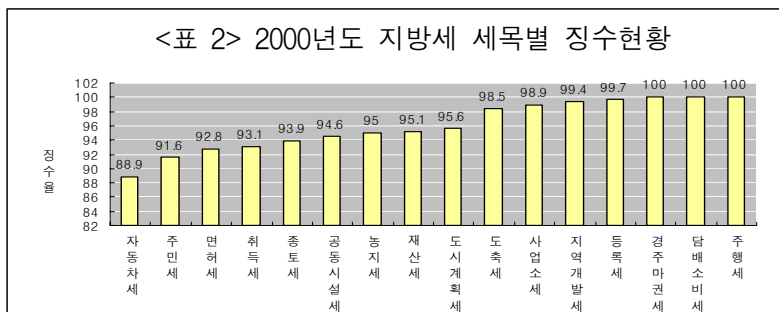
주체별	구 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국 세	합 계	804,739	704,769	47,480	52,490	87.6
	당해연도	756,308	692,987	29,134	34,187	91.6
	과년도분	48,431	11,782	18,346	18,303	24.3
지방세	합 계	221,912	185,861	3,423	32,628	83.8
	당해연도	190,903	180,817	353	9,733	94.7
	과년도분	31,009	5,044	3,070	22,895	16.3

※ 2000년 국세통계연보, 2000년 지방세정연감 자료

다만 지방세의 경우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미미하여 체납액이 과다하다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의 경우 99년도에 부과(징수 결정)한 총 75조 6,308억원중 2조 9,134억원(3.9%)이 결손 처분된 반면, 지방세는 같은 기간 총 19조 903억원을 부과하여 그 중 353억원(0.2%)만이 결손처분되었다.

또한 과년도(5년간)에 체납되어 '99 회계

<표 2> 2000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은 국세의 경우 총 4조 8,431억원이 이월되어 '99 회계연도중 1조 8,346억원(37.9%)이 결손처분된 반면, 지방세는 같은 기간 총 3조 1,009억원의 이월 체납액중 3,070억원(9.9%)만이 결손처분되어 징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미수액(2조 2,895억원)이 당해연도 결산 총체납액에 포함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지방세 징수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살펴볼 때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나 우려 이상으로 실제 지방세징수를 위하여 일선 징수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방세징운영도 나름대로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만, 매년 지방세 평균 징수율에 훨씬 미달하고 있는 자동차세가 지방세 체납액 증가의 주요인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지방세 체납율이 높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우리부에서는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추진을 통하여 정상적인 지방세징운영을 도모하고 아울러 전체적인 지방세 체납액도 줄여 나갈 계획으로 있다.

II. 推進 背景

1. 자동차세 체납 과다발생 원인

자동차세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선 자가용승용차의 급속한 보급과 IMF 관리체제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증가 등 주로 경제적인 사정을 들 수 있으나

이는 다른 재산과세적 성격의 세목도 마찬가지 이므로 유독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되고 있는 이유로 충분하지가 않다. 따라서 다른 일반 세목과는 달리 유독 『대장과세』를 기본으로 하는 자동차세의 특수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2. 대장과세의 불가피성과 문제점

모든 조세 부과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함이 당연한 것이나 자동차세의 경우는 그 과세객체가 되는 자동차가 토지 등 부동산에 비하여 소유권 변동이 잦을 뿐 아니라 매매, 분할·도난, 증여, 사실상 소멸·멸실 등 소유권 변동의 양태도 복잡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기도 어렵거니와 실제 적용할 경우에는 많은 징세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므로 결국 납세자의 부담 증가로 귀착될 우려가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사실에 의하여 과세하는 『대장과세』가 불가피하며 사법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 관련판례 : 대법원 98도 3278, 1998.3.23

그러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사실에 의하여 과세하는 『대장과세』방식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할 경우 비록 자동차를 양도하였더라도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전 소유주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자동차가 사실상 소멸·멸실된 경우에도 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아니한 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자동차세는 부과해야 하므로 이 경우 사실상 자진납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질과세를 통한 공평과세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3. 실질과세원칙의 도입 및 고질체납 차량의 정리

위 문제와 관련, 우리부에서는 그동안 자동차세에 있어 『대장 과세』의 기조는 유지하되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는 제도적이나 운영측면에서 실질과세 원칙 적용을 확대해 왔다.

'95년부터는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가 소멸·멸실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146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했으며, '97. 10. 1부터는 도난신고를 하고 말소등록을 한 자동차는 도난신고일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방세법 기본통칙”에 규정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자동차가 소멸·멸실된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아니한 데다, 과세권자는 상급기관의 감사 등을 의식하여 위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실제 적용을 꺼려 자동차가 사실상 소멸·멸실된 경우에도 계속 자동차세를 과세함으로써 세수 증대에는 기여하지 못하면서 체납액만 증

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2000. 3. 『고질체납차량 정리요령』을 시달하여 사실상 폐차, 장기간 방치, 사실상 미소유 차량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 제2항제4호에 열거된 사유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시장·군수가 인정하여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01. 4월에는 위 정리요령을 보완하여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 등에 대한 과감한 과세제외 조치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정리를 병행함으로써 자동차세 고질체납의 소지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허위도난신고 증가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하여

고질체납차량 정리 내지는 일소계획으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도난신고나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전적으로 기우에 불과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오히려 고질체납차량 정리 내지는 일소계획으로 인하여 종전처럼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굳이 허위도난신고나 무단방치를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즉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으며 폐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차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세는 계속하여 부과되고 압류로 인하여 체납세의 소멸시효마저 중단되므로 체납액은 10년이

<표 4> 자동차세 체납차량 현황(2001. 3월초 현재)

(단위: 천대)

합계	납세의무 이행소홀				납세자 자동차 미소유					납세자행방불명		
	소계	재산 무	관외 이전	회피 기타	소계	이전 미이행	도난후 미신고	폐차	방치· 기타	소계	개인	법인
2,108	1,709	481	129	1,099	194	62	15	54	63	205	145	60

※ 총 등록자동차 12,114천대의 17.4%

20년이고 계속 쌓이게 된다.

이 경우 종전까지는 자동차세가 계속해서 부과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는 ① 누적된 체납세를 전부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든지, 또는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②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여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폐차 등 강제처리하게 하든지(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자동차를 도난신고를 허위로 하는 방법(자동차세 포탈·공제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공제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만이 있어 일부 납세자의 경우 수년간 누적된 체납액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처벌사실은 모르는 채 또는 알면서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동차를

무단방치하거나 허위도난신고를 한 사례가 없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고질체납차량 정리 내지는 일소 계획의 시행으로 사실상 자동차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등록원부상으로 말소되지 아니하여도 행정관청에서 사실조사를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주므로 굳이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자동차를 무단방치하거나 허위도난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Ⅲ. 고질체납차량일소 추진방향

자동차세로 인하여 더 이상 지방세가 과다체납되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할 수 있도

<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

- 내용: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에 사용 하거나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이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음
-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강제처리의 시기
 - 소유자·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후 1개월 경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고기간(7일) 만료 후, 본인 권리의사 포기시
-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에서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 등록이 된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으면 폐차를 금지

록 전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소유자 파악 및 실제 소유여부, 체납동기와 원인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엄정한 체납세 징수활동은 물론 향후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소유자 행방불명시 고지유예 등 확행토록 하였다

○ 유형별 정리방법

- 사실상 미소유하고 있거나 멸실·소멸된 경우 : 과세제외
- 파산·부도 등으로 납세의무자 행방불명인 경우 : 고지유예
- 납세의무 회피 또는 이행 소홀 : 엄정한 징수활동 강화

Ⅳ. 痼疾滯納車輛 類型別 細部整理要領

1. 自動車 廢車業所に 入庫된 自動車

○ 정리대상

- 자동차를 폐차업소에 입고하여 더 이상 사용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함에도 자동차가 압류되어 폐차 및 말소등록이 불가능한 자동차
- 무단방치 차량으로 견인되어 폐차업소에 보관중인 차량중 파손되어 회수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

○ 정리의요령

- 각 자치단체별 관내 자동차폐차업소를 대상으로 폐차입고 후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 또는 무단방치되어 보관중인 차량을 전수조사(방문조사 또는 대상차량 조회)
-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입고사실이 확인되면 『입고일』이후 사실상 멸실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 그 날 이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 취소(후에 회수한 것이 밝혀지면 당초 처분취소하고 추정)
- ※ 폐차업소의 입고증명서가 제출된 경우 사실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는 경우는 등록원부상 압류해제 조치

- ※ 자동차를 폐차할 목적으로 폐차장에 입고시켜도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거나 저당권등이 설정된 경우 행정적인 폐차는 불가하나 자동차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폐차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국세징수법 제85조제1항에서 체납처분 목적물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공매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의 여지가 없는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도록

<표 5> 10회 이상 고질체납자 현황 및 체납사유

합 계	개 인				법 인			
	소 계	사실상 미소유	행방불명	기 타	소 계	부도·파산으로 행 불	사업부진	기 타
138,315명	99,174	28,783	27,533	42,918	39,141	12,757	22,742	3,642
100%	71.7	20.8	19.9	31.0	28.3	9.2	16.5	2.6

하고있고 같은법 제53조에서는 체납처분이 중지되면 그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長期間 放置되어 使用할 수 없게 된 自動車

○ 정리대상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폐차업소에 입고가 되지 아니하고

- 도로·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강제처리절차중에 있는 자동차 포함)

- 교통사고로 사실상 임의폐차된 사실이 확인되는 자동차

○ 정리방법

- 세무공무원의 실태조사 또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사실상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나 임의폐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향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폐차를 희망하는 경우 압류해제 조치

- 도로 등 금지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부서와 협조, 폐차업소로 견인하여 강제처리케 하고 입고일 이후는 앞의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

- 기 체납세액은 소유자의 행방이 확인되는 경우 체납액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행방불명 등으로 납세자의 소재지를 찾지 못하는 경우 부과철회, 무재산인 경우 결손처분 등 정리

○ 정리 근거 :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 2 제2항 제4호

3. 警察署에 盜難申告한 自動車

○ 정리대상

- 경찰관서에 자동차 도난신고를 하여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 정리방법

- 『도난신고일』부터 사실상 폐차되어 사용이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이후 과세된 자동차세·면허세는 부과취소

※ 단, 판결문, 수사기록 등에 의하여 도난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도난일부터 적용가능

- 지방세 체납으로 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해제 등 조치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5항에서 자동차를 등록말소하고자 할 경우 말소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 다만, 말소등록을 아니한 상태에서 도난차량을 회수하여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난신고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추징조치

○ 정리근거 :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 3 제2항 제4호,

4. 事實上 消滅된 것으로 認定되는 自動車

○ 정리대상

도난당했으나 신고하지 못한 자동차, 양도한 후 장기간 경과 등으로 사실상 미소유·소멸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자동차

① 조사일 현재 차령 10년 이상된 자동차로서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

② 자동차세가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로서

- 자동차검사를 최근 계속하여 2회 이상 미이행한 차량

-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이 최근 계속하여 2년 초과 차량

○ 정리방법

-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체납자자료에 의하여 자동차 미소유사실을 조사하여 미소유 사실이 인정되면 사실상 소멸되어 사용이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고일 이후 과세 제외(그 후에 회수나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추징)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미소유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동 확인서로 조사서를 갈음할 수 있다.

- 미소유사실은 정리대상 납세의무자 거주지 통·반장중 1인의 확인이 있으면 인정하고, 조사공무원이 통·반장에게 직접 확인하여 그 사실을 조사서에 기재하여도 됨

-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가입여부는 자동차 등록부서 또는 보험회사 등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 자동차등록말소를 원하는 경우 자동차

압류를 해제하고 기존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 다른 재산을 대체 압류 하거나 무재산이 확인된 경우 체납액 결손처분

○ 정리근거 :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 3 제2항 제4호

5. 不渡・破産 등으로 納稅義務者が行方不明된 自動車

○ 정리대상

-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행방불명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 주민등록 말소 또는 무단전출한 자가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자동차

- 차량 소유자가 사망했으나 상속자가 없거나 상속관리인도 선정되지 아니하여 차량 행방을 알 수 없는 자동차

○ 정리방법

-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사실을 확인, 사업자등록이 말소 되었거나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더라도 사업장이 사실상 폐쇄된 법인이나 주민등록 말소 또는 무단전출로 인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 자동차세를 6개월간 고지유예하고 그 후에도 납세자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당해 부과결정을 철회

- 기 체납된 세액은 재산조회 후 무재산이 확인되면 결손처분

※ 고지유예된 경우 부과액에서 제외하고 납세자의 행방이 추적되면 과세제외 및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추징

○ 정리근거 :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42조의2

※ 공시송달(지방세법 제52조)과 차이
공시송달 대상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와 같이 세월의 경과에 따라 과세객체로서의 존부에 영향이 없거나 적은 세목에 대하여 납세자의 일시 부재나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함이 타당하다.

- 압류의 목적은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이를 채납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선행절차로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임에도

- 자동차세가 채납되면 공매계획도 없으면서 일단 압류부터 하고 또한 한번 압류되면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소멸되어도 계속해서 압류하고 있어 사실상 징수 불가한 채납세 및 고질민원만 유발하고 있어

- 차령이 10년 이상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으로 대체압류하고 압류할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해제 및 새로운 압류를 금지하고

- 차령이 10년에 미달하는 자동차는 자치단체별 『채납처분비기준액』을 정하여 자동차의 추산가액이 채납처분비에 미달하는 자동차는 압류해제 및 무익한 새로운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V. 滯納發生抑制를 위한 稅政 運營

1. 還價實益이 없는 無益한 押留禁止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무익한 압류의 해제>

- 국세징수법 제85조제1항에서 채납처분 목적물의 추산가액이 채납처분비(공매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의 여지가 없는 경우 채납처분을 중지하도록 하고
- 같은법 제53조에서는 채납처분이 중지되면 그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

<채납처분비기준액 산정요령>

- 일반원칙 : 채납처분비는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채납처분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채납처분을 위해 별도 채용한 종사자 외의 담당 공무원 인건비는 계상되지 아니함
- 비용 유형 : 채납처분에 따른 압류·공매·배분 통지서 우송료, 견인·보관료(공매물건 인도받으면 그때부터 보관책임이 있으므로 공매 최소 소요기간의 보관비용 반영), 감정료, 공고 수수료 등 - 세정 13430-491('99. 4.26) 호 참조

《채납처분비 산출예시》

구 분	내 용	비용 산출	구 분	내 용	비용 산출
자동차	<압류> • 압류통지서 우송 • 압류해제 통지서 • 통지서, 고지서, 봉투 등 용지대 <구매> • 견인료 • 보관료 • 구매통지서 • 구매비용 • 기타	등기우송료 등기우송료 실비 실제 지급비용 실제 지급비용 등기우송료 성업공사 감정비+수수료	부동산	• 감정수수료 • 배분통지서 • 소유권이전 등기제비용 <성업공사 매각의뢰서> • 구매의뢰서 우송 • 성업공사 지급비용 <압류해제> • 압류해제 촉탁서 송부 • 통보	실비 이해관계인×등기우편료 실비 등기우편료 실비(성업공사 청구금액) 등기우송료+인지대 등기우송료
			유가증권	○ 주식 등 유가증권 압류	출장비 등 실비 (유가증권 출납공무원 계좌 입고)
부동산	<압류> • 등기부 열람 • 등기부등본 발급 • 압류촉탁 우송 • 압류사실 통보 <직접공매시> • 구매통지서 우송 • 이해관계인 통보	열람료+여비 수수료 등기우송료+인지대 등기우송료 등기우편료 이해관계인×등기우편료	귀금속 등	○ 귀금속 등 압류	은행금고, 보관비용
			동 산	○ 부동산 등 직접 공매시	공고료, 이해관계인 통지, 감정비 등 실비
			채 권	○ 급여, 예금 기타 채권 • 압류통지서 우송 • 압류해제 통지	등기우편료(채납자, 채무자) 등기우편료(채납자, 채무자)

《○○시 자동차 공매현황 : 2001. 1~3》

연식별	합 계	'89~'88	'90	'91	'92	'93	'94	'95
공매대수	41대	3	10	8	7	7	4	2
1대 평균 공매가	450천원	95	157	224	301	660	1,270	1,513

※ 1대당 공매비용 : 551천원(차량 보관·주차료, 감정수수료, 공고비용 등)

2. 納稅義務者가 死亡한 경우 自動車 稅 課稅

○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지방세법 제 16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하여야 함

○ 과세방법

-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상속개시일 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대표자를 신고토록 하고, 신고가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고 그 지정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정리근거: 지방세법 제16조, 영 제3조

3. 自進納稅雰圍氣造成을 위한 強制徵

〈상속받은 자동차의 이전등록〉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3호에서 자동차를 상속받은 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전등록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군수는 과세권자인 동시에 등록권자이므로 자동차를 상속받은 자로 하여금 3월 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도록 행정지도해야 한다.

收活動 強化

○ 개인별 자동차세 『체납액징수 목표관리제』실시

- 소속 전 공무원 개인별 자동차세 정리 또는 징수목표를 부여, 체납액 징수 및 고질체납차량 정리대상 사실조사 실시하고
- 회사원등 직장인 체납자는 직장 및 예금조회, 급여·예금 등 압류하도록 했다.

※ 2001 지방세정운영지침(세정 13430-71, 2001. 1. 29)호 참조

○ 시·도단위 “체납차량 자동차등록번호판 일제영치의 날” 운영

- 현재 각 시·군별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등록번호판 영치를 지역실정을 감안, 1일·15일 등 매월 1회 일정한 날을 정하여 각 시도별 같은 날 동시에 실시, 체납액 징수 및 자진 납세 분위기 조성
- 체납차량 회수를 위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등 장비확보

○ 시범기관 운영 등 체납차량 공매 활성화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 및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한 경우는 사용이 불가능한 데다 다른 과태료 등이 함께 체납되어 있어 매각하거나 폐차가 불가하여 소유자 입장에서 공매를 통한 체납액 정리를 원하며 일반 납세자에게는 자동차 공매처분을 통하여 강력한 징세의지를 확산시켜 자진납세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시·도단위로 산하 관련 사업소를 자동차 공매기관으로 지정하여 공매업무를 위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도단위로 1개 시·군을 “체납차량 공매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고 시범운영 사항을 토대로 전 시·군단위로 공매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등록번호판 영치 후 사후관리〉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등록번호판을 찾아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사실조사를 실시, 고질체납차량 정리요령에 의하여 정리

- ① 노후되었거나 파손되어 재산가치가 없어진 경우 폐차토록 지도하고 번호판 반환 및 압류 등 해제
- ② 재산가치가 있으면 체납액 징수 또는 공매처분 실시

判例 및 審査決定例

地方稅關聯 大法院 判例

1. 2001.1.30. 선고 99두6897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자(=과점주주)

【판결요지】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은 그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소정의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은 그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임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소정의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함으로써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 원고가 원심 판시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에 규정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01.1.19. 선고 98두1468 판결[지방세과세표준액결정및적용비율결정처분취소]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 및 이에 따른 토지가액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토지등급이 잘못 설정·수정된 결과 토지의 적용비율이 높아지게 된 경우, 위 적용비율결정이나 이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다툼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으로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16 제3항은 내무부장관은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고시에 따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 및 이에 따른 토지가액결정은 모두 종합토지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 및 토지가액결정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토지에 대한 등급이 잘못 설정·수정되었거나 혹은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된 토지등급결정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토지의 적용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토지등급결정이나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혹은 그 적용비율을 근거로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직접 다투면 되는 것이지 전체 토지소유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적용비율결정이나 이를 근거로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시가표준액을 다투어야 할 근거나 실익은 없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으로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5. 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 제3항은 내무부장관은 법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내무부장관의 96 종합토지세 과

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지침에 따라 1996. 5.31.에, 1996.6.1.부터 시행될 서귀포시의 1996 지방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34.0%로 하고, 다만 1995년말 현재 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서귀포시의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토지에 대하여 그 적용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96 지방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고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고시에 따른 이 사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 및 이에 따른 토지가액결정은 모두 종합토지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 및 토지가액결정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급이 잘못 설정·수정되었거나 혹은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된 토지등급결정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적용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토지등급결정이나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혹은 그 적용비율을 근거로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직접 다투면 되는 것이지 전체 토지

소유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적용비율 결정이나 이를 근거로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시가표준액을 다투어야 할 근거나 실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소송물에 대한 법리오해, 석명권 행사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방세 관련용어 해설

◆新設合併(신설합병)

合併當事會社の 전부가 消滅하여 新會社를 設立하고 그 設立會社가 消滅會社の 재산과 社員을 承繼收容하는 식으로 하는 合併, 設立合併이라고도 하며 吸收合併에 대한 것이다. 合併契約, 合併決議, 債權者 保護의 절차를 하는 것은 吸收合併의 경우와 같으나, 다만 合併決議와 동일한 방법으로 設立委員이 선임되어 이 設立委員이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商法 §175).

判例 및 審査決定例

地方稅關聯 行政自治部 審査決定例

1. 2001.4.30. 제2001-197호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한주택공사가 건축한 아파트 단지내 부속 상가가 취득세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대한주택공사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면적이내의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에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정 결정

가.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8.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번지 신림○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토지상에 주공3단지 와 단지 부속상가를 신축한 후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자, 아파트 단지내 상가건축물 1,028.05㎡(이하 “이건 상가”라 한다)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0. 9.5. 반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건 상가의

취득가액(1,922,582,610원)에 지방세법 제 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451,650원, 농어촌특별세 3,845,160원, 합계 42,296,810원은 2000. 9.2. 신고납부하였으나, 등록세와 교육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

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한 공공분양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인 이진 상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체비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또한 정부출연기관인 청구인은 국가의 심의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진 공공분양아파트의 상가는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에 해당되며,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진 상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우리부의 판단

이진 심사청구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공공분양아파트의 상가건축물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제127조의2제2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

은법제278조제1항, 구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25조제2호에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의 고유업무로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집단적인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0조에 주택단지내에 복리시설로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을 합한 면적은 매 세대당 6㎡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이 50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으로 500㎡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1.)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번지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1995.7.14.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2000.8.3. 공공분양아파트 1,482세대와 이진 상가 등을 신축 취득하였으며, 2000.9.1. 공공분양아파트 일부 및 유치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제127조의2제2항 및 서울특별시감면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9.5.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이 이건 상가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을 하지 않음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만 신고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건축한 공공분양아파트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축한 아파트로서, 이러한 공공분양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제3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이건 상가를 건축하였으므로, 이건 상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분명하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건축한 공공분양아파트는 1,482세대 및 유치원과 함께 건축한 이건 상가의 면적이 1,028.05㎡로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0조제1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면적인 8,892㎡(1,482세대×6㎡)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공분양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필요한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2001.1.30.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1-17·18호)인데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과소납부되었다 하겠다. 그리고 등록세와 교육세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2001.3.27. 제2001-126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유치원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치원으로 사용하다가 유예기간내에 임대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정대상 여부

【결정요지】

구지방세법 제107조 본문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정사유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유치원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치원으로 2년이상 사용하다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정대상으로 볼 수 없어 취소 결정

가.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24. 유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번지 202호(건축물 315.25㎡, 토지 95.4852㎡,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다가 2000.3.10. 유치원을 폐쇄하고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22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00,000원, 농어촌특별세 495,000원, 등록세 8,100,000원, 교육세 1,485,000원, 합계 15,48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3.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치원으로 사용하다가 경험부족 및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유치원을 폐쇄하고 이를 임대하였는 바,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의 유예기간은 그 준비기간을 인정한 것이지, 취득후 3년간 반드시 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4개월간 유치원으로 사용하다가 임대한 경우에는 추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재정난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임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우리부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유치원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치원으로 사용하다가 임대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구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제1항제2호, 제94조제1항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10.20.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10. 유치원 설립자변경 신청을 하여, 같은해 11.21. 경기도부천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고, 같은해 11.24.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유치원으로 사용

하다가 2000.3.10. 유치원을 폐원하고, 같은 날 청구외 J씨에게 미술학원 용도로 이건 부동산을 임대(임대보증금 3천만원)하여 현재 임차인이 미술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임대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에는 유치원용 부동산인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치원으로 2년이상 사용하였고, 이렇게 유치원으로 사용하다가 수익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로서, 구지방세법 제 107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사유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일단 적법하게 그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추징사유에서 제외된 후에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 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 관련용어 해설

◆信義誠實의 原則(신의성실의 원칙)

모든 사람은 社會共同生活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信賴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할 것이 요구된다. 이 倫理的 規範을 법률에 있어서 존중하여 法律關係를 이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할 때에 특히 이것을 법률에 있어서는 信義誠實의 원칙이라 한다.

조세에 있어서 각종의 申告, 納稅등에 있어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履行함에 있어서는 信義를 좇아 誠實히 하여야 하며, 稅務公務員이 그 職務를 修行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國基 §15).

地方稅法令 質疑回信

- 行政自治部 稅政課 -

1.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비과세 여부

【질 의】

당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종교법인으로서 전도, 교육, 구호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7년 10월 13일 고양시 덕양구 ○○동 부활교육센터 401호와 403호를 취득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즉시 403호는 ○○교회의 예배당으로, 401호는 동 교회의 교육관으로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교회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IMF 이후 교회자립을 하지 못하고 재정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건물관리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어 취득일로부터 만 3년간 교회교육관으로 사용하던 401호(이하 이건부동산이라 함)를 2000년 10월 15일 계약존속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학원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 의사로 임대한 것이 아니고 교회부흥과 재정적자립이 가능한 시점까지를 2년으로 보고 일시적으로 세를 준 것입니다.

취득일로부터 만 3년간 종교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이건 부동산을 임대했다는 이유로 취득할 당시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던 취득세, 등록세의 추징여부를 질의함.

회 신

구지방세법(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312호 개정 이전의 것) 제107조 본문 단서 및 제127조제1항 단서 규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되는 경우는 종교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므로 귀문과 같이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이후 임대등을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되지 아니함(행정자치부 심사제2001-126호 참조)이 타당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세정 13407-391, 2001.4.10)

2. 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관련 질의

【질 의】

당사는 1999년 4월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제조업체로서 2000년 8월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서 영등포구 양평동으로 공장 및 본점 이전을 하며 토지, 건물을 취득한 바(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개선 자금을 지원받아 경매받았으며, 신축 및 증축사항은 없었음)

관할 ○○구청으로부터 공장 구입에 따른 등록세와 교육세에 대해서는 감면조치에 의거한 면제조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는 부과취소처분 신청에 따른 면제조치를 받았던바, 현재 ○○구청이 상기 행정처분에 대하여 등록세·교육세에 대해서는 감면등 행정처분 근거가 있어 논외로 하고, 취득세·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는 부과예고 예정인 바, 1999년 8월 31일 조특법 부칙조항 제정 이전 시점에 벤처를 받은 회사는 벤처 받은 시점에서 2년 이내 취득 물건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적용된인지의 여부와 등록세 감면대상법인 합병장려업종(당사 공장등록증상 업종이 31109임) 내무부고시 제95-65에 의거 중과세 대상이 아님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부칙(1999. 8. 31 법률제5996호) 제10조에서 “제119조내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과 같이 귀사가 1999년 4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당해 사업용 재산을 2000년 8월에 취득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고 또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제3항 또는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된 당해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세정 13407-383, 2001.4.9)

3. 물적분할의 경우 취득세 면제여부

【질 의】

A사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진행중인 회사로서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한 MOU약정에 의거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99년초 모기업에 흡수합병 된 바 있고, 2001년 상반기에는 Work-Out계획의 MOU약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47조 제1항에 근거 목적분할에 의한 분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분할신설법인 B사는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항제9호(취득세), 동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동법 제45조의2, 동법시행령 제42조의2(등록세) 등에 의거 면제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하는 자산 중 일부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의한 취득세 중 과세물건인 가요주점 및 단란주점임대물건,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소재)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동 자산에 대하여 99년 합병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취득세면제 조항에 합병관련 조문이 없는 관계로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되거나... 동조 동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는 조항에 의거 합병이전에 이미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던 자산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았고, 합병이후에 신규취득한 중과세대상자산(임대물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 자산에 대하여 99년 합병당시와 같이 분할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취득세 중과세조항에 의거한 취득세중과세조항이 면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물적분할에 의한 분사로 인해 취득하게 될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9호(취득세), 동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동법 제45조의2,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등록세) 등 감면조항에 의거 지방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및 그 재산에 관한 등기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분할 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 사업영위 여부, 분할 주식의 배정비율, 승계사업의 계속성여부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함(세정 13407-386, 2001.4.9)

4. 취득세등 중과세 해당 여부

【질 의】

당법인은 부동산임대 및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4년 6월 의정부시 의정부동 ○○번지 토지 건물(이하 ‘임대용건물’이라 한다)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하였으나, 법인 업무 사정상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소재 사무실을 임차하여 본점소재지를 이전함에 따라 현재 본점이 소재한 임대용건물은 단지 임대업만 영위하는 지점으로 되는데, 기존의 본점이 소재했던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임대용건물에 대하여 ① 부동산등기 등록세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소급하여 중과세되는지 여부 ② 법인 이전에 따른 등록세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거 중과세되는지 여부 ③ 부동산등기 취득세가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중과세되는지 여부?

회 신

구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5835호 1998. 7. 16 개정이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건축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6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라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구지방세법(법률 제5598호 1998. 12.28 개정이전의 것)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5배 중과세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의정부시로 이전하여 본점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중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 부동산에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지점을 설치하고 그 설치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동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가 중과세됨(세정 13407-387, 2001.4.9)

5.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여부

【질 의】

①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1996년 8월 3일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2000년 6월 3일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건축공사중에 있음. 향후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동 부지를 공사 취소후 매각 등 다양한 사용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②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시행령(2000.12.29)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상기 ②의 조항에 의하여 당사의 비업무용 토지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로 해석하는지 아니면 이 시행령 발효일(2001.1.1) 이후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 답

구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052호, 2000.12.29 개정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취득후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2000.8.3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것임(세정 13407-362, 2001.4.3)

6. 시가표준액 산출관련 질의

【질 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중여)등기를 함에 있어 지층 및 부속건물인 창고를 합산하여 1구내 연면적 278.74평방미터로 보아 각 산출된 과세시가표준액에 35/100 [예시1]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는바 2001.1.1.시행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부동산시가표준액표에 따르면 지층과 부속건물인 창고를 제외한 면적을 1구내 연면적 201.71평방미터로 하여 각 산출된 과세시가표준액에 15/100 [예시2]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정확한 산출방법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

55.19 평방미터 113,000원= 6,236,470원 35/100 가산= 8,419,234원

96.59 평방미터	113,000원=10,914,670원	35/100 가산=14,734,804원
88.28 평방미터	113,000원= 9,975,640원	35/100 가산=13,467,114원
16.80 평방미터	113,000원= 1,898,400원	35/100 가산= 2,562,840원
21.84 평방미터	113,000원= 2,467,920원	35/100 가산= 3,331,692원
합 계		42,515,684

[예시 2]

55.19 평방미터	113,000원= 6,236,470원	
96.59 평방미터	113,000원=10,914,670원	15/100 가산=12,551,870원
88.28 평방미터	113,000원= 9,975,640원	15/100 가산=11,471,986원
16.80 평방미터	113,000원= 1,898,400원	15/100 가산= 2,183,160원
21.84 평방미터	90,000원= 1,965,600원	
합 계		34,409,086

회 신

2001년도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 4. 가감산 특례 가. 가산대상 및 가산율[단독주택]에서 1구내 연면적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하되, 지하실 면적에 대하여는 가산율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면서 그 [적용요령]에서 주택의 지하실(차고 제외)에 대하여는 2001년도 재산세(재산세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포함)에 한하여 100분의 20을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문과 같이 1구내에 단독주택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단독주택 연면적과 부속건물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가산율을 적용하되, 지하실 면적(차고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는 100분의 20의 감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함(세정 13407-366, 2001.4.3)

7. 토지수용 보상금 수령일에 대한 질의

【질 의】

본인의 田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용인○○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2000. 1. 13 보상금(금 3억여원)을 수령하고, 또다른 본인의 田이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의 용인△△ 2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2000.3.22 보상금(금 4백여만원)을 수령한 바,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의 적용에 있어 위 두건의 수용을 동일 건으로 보아 2000.3.22이 되는지

여부, 아니면 별개의 건으로 보아 대체취득에 대하여 각각의 보상금 수령일을 마지막 수령한날로 보아 각각 적용하는지 여부와 본인이 2000.1.13 보상금을 수령하고 2000.10.11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을 경락받아 계약금을 납부하였는데 본 물건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인 'K씨'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있어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잔금을 납부치 못하고 있다가 2001.2.8 법원의 대금납부기일 지정 소환장이 통보되어 2001.3.2 잔금을 납부한바 이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에 의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의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라 함은 동일사업 인정 고시지역내에서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완납받은 날을 뜻하는 바 귀문의 택지개발사업지구용인신분, 용인수지2)별로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을 각각 판단하여야 함(세정 13407-359, 2001.4.3)

8. 지목변경관련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대한 질의

【질 의】

개인토지를 법인사원체육시설로 이용하고자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일체의 비용은 법인에서 부담하고 법인 승낙없이 일체의 토지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법원등기도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지목변경의 원인이되는 토지형질변경허가도 법인명의로 득하고 토지개발비용 및 각종 부담금(대체조립비, 설계비 등)도 법인장부에 기재하였을 경우, 개인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법인장부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 단서규정에 의거 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장부가격이 과세표준액이 되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개인의 토지위에 지상권을 설정한 법인이 사원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목변경을 한 경우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 지목변경공사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이 되는 것임(세정 13407-343, 2001.3.29)

9. 도시형업종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 여부

【질 의】

당사는 1995년 10월 1일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도 시흥시에서 부천시로 2000년 4월에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법인 또는 지점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무용, 비사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한 법인은 토지·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가 중과세에 해당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및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공업배치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과 동법시행령 제84조2항 규정에 의한 공장의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중과대상에 제외되는 것이라는 관련법에 의거 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당사는 도시형 업종(사업분류코드: 33119), 부지면적: 1643.3 연면적: 3455.36입니다.

관할시청에서는 취득토지중 본점해당분(사무실: 229㎡), 등록 토지중 본점해당분(사무실+식당: 96.25㎡), 취득 건물중 본점해당분(사무실), 등록 건물중 본점해당분(사무실+식당)이 중과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점이 중과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을) 취득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나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규정된 공장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본점용사무실을 신축하여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나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합니다(지방세법운용세칙 제138-4 참조). 귀문의 경우 도시형공장용 부동산이 아닌 「본점용부동산」의 경우에는 동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중과세됨을 알려드리며

위의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세정 13407-347, 2001. 3.29)

10.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과세여부

【질 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당초 1필지 토지중 1인은 특정부분을 분할하여 분할된 토지상에 외 2인에 대하여 형식상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판결에 의하여 2인의 지분을 이전하여 단독소유로 등기를 정리하였고 나머지 2인 공유자는 나머지토지에 대한 위 1인의 지분에 대하여 형식상의 상호 명의 신탁관계에 있는 것을 해지하여 2인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위 각 등기는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 이전이지 사실상 당초 소유했던 면적 그대로 공유물 분할이나 다름없으므로 지방세법 110조에 해당,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 신

귀문과 같이 법인의 판결에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각목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함(세정 13407-353, 2001.3.31)

11.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한 질의

【질 의】

우리 회사는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는 법인 사업자로서 제조회사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시 차량가격에 할부원금의 이자를 포함한 총 금액을 약정된 회수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키로 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는 차량대금과 할부이자를 구분하여 각각 발행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할부이자 금액의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에 다음과 같은 양설에 대하여 귀 부의 고견을 듣고자 질의함

“제1설”

할부이자에 해당된 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유: 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할부이자란 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금융비용으로서 과세 객체의 가격과는 별도로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임.

② 두 개의 예를 가정한다면 하나는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차입하여 차량을 현금 구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의 금융비용이 발생한 경우와 또 다른 하나는 제조회사에서 직접 할부금융으로 하여 제품가격과 할부이자를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의 총 지급액은 같으

나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 금액이 서로 다르다면 이것은 큰 모순이라 사료됩니다

“제2설”

할부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유: 그 자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출이기 때문임.

회 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설계비·연체료·할부이자및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 그 할부이자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세정 13407-337, 2001. 3.27)

12. 타워크레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 의】

아파트신축공사를 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을 구입하였는데 관할 구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T형 타워크레인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를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의 개념을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여 기중기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으로 하되,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③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5에서는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2의 위임규정에 따라 「기중기」의 개념을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를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④ 건축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되는 T형(아파트형)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

칙 제105조 참조), 감독관청도 건설교통부가 아닌 노동부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4조에서도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와 유사한 기계장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워크레인 중에서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기중기와 유사하지 아니한 아파트공사장에서 건축공사시에는 조립하여 공사를 하고, 공사가 끝나면 해체하는 T형 타워크레인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귀부의 의견은?

회 신

지방세법 제104조제2의2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의 종류와 범위는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유사한 기계장비중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2 <별표5>에 규정된 것을 말하며 <별표 5> 7. 기중기의 범위에는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를 포함)이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의 타워크레인이 건설공사용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유사기종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과세대상에 해당됨(세정 13407-336, 2001.3.27)

13. 아파트형 공장의 양도관련 취득세등 과세여부

【질 의】

우리회사는(설립일 1996.3.18) 서울시 감면조례 제19조제②항에 의거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및등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동 아파트형공장을 양도하려 합니다.

상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① 서울특별시 감면조례 제19조 제②항단서에 의거 추정사유에 해당되어, 이미면제 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정시 지방세법 제12조제③항 동법 제138조제①항3호에 의해 중과세하여 추정하는지요?(우리회사는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또한 중과세하여 추정한다면 취득시점의 법률(5배)과, 양도시점의 법률(3배)중 어느법률을 적용하여 중과세하는지요?

② 상기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후 저회법인의 주식이동으로 지방세법 제05조제⑤항의과점주주의 의제취득에 해당되었으나 당초 취득이 전액감면되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감면조례 제19조제②항 단서에의거 감면세액을 추정한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

세도 추정대상인지요?

회 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귀문과 같이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및 제138조제3호의 중과세대상 물건과 제105조제6항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후 동감면조례의 추정사유에 해당된 경우라면 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정사유 발생 당시의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제112조제3항, 제1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됨(세정 13407-333, 2001.3.27)

14.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질 의】

당사는 철강제조업을 목적으로 1999년 12월 24일 설립하여 2001년 1월 사무실및야적장부지를 경락받고 2000년 6월 7일 공장부지인 부산시 장림동○○번지의 부동산 및 기계기구, 구축물을 법원으로부터 경락취득하였습니다.

종업원은 전근무지에서 경락매각되는 바람에 경락인수한 당사가 전근무지 종업원중 일부를 신규로 채용하였습니다. 경락으로 취득하는 회사의 채권채무를 인수받지않고 포괄적으로 사업승계를 받지않는다는 전제조건에서 동종업종을 최초로 영위할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승계라는 조건이 애매모호하며 부동산과 기계기구, 구축물 및 종업원(신규채용)을 취득할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하는데, 채권 및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단지, 경락의 부동산등과 기존사업장의 직원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귀부의 의견은?

회 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아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귀문과 같이 법원경락에 의하여 채권·채무는 인수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과 기계기구만을 취득한 자가 종업원은 경락전 종업원을 일부 신규채용하여 경락전 사업을 최초로 영위하는 경우라면 창업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세정 13407-313, 2001.3.22)

15. 농지구입관련 취득세등 감면 여부

【질 의】

지방세법 제261조의 해석에 있어서 현재 농업을 2년이상 짓고 있는데 타지역의 농지를 구입하여 그 지역으로 이주할 때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답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안에 위치한 경우에 감면대상이므로 귀문의 경우 타지역의 농지를 구입하는 시점에서 상기 요건을 구비하여야 감면되는 것임(세정 13407-314, 2001.3.22)

16. 토지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질 의】

취득세 과세에 있어 과거 30년전에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으나 매도인이 토지를 매도하고 행방불명되어 천신만고 끝에 그의 자손을 찾아 등기이전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여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는데 본건 취득물의 취득기준을 당초의 매수한 일자에 매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피고에게 1972.7.2일자 매매로한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1999.2.12 성남지원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고 2000년 8월 25일 수원지방법원 항소 3부에서 원고 승소판결과 2001.1.19 대법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사실상 매수일은 1972.7.2인데 이를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요 판결문에는 매수일을 1972.7.2로 되었음. 모든 취득물의 취득기준은 등기나 준공을 불문하고 사실상 토지는 잔금 지불한 날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물은 사실상 공사완공한 날을 취

득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사료되으나 지방세법상 취득일의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요

일설에 의하면 소송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판결문 내용에 명시된 취득일이 기준이 아니고 소송이 종결되어 선고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귀견은 여하하십니까?

회 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의 시기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취득일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일(2001.1.19)이 되는 것임(세정 13407-316, 2001.3.22)

17. 농지·임야 취득관련 취득세등 감면여부

【질 의】

본인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입니다. 당 조합은 농업·농촌 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2000년 12월에 설립하였으며 조합정관의 목적에 따른 농업 및 임업을 위하여 농지와 임야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위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할 시에는 지방세법 제266조7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50/100이 감면되는지?

회 신

지방세법 제226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일광영농조합법인)이 영농(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농작물생산업, 임업,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100분의 50이 경감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임(세정 13407-312, 2001.3.22)

18. 차량취득세 감면여부

【질 의】

당사는 외자도입법(1981.12.31 법률 제3518호 및 1983.12.31 법률 제3691호)에 의거 1984.6.29. 및 1985.6.17. 재무부로부터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1998.5.12 외자도입법 제12조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외자도입법 제15조에 의거 당해 사업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는 감면받도록 되어 있으며 감면범위는 관광호텔 및 동 부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관광호텔 영업특성상 당사 VIP고객(투숙 및 연회행사)의 편의를 위해 영업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이 차량이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문의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호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사업개시 일로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내역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금액의 전액을, 그다음 3년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외자도입법 제1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1998.5.12)을 하고 그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법인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차량을 법인장부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등재를 한 다음 신고한 사업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감면대상이나, 이의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법인장부 등을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세정 13407-306, 2001.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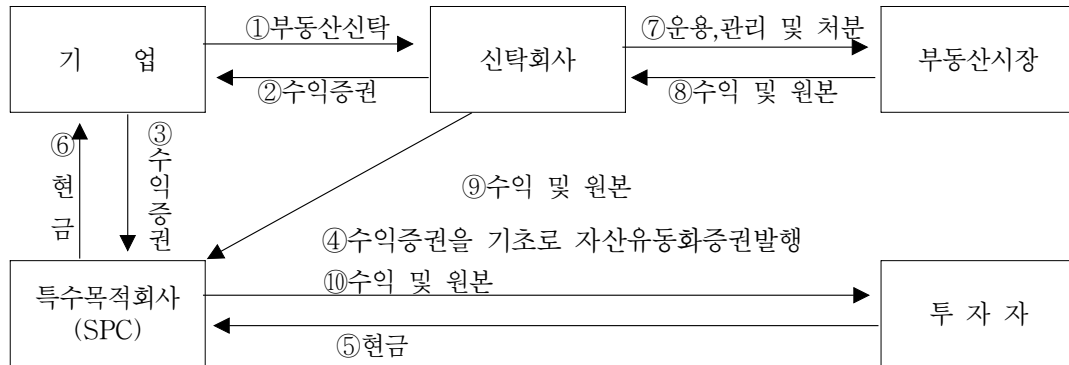
19. 유동화자산의 취득세 납세의무

【질 의】

당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자산(특별부가세 부과 대상자산)을 신탁하고 동 신탁으로부터 수익증권(원본 및 이익에 대한 수익증권)을 교부 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자산유동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동화 과정에서 기업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고 받은 수익증권을 특수목적회사(SPC)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되며, 특수목적회사는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수익증권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y)을 발행하여 이를 일반 투자자에

게 매각함으로써 기업이 보유한 수익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또한 신탁회사는 신탁받은 부동산을 부동산시장에서 관리, 운영 및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수익증권을 보유한 특수목적회사(SPC)에 지급하게 되고 특수목적회사(SPC)는 신탁회사에서 받는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위탁자인 기업은 신탁회사에서 받은 수익증권 중 일부를 특수목적회사(SPC)에 판매하지 아니하고 자체 보유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만기에 신탁회사는 수익증권을 보유한 특수목적회사(SPC)에 부동산을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 ① 기업이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신탁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요?

② 기업이 부동산을 신탁하고 받은 수익증권을 특수목적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특수목적회사는 수익증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해당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요?

③ 만약 수익증권의 취득으로 인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면 수익증권의 일부를 특수목적회사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합니까?

회신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함)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신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위탁자인 기업이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으로 이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유동화계획의 내용, 자산보유자로부터 유입물건등이 감면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후 판단할 사항임(세정 13407-289, 2001.3.19)

20.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부동산 취득 등록세 부과여부

【질 의】

당사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종합건설회사로 (주)○○공영 대표 J입니다.

당사는 97년 3월 28일 인천시 서구 마전동에 아파트 477세대를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현재 공정을 92%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승인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증축 용지매입 조건으로 승인받아 기부채납토록 명시된 바 있습니다. 조건부 이행코자 당사는 지정된 학교증축부지 2,289㎡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본 토지를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신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동법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 포함)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문의 기부채납 토지(학교용지)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서 그 승인조건 사항으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였다면 취득세등이 비과세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세정 13407-283, 2001.3.17)



외국의 세제

日本の 法定外 目的税 및 普通税 制度

류 금 렬

행정자치부 세제과 세제1담당

1. 서 언

지방분권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하 “分權一括法”이라 한다)이 1999년 7월 16일 공포되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4차에 걸친 권고를 최대한 존중한 지방분권추진계획에 따라 도도부현지사나 시정촌장을 국가의 기관으로 하여 국가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제도를 폐지하고,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관여의 축소·폐지, 국가나 도도부현의 권한이양, 지방공공단체의 자주조직권을 존중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지방세제 측면에

서도 지방재정의 충실한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종래 자치대신의 허가제였던 법정외보통세를 동의제로 개정하고 법정외목적세를 신설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2. 법정외보통세 개정 취지 및 법정외목적세 신설 의의

1) 법정외보통세의 개정 취지

법정외보통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될 수 있는 한 주민들의 세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배려함과 아울러 국가 경제정책 등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목의 신설을 막기 위해 신설·변경에 대해서는 자치대신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지방분권의 추진을 위해 과세자주권을 보다 존중하는 관점에서 허가제도를 폐지하고 2000년 4월 1일부터 국가의 동의를 얻는 협의제도로 변경하였다. 이것은 국가·지방이 대등한 협력관계라는 새로운 관계설정에 따라 쌍방이 성실히 노력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과세자주권 존중을 고려하여 국가의 관여를 줄여나간다는 측면에서 이제까지 허가의 적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던 세원의 소재와 재정수요의 유무는 협의시에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세원이나 재정수요의 존재는 법정외보통세 신설시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2) 법정외목적세의 신설 의의

법정외목적세는 조례로 정하는 특정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과세할 수 있는 목적세이다. 법정외목적세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치대신의 동의를 얻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1950년 지방세법 제정시에 법정외보통세가 신설되었는데 법정외목적세는 없었으며 지방세법상의 목적세로 수리지익세와 공동시설세가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부터 지방세로 도시계획세, 경유인취세, 자동차취득세, 사업소세 등의 목적세가 신설되

는 등 수익과 부담의 대응관계가 명확한 목적세가 제도화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제2차 권고에 따라 주민의 수익과 부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세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법정외목적세가 신설되었다.

3. 법정외보통세 및 법정외목적세의 개요

1) 법정외보통세 및 법정외목적세의 신설·변경

지방세법의 법정외보통세와 법정외목적세의 규정은 거의 같다. 법정외목적세는 조례로 정한 특정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정외목적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 비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지방분권추진계획에서 자치사무의 처리에 관련되는 국가의 관여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지됨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제도를 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정외목적세도 허가제도를 폐지하고 협의제도를 두게 되었다. 그러나 협의제도도 될 수 있는 한 주민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 경제정책 등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세목의 설정을 제한하기 위해 법정외목적세 신설 시에는 자치대신과 협의하고 동의를 얻도

록 하였다.

2) 同意의 기준

자치대신이 시정촌으로부터 법정외목적세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국세 또는 그 밖의 지방세와 과세표준을 같이하여 주민의 부담이 현저히 과중하게 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간 재화의 유통에 중대한 장애가 되는 경우

③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볼 때 적당하지 않은 경우

자치대신이 법정외목적세 신설에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불복하는 하는 경우에는 國地方係爭處理委員會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위에서 본 不同意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국세 또는 그 밖의 지방세와 과세표준을 같이 하여 주민의 부담이 현저히 과중하게 되는 경우

이것은 법정외목적세가 될 수 있는 한 다른 세목과 중복과세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현행 조세체계 하에서 사실상 중복과세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법정세목과는 달리 법정외목적세가 특정 시정촌에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세부담이 과중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어느 정도가 주민들에게

과중한 수준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신설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만 아니고 그에 따른 수익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세율 이외에도 담세자의 범위, 담세력에 비교한 세부담 수준, 선례, 과세기간, 기타 유사 세목과의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간 재화의 유통에 중대한 장애가 되는 경우

이것은 시정촌간에 재화의 유통을 저해하는 內國關稅的인 법정외목적세는 국내 경제의 원활한 활동에 큰 지장을 주고 신뢰성과 공평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③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볼 때 적당하지 않은 경우

이 요건에 대해서는 일의적으로 정할 수가 없고 법정외목적세로 과세하는 세의 성격이나 내용 등에 따라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3가지 요건은 종래의 법정외보통세 허가시 고려해야 하는 이른 바 소극적 요건과 같다. 종래 허가의 적극적 요건으로서 세원의 소재와 재정수요의 유무가 있었다. 적극적 요건의 충족 여부의 심사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과세객체가 당해 과세단체에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필요한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확보한다고 해도 그 세수가 당해 단체의 재정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어 零細課稅로 되지 않는지 여부

③ 세수에 비해 징세비가 높지 않는지

여부

④ 과세객체와 과세단체와의 관계에서 볼 때 과세권의 적정한 귀속이 가능한지 여부

⑤ 그 성격상 오히려 분담금, 사용료 또는 수수료로 과세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⑥ 법정세목과의 관계에서 중복과세로까지는 되지 않아도 법정세목의 내용 또는 취지에서 볼 때 부적당한 것이 아닌지 여부

⑦ 세원이 특수한 재정수요와 밀접히 관련되고 있는지 여부

⑧ 재정수요 및 해당단체의 재정에 문제(징수율, 급여, 정원의 적정성 등)가 없는지 여부

이러한 심사 기준은 종래 자치대신이 법정외보통세 허가시 고려하였지만, 이제는 시정촌의 책임으로 지방의회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3) 大藏大臣에의 통지

법정외목적세에 관계되는 협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자치대신은 그 내용을 대장대신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것은 종래 허가제도 하에서와 같이 법정외보통세와 법정외목적세는 조례에 의해 과세객체 등 과세 요건이 정해지고, 국세와 지방세를 통한 기존의 조세체계 외에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전체의 조세부담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치대신이 대장성에 통보하여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4) 비과세의 범위

종래 법정외보통세에 규정되어 있던 비과세 규정은 아래와 같이 크게 3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域外에서의 과세를 배제하는 것
- ② 생활보장적 급부에 대한 과세를 배제하는 것
- ③ 방송수신설비에 대한 과세를 배제하는 것

이 중 ①은 지방세의 본질적 제약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정외보통세와 법정외목적세에 공통하는 비과세 규정으로 존치되었다.

②의 경우는 현행 각 개별법에 조세 부과 금지 규정이 있다.

③의 경우는 1950년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는 사치품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보급촉진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법정외목적세의 비과세 규정에 추가하지 않고 아울러 법정외보통세의 비과세 대상에서도 제외하였다.

4. 동의에 관한 처리기준 등

종전의 법정외보통세의 허가절차를 정한 「법정외보통세의 신설·변경에 관한 절차」(1950년 8월 25일 地財委官 제218호)는 폐지되고, 이제는 시정촌 법정외보통세 및 법정외목적세의 신설·변경은 「법정외보통세 또는 법정외목적세의 신설 또는 변경의 동의에 관한 처리기준」(2000년 4월 1일 자치

부 제36호, 자치시 제43호)에 따르게 되었다. 이 기준은 자치대신이 동의하는 때의 처리기준, 표준처리기간 및 협의의 신청에 관한 수속에 대해 정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1) 동의에 관한 처리기준

분권일괄법에 의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국가의 행정기관 등은 법령에 근거한 신청에 대해 허가나 인가 등을 할 것인지를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해 공표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50조의 2). 자치대신은 다음과 같은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해야 한다.

① 국세 또는 다른 지방세와 과세표준을 같이하여 주민의 부담이 현저히 과중하게 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간에 재화의 유통에 중대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③ 국가의 경제 정책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이 기준은 분권일괄법에 의해 개정된 지방세법 제671조 및 제733조 규정의 자치대신의 동의 기준과 같은 것이고 세원 및 재정수요의 유무는 협의 사항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동의의 처리기한

국가 행정기관은 신청에 대한 허가나 인

가 등을 하기에 필요한 표준적인 기간을 정해 공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지방세법 제250조의3). 과거의 선례를 볼 때 대개 3월로 되어 있다.

3) 신청의 절차

시정촌이 법정외보통세 또는 법정외목적세의 신설·변경을 하려고 할 때에는 협의서 정·부분 2통에 다음의 서류를 각1부씩 첨부하여 자치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유서

법정외보통세나 목적세의 신설·변경 이유를 기재한 것이며 특정한 양식은 없다.

② 신설·변경되는 법정외보통세·목적세 총괄표

신설 또는 변경해야 할 법정외보통세나 목적세의 세목, 징수방법, 과세객체,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세율, 수입예상액, 비과세사항, 징세비 예상액, 적용기간 등을 기재한 것이다.

③ 관계조례의 등본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④ 歲入歲出 豫算 現計表

당해 단체의 재정 구조 및 재정운영 상황 등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⑤ 세수입 견적 계산표

세수입에 대해 산정의 근거를 설명한 명세서를 말한다.

⑥ 법정외보통세·목적세 세수 예상액

당해 법정외보통세(목적세)의 매연도 별

과세표준액, 세율, 비과세 및 세수예상액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후를 구별하여 작성한다.

⑦ 기타 참고 서류

주민부담에 관한 설명 자료, 특별징수 방법에 따라 징수해야 할 법정외보통세나 목적세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에 대한 협력관계 등에 대해 설명한 자료 등이 고려된다.

자치대신과 협의를 하지 않거나 자치대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정외보통세나 법정외목적세를 신설·변경하여 과세한 경우 그 처분의 법적효과는 어떠한가.

이에 대하여는 법정외보통세 및 법정외목적세는 될 수 있는 한 주민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국가의 경제정책 등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세목의 설정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신설·변경에 있어서는 자치대신과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감안해 볼 때, 그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또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법령상 특별히 과세기간의 한정은 없지만 재정수요가 임시적이라는 것 등의 이유에 따라 과세 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어 5년간으로 한 자치단체가 많다. 개정 후 법정외보통세 및 목적세에 대하여도 세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치대신과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종래 시정촌 법정외보통세를 폐지할 때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폐지 보고서를 자치대신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그것은 다수의 자치단체가 법정외보통세를 채택하고 있던 시기에 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하였지만, 지금은 불과 4개 단체만 법정외보통세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보고 제도를 폐지하였다.

5. 결 어

현재 법정외보통세를 과세하고 있는 시정촌은 2000년 4월 1일 현재 4개 단체이고 내역을 보면, 砂利採取稅(山砂利採取稅 포함)를 과세하고 있는 단체가 3개 단체, 별장 등 소유세를 과세하고 있는 단체가 1개 단체로 되어 있다. 2000년도에는 京都府城陽市와 静岡縣熱海市가 사리채취세를 향후에도 계속 과세할 예정이지만 사리채취량의 감소나 재정수요가 필요한 사업이 종료함에 따라 과세를 종료하는 단체도 있다. 최근에는 千葉縣의 君津市 및 富津市가 2000년 3월 31일자로 산사리채취세를 폐지했다. 또 법정세목에서 담세력을 가진 과세객제를 거의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정외 세목을 신설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각지에서 자주재원을 모색하는 연구회 등이 구성되어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정촌 법정외보통세 및 법정외목적세의 신설을 검토하려는 움직임이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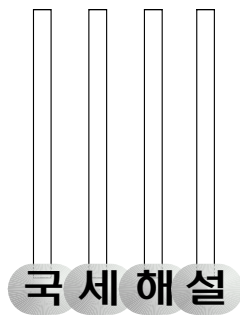
지방세제의 개혁에 따라 신설된 법정외목적세는 지역실정에 따라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시정촌법정외보통세현황(2000.4.1.현재)

세 목	시정촌명	허 가 년월일	기간	과세객체	과세 표준	세 율	납세 의무자	징수 방법	세수액(천엔)		신장율 (%)
									9년도	10년도	
사 리 채 취 세 등	神奈川縣井町	72. 4. 26	5년	사 리 의 채취	채취량	洗淨된 砂利 1m³ 30円 기타 1m³ 15円	채취 업자	신고 납부	15.873	15.823	△0.3
		77. 4. 15	"								
		82. 3. 31	"								
		87. 3. 31	"								
		92. 3. 31	"								
		97. 3. 24	"		"						
	" 山北町	82. 3. 25	"	사리 및 암 석 의		砂利 1m³ 15円 巖石 1m³ 10円	"	"	16.853	15.926	△5.5
		87. 3. 31	"								
		92. 3. 31	"	채취							
		97. 3. 24	"		"						
	京都府 城陽市	68. 11. 6	무	산사리의 채취		1m³ 40円	"	"	36.737	31.568	△14.1
		76. 5. 11	5년								
		81. 5. 26	"								
		86. 5. 31	"								
		91. 5. 31	"								
		96. 4. 15	"								
	<폐지단체> 板本縣 足利市	77. 2. 1	"	"		碎石 1m³ 30円 기타 1m³ 15円	"	"	1.220	0	皆減
		82. 1. 20	"								
		87. 3. 31	"								
		92. 3. 31	"		"						
	千葉縣 君津市	70. 3. 6	"	"		10m³당 砂利 1m³ 200円 洗砂 1m³ 150円 通砂 1m³ 135円 기타 1m³ 105円	"	"	51.481	41.591	△19.2
		75. 3. 11	"								
		80. 3. 28	"								
		85. 3. 30	"								
		90. 3. 30	"								
		95. 3. 23	"		"						
	" 富津市	70. 3. 6	"	"		砂利 1m³ 20円 砂 1m³ 20円	"	"	37.678	29.009	△23.0
		75. 3. 11	"								
	80. 3. 28	"									
	85. 3. 30	"									
	90. 3. 30	"									
	95. 3. 23	"									
	3단체								159.842	133.917	△16.2

- (주) 1. 市町村은 「山砂利採取税」로서 課税함
 2. 板本縣足利市の 山砂利採取税는 97.3.31.자로, 千葉縣의 君津市 및 富津市の 山砂利採取税는 2000.3.31.자로 폐지

세 목	시정촌명	허 가 년월일	기간	과세객체	과세 표준	세 율	납세 의무자	징수 방법	세수액(천엔)		신장율 (%)
									9년도	10년도	
별 장 보 유 세	静岡縣 熱海市	76. 2. 20	5년	별장등의 소유	별장등 의 바 닥면적	1㎡ 年 500円	소유자	보통 징수	414.926	411.678	△0.8
		80.12. 26	"								
		85.12. 26	"								
		91. 2. 12	"								
		96. 2. 28	"								
	1단체								414.926	411.678	△0.8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제도 해설

전 재 원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행정사무관

I. 머리말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양도등과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기타자산 등과 같은 특정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정책목적상 특별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①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②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기본공제의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로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 및 2000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납부시 유의점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II.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주주의 상장주식 등 양도,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기타자산(특정주식,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과다보

유법인의 주식, 영업권(사업용 고정자산 -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등(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Ⅲ. 양도의 개념

1. 사실상의 유상이전

양도소득세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양도라 함은 토지 등과 같은 과세대상인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간생략등기가 행하여지는 경우라도 중간양도자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2. 양도에서 제외되는 소유권의 이전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

나. 양도담보

양도담보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비전형담보를 의미한다.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양도담보권자로부터 토지 등의 소유권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모두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즉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당해 자산을 채

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 및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을 담고 있는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담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요건에 위배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채무자가 양도담보채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유상이전으로 가장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음에 제기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 ③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 ④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 ⑤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때
- ⑥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⑦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라. 공유지분의 분할

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도한다.

IV.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1세대 1주택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여 비과세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파산법 제187조 및 제192조의 규정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매각처분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교환 또는 분합으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 과세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 다.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위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i)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의 지역
- ii) '가'에 계기하는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그리고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 라. 농어촌정비법·농지법·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위에서의 농지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는 농지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 또는 소액부징수인 농지(농지세 과세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보리나 밀과 같은

농작물을 생산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그러나 다음에 계기하는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i)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사업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ii)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양도하고 이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 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위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i)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의 지역
- ii) ‘i)’에 계기하는 지역과 연결한 시·구·구안의 지역

그리고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이 경우 면적기준과 가액기준 중에서 어느 한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다.

4.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비과세 범위와 지원취지

1세대1주택(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에 대하여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와같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의 취지는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일반적인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1세대1주택이라 한다.

이 경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

①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경우

즉, 배우자가 없더라도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로 보며,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미만이라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 역시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는 뜻이다.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다.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즉 상속받은 하나의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양도시기 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던 것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 1주택에 한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① 피상속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② ‘①’의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③ 피상속인의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 ⑤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그리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으로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라. 대체취득 목적의 일시 2주택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취득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함으로써 소유하던 주택(종전주택) 양도 당시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되나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 ② 종전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을 충족할 것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군으로 퇴거하여 그곳에서 종전 주택 양도전에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에 해당하나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보유요건에 불구하고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대체취득할 목적으로 낡은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헐어버린 경우에는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전까지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중

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새로운 주택을 먼저 신축한 때에는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마. 효도 및 혼인주택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효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전래의 미풍양속 계승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부모와 자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자녀가 노부모와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1주택을 세대를 합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바. 문화재 주택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문화재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지정문화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 농어촌주택

1) 농어촌 주택의 특례인정 취지

상속·이농 및 귀농목적의 농어촌주택과 농어촌주택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농어촌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는 고향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도농간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도시자본이 농어촌에 유입되도록 하여 농어촌주택의 수요를 유지하고 농어촌주택의 정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2) 농어촌주택의 소재지역

상속·이농 및 귀농목적의 농어촌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인천을 포함한 경기 일원을 말한다. 따라서 서울·인천은 물론 이들 지역과 근접거리에 있는 경기도 전역이 농어촌 주택 비과세 특별적용 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3) 농어촌 주택의 요건

(1) 상속주택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한다. 또한 상속주택의 토지·건물에 대한 별도의 규모제한은 없다.

(2) 이농주택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또한 상속주택과 마찬가지로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농주택에 대한 규모의 제한은 없다.

(3) 귀농주택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300평 이상의 농지와 함께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소재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연고지 등에 300평 이상의 농지를 미리 취득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귀농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귀농주택의 소재

귀농주택은 귀농인(어업인을 포함한다)의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허가 및 면허어업자와 그들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또한 귀농인의 본적지 및 연고지는 본적지 및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지역을 말한다.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하는 자는 300평이상의 농지와 함께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이전에 선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귀농주택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지역(그 연접한 시·군·구지역을 포함 한다)에 소재하여야 한다. 또한, 영농목적의 귀농이므로 귀농이전에 농지 300평 이상은 먼저 취득해야 한다.

② 귀농주택의 규모

대지 면적이 200평 이내이면서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면제방법

귀농으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농어촌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④ 사후관리

귀농주택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로 기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등의 범위

1) 고급주택의 양도

다음에 제기하는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3년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 i) 주택의 연면적(겸용주택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는 주택외의 건물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 ii)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공동주택(다가구 주택을 포함하며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2) 정착된 면적이 일정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①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 5배
- ②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 10배

바. 겸용주택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V.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특례세율 적용

1. 주택대체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 양도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여 신축주택의 대체취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2000.9.1부터 2001.12.31기간중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양도시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대상주택은 1세대당 1주택 양도에 한정하고, 신규 취득주택은 주택건설업자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미분양주택 포함)으로서 선양도·후취득뿐 아니라 선취득·후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고급주택·미등기주택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개선

기존주택임대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은 99.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2호이상 임대시 양도세 감면)제도와 중복되고 신축주택을 통한 임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주택건설경기 진작에도 역행하므로 2001.1.1이후 양도시에는 2000.12.31까지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감면 적용시한을 조정하였다.

중전의 5호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 특별부가세 감면 제도를 살펴보면, ① 86년~2000년 기간중 신축 주택과 ② 85.12.31 이전 신축주택으로서 86.1.1 현재 미입주 공동주택의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고, ③ 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④ 매입임대주택은 95.1.1 이후 취득 · 임대 개시한 미입주주택 ⑤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VI.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부동산 ·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자가 당해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예정신고 기한내에 자진납부하면 세액의 10%(부동산등기전에 부동산양도신고자는 15%)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2000년 1월 1일 부터 2001년 12월 31일 기간중 부동산 ·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하고 동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양도신고 · 납부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이미 한 자, 관할세무서로부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였음을 이미 통지 받은 자는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10%가 추가로 부과되고 자진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5월3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마다 1만분의 5가 추가 부과된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는 신고납부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 · 납부하면 당해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세무간섭도 받지 않게 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

산서와 부표로 부동산 등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주식 양도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과세대상 자산별로 요건 해당시에만 첨부하는 것으로는 ①양도자산의 등기부등본 1통, ②토지대장 1통, ③건축물관리대장 1통, ④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설비비·개량비·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명세서 등 필요경비를 증빙하는 서류(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원칙인 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 분양권, 고급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필히 본 항의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⑤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의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거래내역서, ⑥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주주 등 신고서, ⑦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고서와 감면관련 증빙서류가 있다.

VII. 이번 확정신고시 유의하여야 할 내용

1. 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과세제도의 강화

1999년 귀속분까지는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3년간 1%이상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2000년 부터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과세대상이 되며,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비례세율(20%)을 적용하였으나 2000년 부터는 누진세율(20~40%)을 적용한다. 대주주의 범위로 종전에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 이상인 때에만 대주주에 해당되었으나, 2000년부터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3% 이상이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된다.

2.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으로 전환

종전에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가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였으나 2000년 부터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원칙으로 하였다.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확정신고 기한내로 조정

종전에는 세무관서에서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으나, 2000년부터는 그 기간을 확정신고기한까지로 조정하였다. 따라서 확정신고기한이 지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4.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의 상향조정

종전에는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미납한 기간(일수)에 적용(예, 미납기간이 1년이면 18.25%, 한도 없음)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5. 주민세를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

2001년 5월 1일 부터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양도소득세 신고서 서식에 함께 신고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첫 번째 시행을 하게 되었다. 다만, 주민세는 주민세 소득세할 납부서 서식에 의하여 납부한다.

그 동안 양도소득세에 10%를 부과하여 과세되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신고와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세자가 다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주고 무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등에 따른 민원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의 여예징구 파공정 전거별 우회
재정정보 시스템의 구축효과 사례

최 낙 민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세정기획담당

1. 서 론

지방자치제의 근간이 되는 자치재정의 확보는 각급 자치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는 자주재원의 확보노력과 더불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시책개발을 끊임없이 요구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 및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으로 경제거래에 있어 인터넷 및 신용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되는 등 새로운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세무서비스 요구는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와 사회적 불안 심리는 지방세에 대한 납세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의 지방세정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이와같은 시대적 요청과 사회적 변화,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지방세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정관련 비리소지의 사전방지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이 시책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전산화하여 일목요연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시청은 물론 부산지역의 모든 사업소와 자치구·군에서 이러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게 하므로써, 종전 부정확하고 복잡·다양한 세원관련 자료관리로 인해 발생되었던 비리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편리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징수를 통해 건전하고 공평한 지방세정 구현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여기에서는 부산광역시에서 지방세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 시행하고 있는 지방재정정보 시스템의 구축 활용에 대해서 소개 하고자 한다.

2. 재정정보 시스템의 개요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정정보 시스템은 부산광역시와 산하 사업소 및 16개 자치구·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업무와 예산편성, 집행, 결산 업무의 전 과정을 정보화하고 인허가·등록·신고 등 모든 민원 업무의 정보화 및 이와 관련된 면허세, 과태료, 수수료 등을 세입업무와 연계한 통합시스템을 의미한다.

부산광역시에서는 98.12월부터 99.5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 총 사업비 2,652백만원(시비 1,547 + 구비 1,105)을 투입하여 현대 정보기술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과업의 주요내용은 주전산기 17대를 설치·보강(시 1, 구·군 16)하여 시와 자치구·군간 온라인 종합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추진경위>

- ◆계약체결 및 주전산기 설치: '98. 12. 7~12. 31
- ◆지방세 등 전산자료 변환: '99. 4. 3~ 4. 5
- ◆구축완료 및 안정화: '99. 5. 6~

3. 재정정보 시스템의 구축 내용

부산광역시에서 구축 활용하고 있는 재정정보시스템은 지방세, 세외수입, 예산회계, 인허가시스템 등 4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스템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세 시스템

-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전 세목을 부과에서 수납, 체납관리 등 모든 과정을 전산처리
- 지방세 제증명·독촉장 등을 지역에 관계없이 시·지역내 구·군 어디서든지 발급가능
-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체납처분 관련 업무의 연계처리로 체납업무의 효율성 제고
- 시금고와 전산망 연계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관련 수납자료를 당해 구·군에 자동전송, 일괄 자동소인, 징수부출력, 재산조회 기능 제공으로 체납세 압류업무의 효율화 도모
-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및 인허가 부서의 면허세 자료를 당해 구·군에 실시간 전송처리 하므로써 시스템과 연계하여 과세자료의 자동 수집
- 취득세, 등록세 전산자료를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료와 연계하여 세목별 자료공유로 정확한 자료입력과 이중입력에 따른 인력절감
- 주전산기 장애시에도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신고납부사항을 Non-Stop으로 처리

나. 세외수입 시스템

- 기존 수작업으로 발급하던 과태료 등 세외수입 고지서를 통합 OCR 고지서로

- 일괄 전환하여 대민 신뢰도 향상
- 인허가관련 과태료, 과징금 등을 세외수입 세원자료로 자동 전송하므로써 자료의 공유와 이중입력 배제
- 세외수입업무와 관련된 책임보험, 정화조관리, 옥외광고물관리 등 13종의 업무를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 시산하 기관의 부과, 징수현황 등 모든 세입자료를 실시 기관간 통계, 조회 등 종합 관리하도록 구축
- 시금고의 세외수입 수납자료를 자동 전송받아 일괄 자동소인, 현계관리 등 자료의 효율적 사용 및 안정적 관리

다. 예산회계 시스템

- 지방세, 세외수입 시스템에 일일 수납내역의 자동 전송으로 기관별 자금흐름

을 일목요연하게 파악 가능

- 결산작업의 자동 전산처리, 자금이동과 금액의 한도 체크 등 합리적인 자원배분 및 투자사업의 계획을 정확하게 예측가능
- PC 프로그램으로 예산 편성분야만 전산처리 하였으나,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배정, 집행, 결산까지 전 자료가 연계된 자동처리로 부서별 자료의 이중입력 방지

라. 인·허가 시스템

- 기존 수작업 인허가/등록/신고업무를 전산화하여 유기한/즉결 등 민원사무 접수에서 실태조사 및 허가증 발급까지 전 과정을 자동처리
-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면허세, 과태료 등 세원자료를 지방세, 세외수입 시

<재정정보 시스템 구축 전·후 내용 비교>

구 축 전	구 축 후
○ 부분별 개별 전산화 • 구·군별 PC, 주전산기기 단위 • 업무의 부분 전산화 • 자료의 이중입력	○ 종합적 통합망 구축 • 시·구·군 주전산기기 연결 • 업무 전반에 걸친 전산화 • 과세자료 관련 시스템 연결 및 업무연계·통합 (자동차망 + 재정정보 + 민원정보시스템등) • 자료공동 활용 (자동차 연납자료 구·군 공동활용 가능 등) • 납세자 최신주소 구축
○ 지방세 제증명 수기발급 • 제증명, 독촉고지서 당해 구·군 수기발급	○ 지방세 관련민원의 통합발급 • 제증명,독촉고지서를 지역에 관계없이 발급 • 시역내 전체 재산조회 • 채납사항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하여 과세기관에서의 이중입력 배제와 실시 기관간 자료를 공유토록 구축

- 민원접수 단말기에서 지역내 체납여부 조회와 독촉고지서 발급, 체납세 납부 독려기능의 제공

4. 재정정보 시스템의 운영효과

① 지방세정관련 부패소지의 사전적 차단

지방세관련 주요 부패유형은 지방세 과세 누락과 비과세·감면처리 및 체납세 징수와 관련하여 현금징수 등이 주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본 시스템의 구축으로 취득세·종합토지세 등 전 세목에 있어서 부과에서 수납, 체납관리 등 모든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전산처리되어 압류,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체납업무의 연계처리로 세정의 과학화와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부과 및 징수과정에서 과세자료누락 또는 횡령 등의 의혹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세정관련 비리 발생의 사전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 2000. 3월과 12월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법원배당금 업무처리실태 일제점검에서

한건의 부당사례도 발견되지 않았음

- 2000. 3.30 ~ 4.12 : 6,353건 15,369백만원
- 2000.12.26 ~ 12.27 : 3,610건 6,051백만원

② 체납세의 획기적 감소

본 시스템의 구축으로 과세자료 및 체납자관리가 전산화됨에 따라 예금 및 급여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본 시스템 설치운영 이후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던 체납세 이월액이 2년 연속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본 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세 징수사례를 살펴보면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 '99. 9월에는 시 전체 체납자 409천명에 대한 전산 화일을 구축,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3개 공단에 직장을 조회
- 직장이 확인된 체납자 6만 2,615명(체납액 206)억원)에 대한 자진납부 독려 및 급여압류를 실시, 체납액 133억원 징수

<자영업자 관허사업 제한>

- 2000. 3월에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와 체납자료를 연계검색하여
- 지방세 체납자 78,919명(체납액 70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부산시의 체납세 이월액 추세>

(단위 : 억원)

구 분	96회계	97회계	98회계	99회계	2000회계
이월액	1,403	1,734	2,453	2,303	2,076
증감율	증 14.9%	증 23.6%	증 41.5%	감 6.1%	감 9.9%

71,019명(채납액 229억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 예고 실시 등으로 채납액 159억원 징수

<채납자 금융자산 조회 및 예금압류>

- 2000. 12월에는 지방세 채납자 419천명에 대한 채납자료와 신용카드사의 금융거래자료와 연계하여
- 금융거래가 확인된 15만 6천명중 채납액 10만원이상 채납자 5만5,563명의 예금잔액을 조회, 예금잔액이 확인된 채납자 6,129명의 예금 49억원 압류하여 채납액 30억원 징수

③ 납세자 편의위주의 봉사하는 세정 구현

지방세관련 제증명, 독촉고지서 등을 지역 내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발급 가능하게 됨에 따라 유기한민원과 즉결민원 등의 신속처리로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취득

세, 등록세, 주민세 등의 Non-Stop 민원서비스 제공과 최신 주소구축 기능으로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의 신속하고 정확한 송달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납세자의 착오로 인하여 이중 납부시 이를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환급통지서의 자동출력으로 조기에 민원에게 송달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기여하였다.

④ 세입·세출분야 광역권 통합으로 과학적인 재정관리

차량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전산자료와 시금고 수납자료를 당해 자치구·군 자동전송 및 전산소인으로 신속·정확한 세입통계로 과학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하였고 압류,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영치 등 채납처분 전 과정의 연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시켰다.

<유형별 시스템 연계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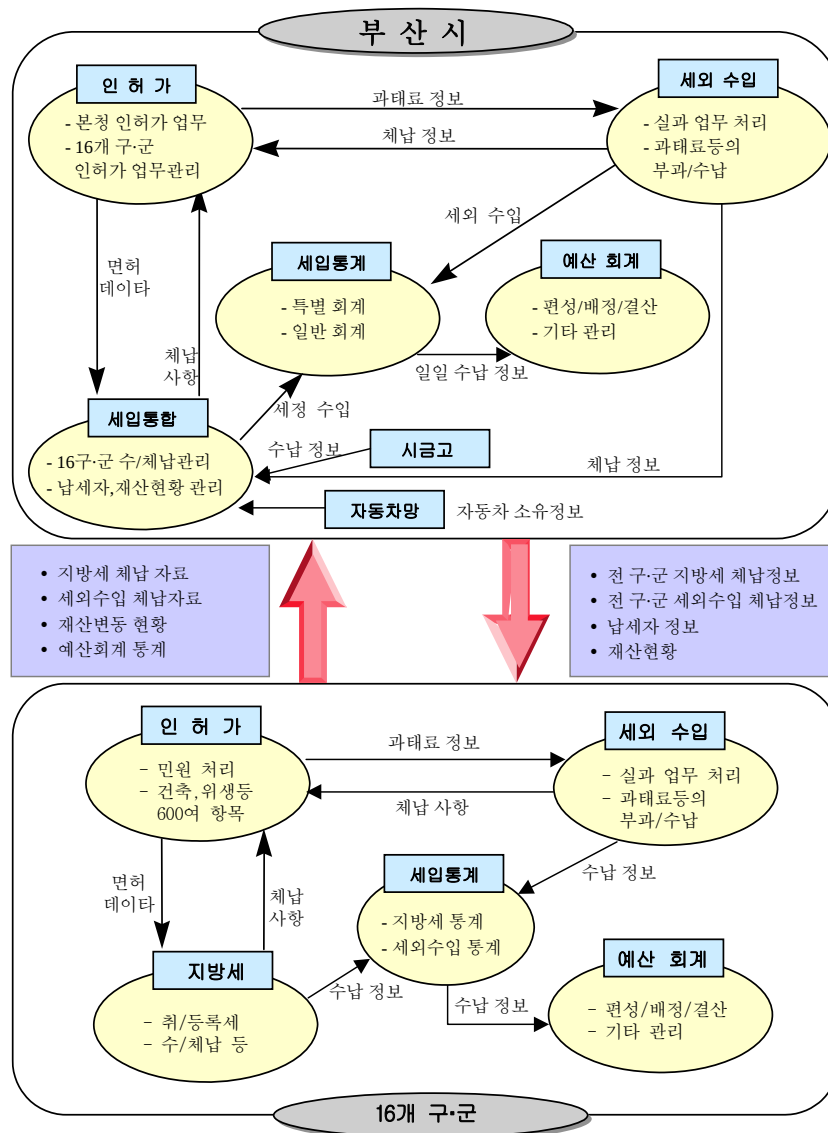
구 분	세 부 내 용
계	11
○ 인허가관련 면허세 자납분 부과 ○ 인허가와 세외수입 연계 ○ 지역내 전 채납자료 조회 ○ 통합OCR 연계 소인처리 ○ 주민전산망 부과자료 연계 ○ 차량 취/등록 자료 ○ 자동차세 연·분납처리 ○ 재산현황 조회 ○ 지방세 차량자료 자동 압류처리 ○ 차량 취/등록세 자동차망 자료대사 ○ 자동차세 수신분 자동차망 연계	○ 면허부서에서 면허세 고지서 출력 ○ 과태료·과징금을 세외수입 자료로 전송 ○ 구·군의 채납현황 파악 용이 ○ 시금고 수납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 ○ 주민망을 주민세균등할자료로 활용 ○ 차량 취/등록자료 구·군에 자동전송 ○ 16개 구·군 연분납자료 공동활용 ○ 지역내 재산현황 조회 ○ 자동차망 연계 일괄 압류설정·해제 ○ 차량 취/등록세 오류부과 및 누락자료방지 ○ 자동차세 변동자료의 입력 불필요

자료연계, 공동활용 등 이중입력방지와 자료의 무결성 확보로 행정능률을 극대화하

⑤ 전자시정 구현과 행정능률 극대화 도모
PC, 주전산기를 통한 업무의 통합관리로

고 지방세 인터넷납부, 신용카드납부 등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방세 납부에 따른 납

세입민원행정종합시스템 구성도



세자 편의 제공 및 전자시정 구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5. 결 론

지방자치의 본격화에 발 맞추어 지방세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시와 제도의 개선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즉 투명하고 정직한 지방세정의 정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에서는 지난 98년부터 지방세정의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고 이를 통합관리하는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 왔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416만 건에 이르는 재산세, 면허세 등의 정기분 세목에 관한 모든 세정정보를 전산화하여 이를 토대로 체납세의 체계적인 관리 자치구·군과의 세정정보 교류 등 지방세정분야의 능률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지방세정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책은 시민의 납세편의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시책의 추진에 개선·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다.

전산화를 통해 모든 세정관련 자료가 광역적으로 활용되고 처리되는데 비해 지방세 제증명, 독촉고지서 등은 자치구·군내에서만 발급되도록 되어 있어 전산화가 100%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구축된 재정정보시스템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망(부동산 등기, 자동차, 금융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의 교류가 확대 되어야 할 것이며,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UIS와의 연계를 통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세원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관리 전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리자 및 경영진에게 재정정책정보 및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여 재정수지에 대한 분석, 평가,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세정의 정보화를 통한 세정의 능률성과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시책들을 많이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금년 7월1일부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개발 운용되는 세정관련 시스템의 통합적인 연계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증가될 지방세정의 정보화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

고 보다 한단계 발전된 세정을 수행하려면
이와같은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세 동태정착을 위한 「지방세사전」 발간 · 배부

이 병 근

경산시청 세무과 부과담당

경북 경산시는 어려운 세무 용어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정리한 지방세 사전을 지역 주민과 세무 공무원에게 전국 최초로 발간·배부하였다.

지방세 사전의 발간 동기 및 목적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과 재정 자립을 위해서는 지방세의 비중이 매우 크며 이런 때일수록 납세자의 이해와 협조 속에 지방세정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여 세

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세정 추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세무과(과장 김태웅) 직원들이 2000년 1월부터 1년 2개월간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지방세 사전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지방세 사전을 발간함에 있어 지방세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갖고 추진토록 한 김찬진 전임과장의 노고와 격려에 용기를 갖고 세무과 전 직원이 불철주야 혼연일체가 되어 총 320쪽에 1,700여개의 지방세 용어 사전을 발간하게 되었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부록 등 수록

주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에 나오는 용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에 나오는 용어를 비롯 세목별 해설, 세목별 부과징수에 대한 용어가 알기 쉽게 수록되었으며 부록으로 기업회계기준, 영한회계용어, 혼

돈하기 쉬운 법령용어, 두 가지 음 이상의 한자, 발음이 틀리기 쉬운 한자 등을 수록하였다.

500부 발간, 리·통장, 시의원, 세무공무원등 배부

배부내역은 관내 리·통장, 시의원, 실과소, 읍면동 및 세무공무원들의 연찬교재로 활용토록 1차 500부를 인쇄·배부하였으나 관내 지방세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민과 각급 학교 및 관외 일간지등 소문을 듣고 각처에서 주문이 많아 추가 인쇄 배부할 계획이다.

자진납세 풍토 정착을 기대

이처럼 지방세 사전을 발간·배부함으로써 대다수 주민들이 고지서만 받고 막연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적을 것이며 세금은 조세 법률주의에 의한 누구나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세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점과 세법상의 용어를 이해함으로 재정수요에 따른 국민의 정당한 조세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할 것을 기대하고 자진납세 풍토 조성이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아무쪼록 지방세 사전이 납세자에게는 생활에 유익한 참고가 되고 세무 공무원에게는 올바른 이해와 습득으로 지방세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사료되며 잘못된 용어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세 관련용어 해설

◆連帶無限責任(연대무한책임)

數人이 연대하여 각자가 전재산을 가지고 債務의 全額을 辨濟할 責任을 부담하는 것인데 이는 각 채무자의 전 재산이 강제집행의 對象이 될 수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채무는 무한책임이 원칙이므로 연대채무는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법상의 연대납세의무도 이 원칙에 의거 納稅義務를 진다.

<지방세정 스크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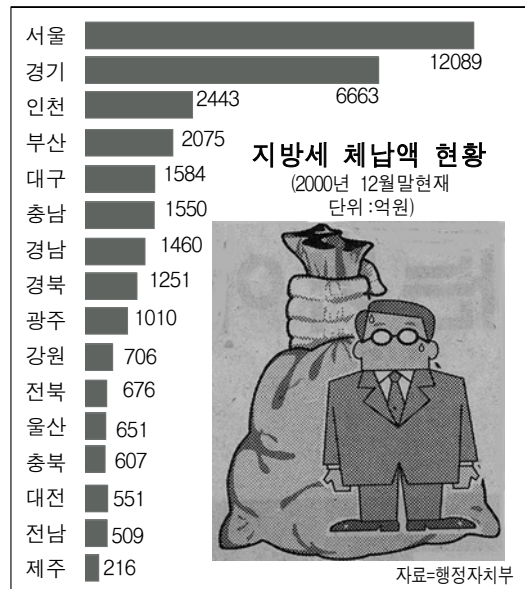
지자체마다 '채납세금과의 전쟁'

지방자치단체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세 채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96년 1년간 지방세 채납액은 6644억원, 채납률은 3.7%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나 98년에는 외환위기의 여파로 채납액이 1조 1919억원으로 급증, 채납률이 6.6%에 이르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99년에 경기도 다소 나아지면서 채납률이 5.1%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4.8%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채납액은 계속 늘어 전국 248개 지자체의 지방세 채납누적액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사상 최대액인 3조404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부동산 경기하락과 소비위축등으로 경기전망이 불투명해 지방세 세수전망은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지방세 채납은 가뜰이나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지자체의 세수감소와 재정악화로 이어져 민선시대 지방자치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납세자간에 형평성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전국의 지자체들은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악화를 막기위해 성실납부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고액채납자는 출국금지시키기로 하는 등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 '채납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채납액 사상최대규모=지방세 채납총액 3조4047억원은 지자체의 올해 총예산 64조4892억원의 5.3%수준이다. 서울시의 채납액이 1조2089억원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경기도 6663억원, 인천

시 2443억원, 부산시 2075억원, 대구시 1584억원, 충남 1550억원등의 순으로 채납액이 많다. 채납지방세를 17개 항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전체의 46%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자동차세가 31%이다.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등도 채납액이 점차 늘고 있다.

◆상습·고액채납자가 문제=지난해 6월 기준으로 지방세 채납액 가운데 1000만원 이상 채납자는 2만4529명에 이른다. 또 5000만원 이상 채납돼 출국금지 대상이 된 사람도 4873명이나 됐다. 고액 장기채납자의 상당수가 지방세 채납시 부담하는 가산금에 물리는 대출이자 낮은 맹점을 악용, 상습적으로 채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지방세법은 30만원 이상의 세금이 채납되면 첫달에 채납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고 다음달부터 매달 채납세의 1.2%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5년동안 부담하



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는 체납된지 5년이
상되면 결손처리대상이 된다.

◆체납률 1%포인트 낮추기=행자부는
올해 체납률을 5%에서 4%로 낮추는 ‘체납
률 1%포인트 낮추기’운동을 강력히 추진하
고 있다. 이에따라 지자체들은 체납세 징수
를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16일부터 “체납지방세를 하
루에 1억원씩 갚자”며 체납액 100억원을
줄이기 위한 100일 작전을 펼치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는 상습체납자는 형사고발하
고 5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출장징수팀을 파견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오는 6월분 정기분 재산
세와 자동차세를 현금자동입지급기와 폰뱅
킹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
수영구청은 체납 자영업자를 상대로 불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원도 횡성군은 체
납자납부 안부전화하기 캠페인을 벌이는등
체납자달래기 작전을 펴고 있다.

◆세계 나가면 잘 걷힌다=충남 천안시
는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28대의 휴
대용 단말기를 구입해 즉석에서 세금납부
여부를 조회, 체납사실이 드러나면 인정사
정 볼 것 없이 번호판을 떼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더 큰 처벌
을 받는 사실을 알게되면 대부분의 차량소
유주들이 부랴부랴 체납세금을 내고 번호
판을 찾아간다”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하면 90%정도는 2~3일 안으로 체납액을
갓고 와 번호판을 찾아간다”고 말했다.

◆부작용도 우려=지자체들이 체납지방

세를 쥐어짜면서 개인간 형평성과 개인정
보 유출등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
다. 부산시는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은행
예금계좌를 조회하는 방식과 함께 체납자
들의 신용카드와 연계된 은행계좌를 조회,
잔액에 대한 압류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최
모(37·해운대구 반송동)씨는 최근 자신의
신용카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방적
으로 사용정지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항의한 끝에 지방세 체납으로 카드사용정
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대답을 들었다. 최씨
는 97년분 자동차세 10만8000원이 체납된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에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불량자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화일보, 2001.4.25(수)]

취득·등록세 내년 두배 올라

- 지방세 과세표준 현실화, 시가 70~80% 반영키로 -

정부는 아파트등 일반주택과 상업용 건
물 등에 부과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
세의 과세표준을 현행보다 2배 가량 올리
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시가표준액이 시가의
30~40%밖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시가
의 70~80%를 반영하는 공시건물가격제를
도입키로 하고 최근 한국감정원에 연구용
역을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자부는 오는 9월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강한 뒤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공시건물

가격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공시건물가 격제도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공용시설세, 도시계획세 등 17개지방세에 적용될 예정인데 과세표준이 현행보다 2배 가량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제도가 채택되면 국민의 세부담도 따라 올라가게 된다.

행자부는 그러나 당장 높은 세부담을 안길 경우 국민의 반발이 크게 때문에 편법적인 탈세가 빈발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에 먼저 적용하고 나머지 세목에는 적용비율을 조정, 납세금액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문화일보, 2001.3.27(화)]

내년부터 稅外수입 대폭 늘린다.

- 국가시험 응시료등 수수료·고속도 통행료 인상 -

정부는 내년부터 각종 국가시험을 응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보다 현실화하는 등 세외(稅外)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9일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정된 재원인 세금만으로는 늘어나는 각종 투자를 충당하는 게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혜택을 보는 계층이 요금과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부담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원칙론과도 맞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각 부처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소관부처와 산하 정부출연기관 등의 세외수입과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각 부처는 다음달 말까지 내년 예산안을 예산처에

내도록 돼 있다.

예산처는 각 부처 등에 대해 보유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및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 및 수수료 현실화 방안, 수수료 현실화 방안 등을 검토토록 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는 수도요금 현실화, 국가시험 응시료, 고속도로 통행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료 현실화등이 꼽힌다. 또 운동장 등 학교시설 개방수입 확충, 국립대학 납입금 현실화, 철도역 광장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해 수입을 늘리는 방안, 문을 닫는 학교를 매각하거나 임대해 수입을 늘리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우편요금과 철도요금, 운전면허 시험료, 국가기술 자격검정 수수료, 공원 입장료, 휴양림 사용료, 국가고시 응시료 등은 최근 3년간 거의 인상된 게 없거나 물가상승률을 밑돌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국민 부담 가중이라는 측면을 내세워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내년에는 올해보다 공적자금 추가 투입에 따른 이자·농어촌 부채탕감·공무원 처우개선·중학교 무상(無償)교육 등으로 필수적으로 늘어나는 규모만 14조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올해 경기가 불투명한 데다 2003년에 균형재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가면서 세입예산을 대폭 늘릴 수도 없어 세외수입 적극 증대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대한매일, 2001.4.10(화)]

'톡톡 튀는 행정서비스' 전국 확산

- 지방세 인터넷 납부, 농번기 민원서류 배달 -

□ 행자부, 지자체 우수 사례 9건 선정...벤치마킹 권고

앞으로는 주민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농번기에 일손을 놓을 수 없는 농민들에게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년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한 '국민생활 불편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발굴,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들 모범사례를 다른 지자체들이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자치단체의 민원행정이 대폭 개선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행자부가 선정한 사례의 면면을 살펴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소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주민의 호응은 물론, 재정 절감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본 것들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부산시의 '지방세 인터넷납부서비스'이다.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모든 지방세 부과내역을 조회, 자신의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실시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이 행정기관을 찾는 불편을 없앴다. 또 고지서 송달비 등 연간 40억원 가량의 비용을 줄이는 큰 효과를 거뒀다.

부산 연제구는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 스티커에 납부고지서를 같이 인쇄, 발부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고지 제도'를 시행했다. 위반차량 적발시 즉석에서 고지서를 발부해 자진납부율을 15배이상 높이고, 고지서 송달비, 인건비 등 연간 2,000여만원의 예산을 절약했다.

또 경남도는 농번기에 공무원이 농사현장을 직접 방문,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서류 신청을 받아 발급하고 이를 직접 배달해 주는 '농번기 제증명민원배달제'를 운영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 직접 행정기관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행자부는 이밖에도 ▲농기계 도로운행시 교통사고위험 해소(인천 옹진군) ▲실업자 취업박람회 개최(광주 광산구) ▲장제비·분만비 신청 서비스(경기 용인시) ▲장례지원반 운영(충북 제천시) ▲치매노인 신원확인용 팔찌 보급(전남 목포시) ▲불우계층을 위한 빨래방 운영(경북 봉화군) 등을 우수사례로 선정, 확산시키도록 했다.

[대한매일, 2001.3.15(목)]

중과세 대상서 제외키로

- 구조조정 위해 설립한 별도법인, 이르면 이달말 시행 -

기업이 경영합리화나 구조조정을 위해 설립한 별도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 방침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등 수도권과 밀역제권역 안에 법인을 새로 신설할 경우 일반세율의 3배에 달하는 중과세를 부과했으나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법인은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하고 종전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10명인 위원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이들중 7명 이상만 참가하면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공포돼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매일, 2001.3.16(금)]

담배 - 종토세 교환 추진

서울시가 자치구 사이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와 구세(區稅)인 종합토지세의 세목(稅目) 교환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 행정관리국은 22일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16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행정자치부 및 민주당과 긴밀히 협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의 교환을 위해 지난 2월 행자부에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민주당 성루시지부에 공식 협조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자치구에 사업비나 특별교부금을 줄 때 금천, 도봉구 등 재정이 빈약한 자치구를 배려하지만 종토세 세수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 강남구 등 이른바 ‘부자구’와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왔다.

시에 따르면 종토세 세수규모는 자치구별로 최대 12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담배소비세는 3배 정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종토세는 최고인 강남구가 809억원인 반면 최저 도봉구는 66억원에 불과하다. 담배소비세는 강남과 도봉구가 각각 393억원, 127억원으로 격차가 3배 정도에 불과하다.

세목교환이 이뤄지면 강남구 392억원 등 중구, 서초, 송파등 ‘잘사는 구’ 1~4위까지의 자체재원이 지금보다 653억원이 줄어드는 반면, 관악구 145억원 등 나머지 21개구는 구마다 평균 92억원씩 자체재원이 늘어나 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매일, 2001.4.23(월)]

지방세 고지서에 바코드 도입

- 중랑구 6월부터...체납액 줄 듯 -

서울 중랑구는 오는 6월부터 각종 지방세 고지서에 상품을 효율적으로 분류,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 운용하기로 했다.

올들어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하는데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송달처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덜고
체납액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다.

지금껏 모든 자치단체들이 세금 수납절
차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지방세 송
달업무에 바코드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
음이다.

중랑구는 이에 따라 다음달까지 바코드
관리시스템을 개발, 시험과정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적용,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중랑
구는 바코드 도입에 따른 업무혼란을 없애
기 위해 사전에 세금고지서의 크기와 과세
번호 등을 일괄 정비하고 담당자들을 대상
으로 한 전문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납세자의 주소와 우편번
호 등 개인기록을 바코드 형태로 전산 입
력, 지방세 송달업무에 투입됐던 인력중
3~4명을 줄일 수 있어 연간 3,000~5,000
만원 가량의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
을 전망이다.

중랑구 관계자는 “중랑구의 경우 지난해
연간 215만여건의 각종 세금고지서를 송달
했으나 이중 16%에 이르는 35만여건이 반
송되는 등 고지서 송달에 막대한 인력과
노력을 투입하고도 큰 효과를 얻지 못했
다”며 “바코드제 도입으로 고지서 송달업
무가 개선돼 체납규모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매일, 2001.3.31(토)]

주차관리도 인터넷으로 '척척'

- 금천구 주차구역 신청·요금납부등에 도입 -

‘이젠 주차관리도 인터넷으로 합니다.’

서울시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실시를
추진중인 가운데 서울 금천구가 전국 자치
단체중 처음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포함
한 주차관리 인터넷서비스를 실시, 큰 효과
를 거두고 있다.

금천구와 파이소프트웨어가 개발한 ‘주차
관리 통합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신청 및 추첨·배정은 물론
주차권 배송 및 요금납부까지 할 수 있으
며 불법주차 단속 증빙사진, 무단방치차량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새 시스템에는 지형의 크기를 자유
자재로 축소·확대할 수 있는 ‘백터지리정
보’를 채택, 주차구역과 같은 작은 장소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배정받으려면 구 홈페이지(www.kumchon.seoul.kr)나
파이소프트웨어(www.park119.com)에 접속, 주차구획 신청 가능여부를
파악한뒤 신청하면 된다. 신청후 전자추첨
을 거쳐 주차구역을 배정받으면 그 결과를
인터넷상에서 확인하고, 대금은 인터넷결제
나 무통장입금을 통해 내면 된다. 주차권은
구청에서 우송 또는 직접 교부한다.

[대한매일, 2001.3.31(토)]

지자체 부패추방 토론회

대통령 자문기구인 반부패특별위원회는
12일 부산광역시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세
무관련 전문가, 학자, 시민단체 등 3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추

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김대영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세제·세정의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데 이어, 전진 부산광역시 부시장, 김태환 제주시장의 부패방지 사례발표,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김대영 박사는 “지방세 부문이 아직도 복잡한 관련 법규, 세부규정 미비, 광범위한 공무원 재량권 등으로 부패발생 소지가 있다”면서 “부패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지방세제 정비와 세정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선해야 할 내용으로는 ▲취득·등록세 신고납부의 투명성 제고 ▲지방세 감면관련세부규정 정비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성공사례=전진 부산광역시 부시장은 “지방세정의 부패방지를 위해 부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업무와 예산편성·집행·결산업무의 전 과정 및 인허가·등록·신고, 관련 수수료 등 민원업무를 정보화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납부로 징세비용 절감과 납세편의 등의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김태환 제주시장도 지방세의 전자고지시스템 및 납부제 운영으로 부패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입찰시 공무원과 업체간에 뇌물을 받지 않고 위반시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제 운영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의계약 선정시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대해 전국 최초로 전산추첨제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특정사업자

의 계약편중을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대한매일, 2001.4.13(금)]

체납고지서 통합발송, 성동구 **年1억비용 절감**

성동구가 지방세 체납고지를 세목별에서 체납자별 통합발송 방식으로 바꾸어 막대한 경비를 절감하고 있다.

성동구는 현재 납세자별 통합으로 전환시킨 방식에 따라 올해 1차분 체납고지서를 발송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세목별로 여러 장 발송되던 체납 고지서가 한 봉투로 한꺼번에 전달되게 된 것. 이에따라 1차분의 경우 12만통인 세목별 체납고지가 2만5,000여통으로 줄어드는 등 연간 1억원가량의 발송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성동구는 납세자별 통합 발송을 위해 정부출자법인인 전자우편처리센터에 용역을 주어 ‘아웃소싱 방식’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세무1과 유정섭(兪正燮) 계장은 “전엔 체납고지서 발송에 1억2,600여만원이 들었으나 통합발송으로 2,600만원만 용역업체에 지불하면 되는 등 예산을 78%나 줄였으며 발송인력도 줄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앞으로 절감되는 인력을 활용해 상습·고액 체납자의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한매일, 2001.4.26(목)]

수원시 세금채납자 예금압류

- BC카드와 연계 추진 -

부산과 인천에 이어 수원시도 세금 채납자의 예금 압류에 나선다.

수원시는 채납액 최소화를 위해 5만원 이상의 지방세 채납자 가운데 BC카드 회원일 경우 결제계좌의 예금을 조회해 잔액을 압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현재 7만9,000여명의 지방세 채납자 인적사항을 BC카드 수원지점에 보내

회원 여부와 결제계좌 개설 은행을 확인하고 있다.

시는 BC카드로부터 회원 여부를 통보받은 뒤 이달 안에 결제계좌가 개설된 각 은행에 잔액을 조회, 채납액을 압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채납세 계좌 압류행위가 금융실명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3월 말 현재 수원시의 지방세 채납자는 모두 7만4,760명으로 채납액은 400억7,8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한국일보, 2001.4.18(수)]

지방세 관련용어 해설

◆營造物(영조물)

國家, 公共團體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者에 의하여 公共의 목적에 사용되는 人的·物的施設의 統一體를 말하는 것으로 營造物은 人과 物을 구성요소로 하여 성립된 종합적 통일체이므로 公共의 목적에 公用되는 설비 일지라도 人的要素와 物的要素 중 어느 하나를 缺하거나 그것이 貧弱하면 營造物이라고 하기 곤란한 것으로 河川, 道路 등은 人的要素가 貧弱하므로 이는 公物(公共用物)에 불과한 것과 같이 營造物은 公共營造物이라고도 하며 보통 公共施設이라고도 한다.

營造物에는 公用營造物과 公共用營造物이 있는데 公用營造物은 行政擔當者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矯導所, 少年院, 試驗場 등의 營造物을 말하고 公共用營造物은 일반公衆의 이용에 提供되는 郵便, 鐵道, 公益典當舖, 電話, 水道, 孤兒院, 學敎, 博物館, 圖書館 등의 營造物이 있다.

主要 法律의 最近 制定・改正內容 要旨

법률명	구분	제・개정 내용 요지
○ 경비업법	개정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민간인신분의 청원경찰 등에게 무기 소지 허용
○ 공인회계사법	"	공인회계사의 결격요건을 금융기관의 임원에 준하도록 강화함
○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	"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규정을 2006.12.31까지 유예
○ 농어업재해대책법	"	재해지원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을 추가
○ 담배사업법	"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독점제를 폐지, 담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금 5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 하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30%이상을 일반 공모하도록 하며, 부동산 투자회사 주주는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배제하며 부동산투자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하도록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	사업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합병·분할할 수 있도록 함
○ 사료관리법	"	광우병 발생등이 우려되는 동물의 부산물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 사법시행법	제정	법학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취득한 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 제한
○ 상호신용금고법	개정	주주 1명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10%이상을 취득할 경우 금융감독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 선원법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이상 1년미만 선원이 아무 잘못이 없는 데도 해고될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 소비자보호법	"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제품의 결함을 알게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법률명	구분	제·개정 내용 요지
○ 수도법	개정	숙박업소·목욕탕·골프장에도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함
○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 관한법	"	신용정보업자가 채권추심으로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채무자를 자주 방문하거나 연락행위를 금지함
○ 약관의규제에관한법	"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아 다수 고객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발동하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여신전문금융회사에 1인 이상의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의무화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	"	행정기관이 전자거래를 할 때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증권거래법	"	증권시장 거래가 끝난 뒤에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
○ 청원경찰법	"	청원경찰의 단체행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 3권을 규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 초·중등교육법	"	국내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 또는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한국계 혼혈아, 외국계로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지자, 외국에서 장기(5년) 거주하다 일시 귀국한 교포자녀)으로 제한함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	"	개인 과외교습을 할 경우 시·도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제외함. 개인 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현직 교사가 과외교습을 한 경우에는 1년이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호적법	"	‘미수복 지구’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용어변경
○ 학원인정등에관한법	"	사내 대학등 평생교육시설 또는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전수자로부터 받은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	"	종전에는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보관하는 사람은 자신이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나 이 책임을 면제하며,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를 회계관계직원이 거부했음에도 상급자가 다시 지시한 경우 상급자가 회계관계직원과의 연대책임이 아닌 단독 책임을 지도록 함
○ 회사정리법	"	회사부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사 정리절차 개시 신청과 동시에 정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채권자간에 우선변제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정리계획안에 반영토록 함

중원문화(中原文化) 향기를 찾아서

강 욱
자유기고가

충주(忠州)는 길의 고장이다. 남한강 물길이 여기를 지나고 계림령 길이나 새재길, 또한 멀리는 죽령 길 등 소백산맥을 넘는 고갯길들이 이곳으로 다 이어진다. 따라서 충주는 한반도의 중심지로서만이 아니라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고리역할을 함으로써 항상 남북세력이 다투어 쟁탈을 피하였던 요충지 였다.

충주는 그 지명이 갖고 있는 ‘중심(中心)’의 뜻과 함께 고구려시대의 국원성(國原城), 통일신라시대의 중원경(中原京),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충주목(忠州牧)이 설치되고 국원경(國原京)이라 불리며 찬란한 중원문화의 꽃을 피워 온 역사의 고장이다.

중원문화(中原文化)라 함은 선사·삼국·통일신라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중심부에 위치해 남한강의 중상류와 금강의 상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꽃피운 문화를 가리킨다. 이 문화권은

충청북도의 대부분과 경기·강원·경북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그 중심지는 역시 충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충주는 고구려의 문화가 이곳을 통해서 남하하였고, 불교와 유교문화가 전달되는 통로였는가 하면, 또한 남방의 문화도 이 지역을 통해서 북으로 전달되어 일찍부터 남북간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져 삼국의 문화가 고르게 접목된 독특하면서도 찬란한 중원문화의 맥을 면면히 이어왔다.

중원지방은 이 고장 사람들의 온순하고 부드러운 인심과 함께 역사와 문화의 발자취라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도처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이곳은 말 그대로 발길 닿는 곳마다 문화재와 접할 수 있는 문화재의 보고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곳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은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와 중앙탑(中央塔)이다.

중원 고구려비는 남한강가인 가금면 용전리 입석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돌기둥 하나가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돌을 대장간집 기둥으로 쓰기도 하고, 돌에다 백설기를 바치며 아들 낳기를 빌기도 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마을 수호석이라고만 믿었고 두텁게이끼 사이로 글자 같은 것이 보였으나 마을사람들은 읽어낼 수가 없었다.

그 후 1979년 충주지역의 향토문화 연구단체인 예성동호회가 발견하여 이 돌기둥의 정체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육안으로는 물론 탑본을 하여도 판독이 어려울 정도였다. 이끼를 제거하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석비의 형태는 석주형으로 자연석을 이용하여 각자면을 갈고 비문을 새겼는데 글자의 흔적만을 볼 수 있었다.

그 결과 이 비(碑)가 고구려비임이 밝혀진 것이다. 비문에는 서두에 ‘고려 대왕(高麗大王)’이라는 문자가 보이고, 비문중의 ‘고모루성(高牟婁城)’은 광개토대왕비에 보이는 성이므로 고구려비임이 분명하였다.

비문의 내용은, 앞부분에는 고구려와 신라가 사이좋게 지냈던 때의 일이 적혀 있고 뒷부분은 두 나라의 사이가 나빠져 백제 개로왕(455~475)과 신라가 힘을 합해 고구려에 대항한 내용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글자 크기는 3~5cm이며, 마멸이 심하여 정확한 글자 수는 알 수 없으나 전체 730여자 가운데 200여자만이 판독이 가능하다. 중원 고구려비는 매우 역사적 가치가 있으며, 우리나라 안에서 발견된 유일한 고구려

비로 국보 제205호로 지정되어 있다.

중원 탑평리 칠층석탑은 이 곳 사람들이 흔히 중앙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국토의 중심부를 상징하는 탑으로 보고 나라 대로의 자부심을 표현한 것이다. 이 탑을 세운 것이 통일신라시대라고 본다면 통일신라의 국경이 대동강과 원산만을 잇는 선이었으므로 그 국토의 중앙에 이 탑을 세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에 있는 이 탑은 통일신라시대 석탑 가운데 유일한 칠층석탑이며 높이도 14.5m로 가장 높다. 10여매의 크고 긴 돌로 지대석을 이룬 위에 두층의 기단을 쌓고 탑을 올렸다. 두 층 기단의 면석과 갑석은 모두 여러 장의 편편한 돌로 짜 맞추어졌고 네 모서리와 그 사이 면에도 각각 3개와 2개씩 기둥이 새겨졌다.

이 석탑은 규모가 커서 웅장하기는 하나 기단부와 탑신부의 세부 수법에 있어 약식과 섬약으로 흐르는 경향을 보이며 전체적인 형태도 높이에 비하여 너비의 비례가 적어서 지나치게 높은 감을 주며 안정감이 적어 보인다. 이 석탑은 각부 양식수법으로 보아 건조 연대는 9세기 중반으로 추정된다.

탑평리 칠층석탑 바로 옆으로는 남한강이 흐른다. 그 옛날엔, 남한강을 따라 오르내리던 뱃사공과 떼꾼들은 이 탑을 이정표로 삼았던 것이다.

이렇듯 남한강변에서 발달한 충주는 우리나라의 중앙에서 일찍부터 역사의 중심지로 성장해 왔다.

탄금대(彈琴臺)는 충주의 대표적인 명소

로 서북쪽의 칠금동의 대문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남한강과 달천(달래강)이 합류하는 곳에서 남한강 상류 쪽으로 1km쯤 뻗은 해발 200m 가량의 산이 대문산이다. 부드러운 구릉에 소나무가 우거져 있고 바닥에는 떨어진 솔잎이 포근한 황토색으로 깔려서 한적하게 걷기가 좋은 곳이다.

탄금대 입구에는 충주문화원과 야외음악당이 있고, 자그만한 대문산을 한 바퀴 도는 산책길을 따라가노라면 아동문학가 권태웅의 ‘감자꽃’ 노래비며 탄금대비, 악성우륵 선생 추모비, 탄금정, 신립 장군 전적비 등 기념물들이 발을 멈추게 한다.

잘 알다시피 탄금대라는 이름은 악성(樂聖) 우륵(于勒)이 이곳에서 가야금을 탔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신라 진흥왕(551) 때 우륵 선생이 가야금을 탄주하면서 이곳에서 음악을 연마했다. 그는 원래 가야국 사람으로 가야금을 만들고 12곡을 지었으며, 신라에 귀화하여 왕의 배려로 국원(國原)에 살면서 계고(階古)에게는 가야금을, 법지(法知)에게는 노래를, 만덕(萬德)에게는 춤을 가르쳤으며 이때 가야금이 궁중악으로 자리잡았다.

탄금정에 올라 바라보면 두 갈래 물줄기가 합쳐 하나가 되어 흐르는 망망한 풍경이 저아래 펼쳐진다. 강 가운데 퇴적섬에는 심지어 작은 나무들이 채출물로 우거졌고, 철따라 물새들이 소리치며 날고 있다.

탄금대 오솔길에서의 솔솔 풍겨오는 소나무 냄새는 한층 더 향기롭게 느껴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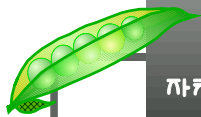
그윽한 여행의 정취를 안겨주고 있다.

또한임진왜란 당시 도순변사(都巡邊使) 신립(申瑬) 장군이 8,000여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 곳에 와 배수진을 치고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 清正)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군대를 맞아 격전을 한 전적지이기도 하다. 신립 장군은 전세가 불리하여 패하게 되자 천추의 씻지 못한 한을 품고, 강물에 몸을 던져 장렬히 순국하였다.

이밖에도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수안보 온천, 불교문화의 신비가 가득한 미륵리 사지, 임경업 장군의 충열사, 봉황리 마애불·보살군, 청룡사 보각국사 정혜원 용담, 억정사 대지 국사비, 정토사 흡법국사 신상탑, 장미산성 등 술한 문화유적이 이 지역에 산재해 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한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향토문화의 뿌리 없이는 민족문화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자랑스런 내 고장 문화 유산을 이해하고 가꾸고 보존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다.

이렇듯 중원의 중심지에 위치한 충주는 문화적 전통과 나뭇대로의 긍지를 가진 역사의 고장으로 소박함과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풍부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다. 중원지방을 여행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값진 문화유산들이 이곳 여기 저기에 산재해 있다는 것에 마음 뿌듯함과 문화의 향수(鄉愁)를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었다. 



미래의 패션디자이너, 1억원 당첨

아이쇼핑이 취미인 송모씨(20세, 경남 창원시). 복권도 아이쇼핑만 하려다가 자치복권 디자인에 매료되어 구입한 것이 1억원에 당첨!

송씨는 현재 디자인 학원에 다닌다. 꿈이 패션디자이너이기 때문. 작년에 대학에는 합격했지만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아 과감히 자퇴를 하고 디자인 학원의 문을 두드렸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지만 딸이 진정으로 원한다는 것을 알고는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딸이 가는 길을 보고 있다. “대학졸업장도 중요하지만 실력만 쌓인다면야 그 외의 것은 나중에라도 저절로 따라온다고 봐요” 20살 나이답지 않게 당차게 말하는 송씨는 정 사회가 졸업장을 원한다면, 그것이 그녀의 앞길에 큰 제동을 건다면, 그 때 가서 유학을 할 생각이다. 처음부터 유학가면 시간낭비, 돈 낭비가 심하지만 패션계에 대해서 웬만큼 알고 간다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분야도 재빨리 찾아 습득할 수 있고 훨씬 이해도 빠르기 때문에 유학 기간도 단축되고 돈도 절약되고...

따라서 학원수강외의 시간은 주로 변화가에 나가 패션동향이나 사람들의 옷을 눈여겨보면서 이리저리 아이쇼핑을 주로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송씨가 자치복권 1등 당첨복권을 산 날도 아이쇼핑 도중 복권판매대에 형형색색 진열된 복권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고 싶은 구매충동에 휩싸인 것. “복권 디자인이 참 단순하면서도 눈에 띄는 색으로 잘 처리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금방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구매충동에 못 이겨 송씨는 복권5장을 샀고 아이쇼핑이 끝난 후 집에 와 한참을 복권 디자인을 연구한 후 굵기 시작했는데 “어라, 이게 웬 떡” 5천만원 두 장이 나란히 붙어있었다. 송씨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 보고 또 보고를 반복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쁜 떡이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맛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당첨사실을 여유있게 받아들이고, 당첨금은 나중에 유학자금으로 쓸 생각이라고